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프로젝트 2017-04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유호선 · 김진수 · Christina Hiessl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국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연금 선진국의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발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연금 선진국으로 독일이 있을 수 있다. 독일 사례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안 논의 시 항상 거론되며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특히, 공적연금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재정목표, 크레딧 등 내실화 정책, 재정안정화 방안 등의 논의에서 항상 논의되고 있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적연금 강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독일의 리스터 연금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리스터연금의 현황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독일의 공·사연금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공·사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및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사적연금제도, 기타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구분하여 적용범위, 급여체계, 재원 및 관리체계 등을 분석하고 각 제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례를 통해 우리

나라 공 · 사연금제 내실화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 Trier University의 Christina Hiessl 연구위원과 함께 수행되었다. 특히 연구에 유익한 자문과 함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연구원 관계자 그리고 이 보고서를 검독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이 용 하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Ⅰ. 서 론 ····· 31

Ⅱ.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및 역사적 발전과정 ····· 33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 33
2. 역사적 발전과정 ····· 35
가. 공적연금 – 법정연금제도 ····· 35
나. 사적연금 ····· 38

Ⅲ.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 45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45
가. 공적연금의 종류 ····· 45
나. 적용범위 ····· 45
다. 급여체계 ····· 53
라. 재원 ····· 65
마. 관리체계 ····· 67
2. 공적연금제도의 평가 ····· 67
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 재정목표의 재구축 ····· 67
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 71
다.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 74
라. 비정규직의 증가 ····· 77

Ⅳ.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 81
1. 사적연금제도의 현황 ····· 81
가. 기업연금제도 ····· 81
나. 개인연금제도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 91
다. 개인연금제도 - 뤼룹연금(Rürup-Rente) ····· 117
2. 사적연금의 평가 ····· 122
가. 노후소득보장 개혁의 역재분배 문제 ····· 122
나.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한계성 ····· 125
다. 중복납부 및 공적연금 감소의 가능성 문제 ····· 130
라. 개인연금 관리·운영 주체의 한계 및 문제점 ····· 132
마. 개인연금의 근본적인 문제 ····· 138

Ⅴ.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 141
1. 기초보장제도 ····· 142
가. 도입배경 ····· 142
나. 수급조건 및 현황 ····· 143

Ⅵ.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 내실화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 147
1.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노후소득보장측면) ····· 147
2. 공·사연금의 보편성 (취약계층 가입확대) ····· 150
3.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 152
4.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 155
5. 공·사연금의 관리감독체계 ····· 156

표 차 례

〈표 Ⅲ-1〉 독일의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 47
〈표 Ⅲ-2〉 가입자 관리 구조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 49
〈표 Ⅲ-3〉 연령 별 인구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율 ····· 53
〈표 Ⅲ-4〉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 54
〈표 Ⅲ-5〉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른 조기연금 감액률 ····· 56
〈표 Ⅲ-6〉 노령연금의 급여별 특성 ····· 57
〈표 Ⅲ-7〉 독일 국민연금의 표준연금수준 변화 등 ····· 58
〈표 Ⅲ-8〉 독일 유족 배우자 연령조건의 상향조정 계획안 ····· 60
〈표 Ⅲ-9〉 독일 유족연금 급여액 현황 ····· 61
〈표 Ⅲ-10〉 독일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 63
〈표 Ⅲ-11〉 독일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현황 ····· 65
〈표 Ⅲ-12〉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구조 ····· 66
〈표 Ⅲ-13〉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 66
〈표 Ⅲ-14〉 현행 법 및 46%의 급여수준 하한 설정 시 비교 ····· 71
〈표 Ⅲ-15〉 인구보조금 계획 ····· 73
〈표 Ⅲ-16〉 자영자 집단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 ····· 74
〈표 Ⅳ-1〉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 및 변화추이(중복 가입 포함) ·· 88
〈표 Ⅳ-2〉 리스터 연금의 지원대상 ····· 93
〈표 Ⅳ-3〉 리스터 보조금의 개괄 ····· 101
〈표 Ⅳ-4〉 리스터 연금 계약 현황 및 추이 ····· 107
〈표 Ⅳ-5〉 연령에 따른 추가적인 노후보장 가입 비율 ····· 116
〈표 Ⅳ-6〉 뤼룹연금 계약 건수 및 변화 ····· 121
〈표 Ⅴ-1〉 독일의 기초보장급여(sozialer Mindestsicherung)(2015) ·· 141
〈표 Ⅴ-2〉 GAE 수급연령 상향 일정 ····· 143

그 림 차 례

[그림 1] 2000년 이후 독일의 주요연금 관련 정책 변화 ····· 41
[그림 2] 공적연금의 가입자 관리 구조 ····· 48
[그림 3]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상한 및 소득대체율 하한 ····· 68
[그림 4] 65세 이상 인구 비중 및 노인부양비 추이 ····· 69
[그림 5] 인구 보조금의 도입을 통한 보험료 상한선과 소득대체율 하한선 유지 ····· 72
[그림 6] 자영자였던 사람들과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의 순 소득 분포 ····· 76
[그림 7]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비정형 근로 비중의 변화 추이 ··· 78
[그림 8] 기업연금 유형 및 세제 활용 ····· 84
[그림 9] 기업연금 확대추이 (2001-2011) ····· 85
[그림 10] 가구 소득분위에 따른 기업연금 가입추이 (2002-2012) ·· 86
[그림 11]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 및 추이(중복가입 포함) (2001년-2015년) ····· 87
[그림 12] 기업 규모별 기업연금 가입현황 (2015년) ····· 89
[그림 13] 기업연금의 재원 부담 형태 및 변화 비교 (2001년 vs 2015년) ····· 90
[그림 14] 리스터 연금 가입자의 보조금 지원 비율 (2015년) ····· 102
[그림 15] 보조금 지원형태에 따른 지급 총액 변화 ····· 106
[그림 16] 아동보조금 수급 자녀별 보조금 수급자 변화추이 ····· 109
[그림 17]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변화 (2002-2012) ····· 110
[그림 18] 노후소득보장 여부 및 종류 변화의 추이 ····· 111
[그림 19] 가처분 소득에 따른 민영보험의 가입비율 (2012) ····· 112

[그림 20] 가구별 가처분소득에 따른 소득 분위별 리스터연금
가입비율(2002-2012) ····· 113
[그림 21] 자녀수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분포 (2012년) ····· 114
[그림 22] 연령에 따른 리스터연금의 가입추이 (2002-2012) ····· 115
[그림 23] 리스터연금 가입 현황 및 추이(2001년-2016년) ····· 117
[그림 2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 구성 ····· 149

요 약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국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함. 이에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추구하고 있음

– 독일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적연금 강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독일의 리스터 연금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독일의 사례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발전방안 논의 시 독일의 사례는 항상 거론되는 국가사례임

-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재정목표 – 적정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 크레딧 등 내실화 정책
- 재정안정화 방안 등

– 리스터 연금에 대한 많은 관심

-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적연금 강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리스터 연금은 빈번히 언급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리스터연금의 현황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독일의 공사연금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

○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공·사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범위(내용): 1) 독일 국민연금 2) 독일 퇴직연금 3) 독일의 개인연금 4) 시사점

Ⅱ.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및 역사적 발전과정

1. 독일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table>
<tr><td>(3층)</td><td colspan="8">사적연금</td></tr>
<tr><td>2층</td><td colspan="6">퇴직연금</td><td rowspan="2">전문직
연금1)</td><td rowspan="2">공무원
연금2)</td></tr>
<tr><td rowspan="2">1층</td><td rowspan="2">농민
연금3)</td><td colspan="5">법정연금보험4)</td></tr>
<tr><td>수공
업자</td><td>예술
가 등</td><td>자
영
자</td><td>광원
등5)</td><td>근로자</td></tr>
<tr><td>0층</td><td colspan="8">기초보장제도</td></tr>
</table>

자료: 독일 연금공단 Markus Sailer 박사 자료집

2. 역사적 발전과정

❑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 (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1957년 : 연금법 대개정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 1972년 :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 의무가입)와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

1)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swerke
http://www.abv.de/berufsstaendische-versorgungswerke.html
의사, 약사, 공증인, 변호사, 세무사, 수의사, 회계사, 공인 회계사, 치과의사, 엔지니어 및 심리 치료사 등 자유 전문직을 위한 연금제도

2) Beamtenversorgung

3)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4) Deutsche Rentenversicherung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5) www.kbs.de
DRV KBS(Deutsche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Bahn-See)는 2005년에 특수직역인 광부, 철도원, 선원들의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단 조직임. 그러나 공적연금은 DRV에서 관리하고 있음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 1992년 :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 2000~2004년 :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 2000~2001 연금개혁

- 장애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억제를 위한 조치(2000년)
- 노인 · 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제 도입(2001년)
- 국고보조의 인증제 개인연금(Riester Rente) 도입 및 퇴직연금의 활성화 조치 강구

○ 2004년 연금개혁(DB → 準DC로 전환)

-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에서 고정(2030년까지 22%)시키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수준을 자동으로 감축시키는 장치(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기반 마련
- 2030년까지 표준연금수준을 43%까지 유지하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적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정부에 부과

❑ 2007년 :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 2007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 2007년 확정된 '정년 67세 방안'은 법정 정년연령을 2012년에 시작해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

- 연령 상승 방식은 출생 연고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시작은 1947년생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2012~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임
- 예외적으로, 2029년 이후에도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65세를 법정 노령 상한선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Ⅲ.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적용범위

○ 의무가입 vs 임의가입

- 의무가입 : 모든 임금 근로자, 훈련생(auszubildende), 일부 자영업자[6], 크레딧 수급자 등
- 임의가입

○ 가입자 관리체계 : 능동적 가입자 vs 수동적 가입자

- 능동적 가입자 : 조사년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보험료 기여 혹은 크레딧의 혜택 등으로 당 해에 연금의 기여 기록이 있는 사람들

※ 능동적 가입자 : 보험료 기여자(beitragszahler)[7]와 산입기간(Anrechnungszeiten versicherte) 혜택자로 나뉨

---

6)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인 자영업자들은 프리랜서 교사, 장인(Handwerker), 가내수공업자(Hausgewerbetreibende), 조산사, 어부 등이 해당된다.

7) 보험료 기여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의무가입자(pflichtversicherte), 임의가입자(freiwillig versicherte),

※ 보험료 기여자 : 의무 가입자, 임의 가입자, 저소득 근로자로 구분

- 수동적 가입자 :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은 있으나, 능동적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표 1〉 독일의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총 가입자	능동적 가입자	총 가입자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율
1962	25,880	18,612	71.9
1970	26,032	19,568	75.2
1980	26,998	21,570	79.9
1990	40,953	24,128	58.9
2000	51,107	33,830	66.2
2010	52,223	35,370	67.7
2015	53,813	37,027	68.8

자료: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2017

〈표 2〉 가입자 관리 구조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2014년 말)

		전체	여성	남성
능동적 가입자		36,483,088	17,681,127	18,801,961
	의무 가입 대상의 근로자	29,351,137	13,721,189	15,629,948
	자영자	276,794	130,699	146,095
	실업급여 수급자 (SGB Ⅲ)	822,509	340,200	482,309
	단시간 근로 등[8]	4,510,954	2,811,035	1,699,919
	크레딧 수급자[9]	2,607,721	1,309,666	1,298,055
수동적가입자		16,847,231	8,024,700	8,822,531
전체		53,330,319	25,705,827	27,624,492

자료: Statistik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 Versicherte 2016 (pp.6)

❑ 급여체계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노령연금

– 수급조건 : 최소가입기간 5년, 연금수급연령 65세 6개월 (1964년생부터 67세)

– 표준연금수준(4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수준) : 2016년 현재 44.5% (€16,108)

※ 순소득 대비 표준연금수준 48.1%

– 급여산식

노령연금 급여식
= 개인소득점수 × 연금종류별 지급률 ×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액

〈표 3〉 독일 국민연금의 표준연금수준 변화 등

(단위: €, %)

연도	평균소득		표준연금수준 (45년 가입,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	
	총 소득	세전 순소득	총	순 (세전)	총 소득 (%)	세전 순소득(%)
2013	33,659	27,847	15,177	13,612	45.1	48.9
2014	34,514	28,553	15,323	13,743	44.4	48.1
2015	35,363	29,253	15,611	13,955	44.1	47.7
2016	36,187	29,880	16,108	14,367	44.5	48.1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7.8),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Oktober 2017, Entwicklung des Standardrentenniveaus allg. RV

–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액 (2015) : 구 서독 남성 €1,014(여성

8) Geringfügig Beschäftigte은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단시간 고용에 미니잡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건강보험, 실업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일단 가입대상이나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9) Anrechnungszeitversicherte

€583), 구 동독은 남성 €973(여성 €860)

〈표 4〉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구조

(단위: 백만 €, %)

연도	전체수입	보험료	보험료비중	정부보조금	보조금비중	기타 비중
2013	260,669	194,334	74.6%	65,286	25.1%	0.3%
2014	269,359	201,647	74.9%	66,639	24.7%	0.4%
2015	276,161	207,317	75.1%	67,701	24.5%	0.4%
2016	286,188	215,422	75.3%	69,709	24.4%	0.3%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7.8),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Oktober 2017, Einnahmen RV.

❑ 재원

〈표 5〉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연도	노동자/직원 연금	연도	노동자/직원 연금
1957–1967	14.0	1994	19.2
1968	15.0	1995	18.6
1969	16.0	1996	19.2
1970–1972	17.0	1997	20.3
1973–1980	18.0	1998	20.3
1981	18.5	1999(1.1–3.31)	20.3
1982–1983(8.31)	18.0	(4.1부터)	19.5
1983(9.1)	18.5	2000	19.3
1984	18.5	2005	19.5
1985	18.7	2010	19.9
1985(6.1)–1986	19.2	2011	19.9
1987–1991(3.31)	18.7	2012	19.6
1991(4.1)–1992	17.7	2013–2014	18.9
1993	17.5	2015–2017	18.7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10.6), Rentenversicherung in Zahlen 2013, Beitragssätze in Prozent des Bruttoarbeitsentgeltes(p.9)

❑ 관리체계

○ 우리나라와 유사

2. 공적연금제도의 평가

❑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 – 재정목표의 재구축

○ 2004년 결정된 재정목표[10)]

– 보험료율 :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22% 상한 규정

– 소득대체율 : 2020년까지 46%, 2030년까지 43%의 하한 규정

– 완충기금 : 1개월 연금지출의 0.2~1.5배 사이

○ 인구구조 변화 –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1955~1969 출생자)의 은퇴 시작

– 노인부양비 35% (현재) → 55% (2045년)

10) 독일연방공단의 Markus Sailers 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법에 명확히 제시된 재정목표는 아니지만, 이를 독일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및 노인부양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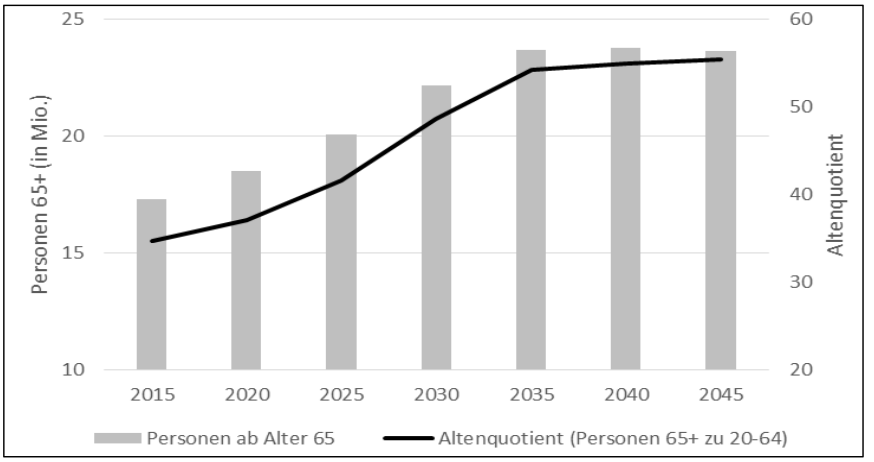

자료: BMAS, 2016, Gesamtkonzept zur Alterssicherung

○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 재정목표 재구축에 대한 논의

❑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 논의 – 재정목표의 재구축 (추계기간, 완충기금, 상·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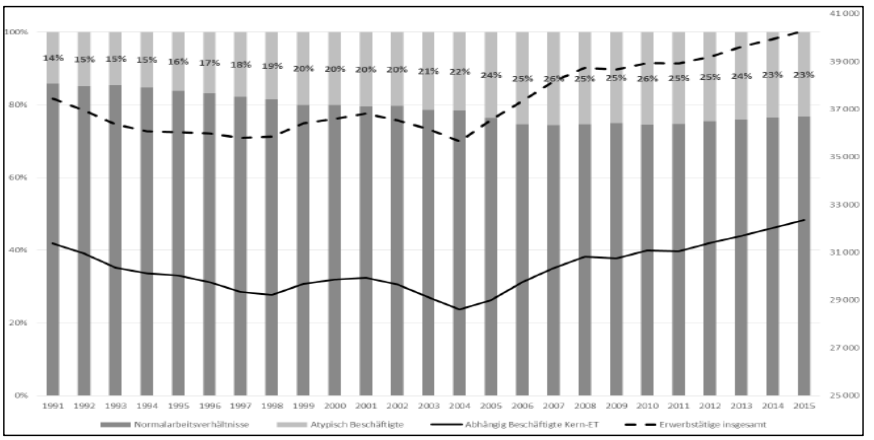

○ 추계기간
- 독일 재정계산은 5년의 중기전망 & 15년의 장기전망으로 작성 → 인구구조가 변화
- 이에 장기전망의 추계기간을 향후 30년으로 연장 주장

○ 완충기금
- 현재 1개월 연금지출의 0.2~1.5배 사이로 규정 → 잦아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최저 기준인 0.2배를 0.4배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 보험료율 상한과 급여수준 하한 재조정
- 현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은 2030년 43%, 2045년 42%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 보험료율은 2028년에 상한선인 22% 초과하고 2045년 26.9% 예상 → 지속가능성에 의문
- 이에 2045년까지 소득대체율 46% 그리고 보험료율 2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목표 고려 중

❑ 재정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목표를 재조정할 경우, 불가피하게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직면 &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시작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심화

○ 2016년 재정계산 결과는 목표 달성 그러나 이후 문제 발생
- 보험료율 2025년에 20.2% 2030년에 21.8% & 급여수준 현재 약 48% 2030년 44.5%
- 2045년 급여수준 42% 미만, 보험료율 24% 이상으로 상향 예상

❑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논의

○ 독일은 인구보조금(Demografiezuschuss) 추가 도입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고려

- 새로운 국고보조 추가하여 2045년까지 소득대체율 46% 보험료율 25% 유지 방안 고려
- 노동사회부(BMAS, 2015a)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30년부터 인구 보조금 도입을 계획
- 조세 재원으로, 2030년 연금지출의 1.5%, 2040년 연금지출의 2.5%로 상향조정 계획

[그림 2] 인구 보조금의 도입을 통한 보험료 상한선과 소득대체율 하한선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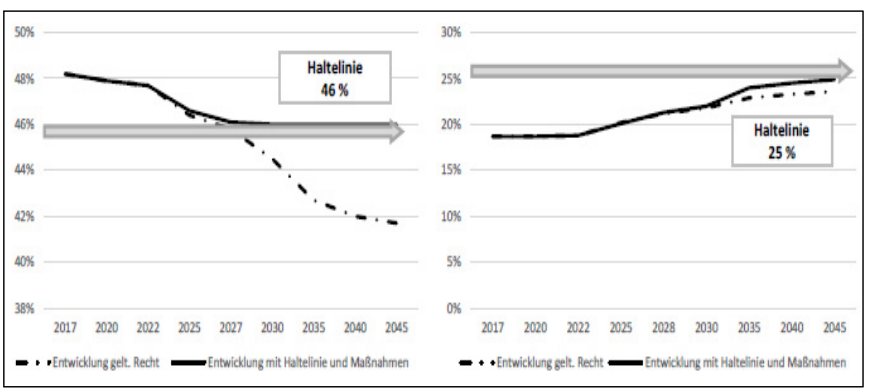

자료: BMAS, 2016, Gesamtkonzept zur Alterssicherung

❑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 독일 국민연금은 일부 자영자를 제외하면, 자영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이 아님

〈표 6〉 자영자 집단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

자영자 집단 구분	의무가입 여부	적용제도	분포
전문직	의무가입	전문직 연금[11]	8.0%
농업인	의무가입	농민연금[12]	7.2%
수공업자	18년 의무가입	법정연금보험	6.3%
예술가 및 작가	의무가입		
취약 직업군	의무가입		
기타	가입 의무 없음	없음	78%

자료: Markus Sailer 인터뷰 자료

○ 자영자의 소득 현황 – 65세 이상

–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약 50%는 평균 월 소득이 €1,000 미만,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의 경우 약 1/3 정도가 €1,000 미만

– 이들의 기초보장급여(Grundsicherungsleistungen) 수급율도 높음

[그림 3] 자영자였던 사람들과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의 순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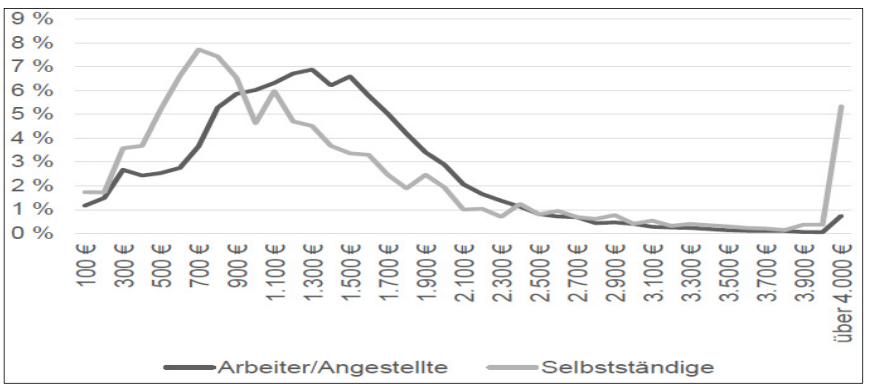

자료: Alterssicherung in Deutschland (ASID 2015)

11)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swerke
12)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 자영자 노후소득보장 제고 방안

○ 이를 위하여 독일 정부는 자영자들을 위한 뤼룹연금 도입 → 효과 불만족

○ 자영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추진

- 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주제이나, 실행이 어려움 ← 국민연금의 높은 보험료를 자영자들이 기여하기에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
- 이에 자영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위하여 이들의 건강보험료 인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비정형 근로 증가로 인한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 독일은 주 2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 등 비정형근로 증가

- 근로기에 미니잡에서 45년 동안 일한 사람 혹은 비정형 근로의 기간이 긴 사람들의 경우,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기 어려울 것

❑ 비정형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제고 방안 논의

○ 노동시장

- 임시직 보호 및 고용계약 관련법(Gesetz zur Bekampfung des Missbrauchs bei Leiharbeit und Werkvertragen) 도입 재고
- 최저임금

○ 연금제도

- 연대연금(Solidar rente) 도입 재고
- 수급자격 :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였으나 저소득의 장기 근로로 노령연금 급여 수준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들

- 재원 : 세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 보험료 기여 기간 +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의 기간 포함
- 이는 노령연금액이 최저생계비 보다 약 10% 정도 상향 될 것으로 기대

Ⅳ. 독일의 기업연금제도

❑ 독일 다층보장체제에서 사적연금의 특징

○ 공적연금의 하향조정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연금 (BaV)과 개인연금 (Riester – Rente, Rürup–Rente)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국가의 보조를 통한 촉진책을 마련한바 있음.

-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모두 임의가입에 의하여 적립방식으로 국고보조 또는 세제혜택에 의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세제에 있어서 2005년부터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활동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함.

1.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가. 기업연금제도의 내용

❑ 독일 기업연금의 성격

○ 독일 기업연금은 기본적으로 임의 가입체제임. 2001년 개혁으로 근로자가 급여희생방식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 때, 기업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도입됨.

- 2002년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정액(4%)을 기업연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이 의미는 일반적인 기업연금과 달리 사용자는 별도의 부담 없이 기업연금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연금 도입은 성립되지 않음. (실제 기업연금 도입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안한 경우에 리스터연금을 하지 않겠다고 부정적 반응을 한 경우가 70%에 이름)

❑ 독일 기업연금의 세부 내용

○ 기업연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 부문 근로자와 엄격히 구분됨.

-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별도의 강제적용 기업연금을 운영하며, 국가와 가입자가 재정을 분담하고 부과방식으로 운영됨.
- 민간부문 기업연금은 확정급여방식이 중심이며, 2001년 개혁으로 확정기여방식도 도입됨.
- 수급자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는 명목액수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을 가지는 최저급여보장권을 가짐.
- 이는 사용자가 기업연금 운영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음. (사용자 부담 없이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됨.)

❑ 독일 기업연금의 종류

○ 민간부문 기업연금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섯 가지 방식은 각각 운영방식 즉 조직, 재원, 세제혜택, 수급권 보

호에서 차이가 있음.

- 먼저 사용주가 직접 기업연금의 보험료의 관리와 급여지급을 하는 직접 · 내부적 사내운영방식 (interner Durchführungsweg)과 이를 외부에서 실행하는 외부적 사외운영방식 (externer Durchführungsweg)으로 나눌 수 있음.
- 기업연금의 급여 수급권을 기업연금 급여에 대한 보장은 직접보조, 지원금고에서 적용. 연금기금에도 적용, 직접보험은 제한적으로 적용됨. 퇴직금고는 적용되지 않음.
- 수급권보장이 적용되는 기업연금의 방식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은 지불불능보험에 가입해야 함.

○ 기업연금에서 사내보유형 (2 가지)

- 직접보조(Direktzusagen): 근로자는 기업에 연금지급청구권을 가짐. 재정은 사용자가 조달. 기업은 세금혜택을 받음. 근로자가 받은 퇴직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됨. (가장 널리 이용, 한국 퇴직금과 유사)
- 지원금고(Unterstuetzungskasse): 근로자는 기업에 연금지급청구권을 가짐.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 사용자는 급여권의 보장을 위해 연금보장금고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기업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어 세제혜택을 받음. 근로자는 노동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됨.

○ 기업연금에서 사외보유형 (3가지)

-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 사용자 명의로 피용자를 위해 민영 보험사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근로자와 유족은 보험회사에 연금지급청구권을 가짐. 재원은 사용자, 근로자 같이 부담 가능. 기업은 세제 혜택, 퇴직연금에는 과세.
- 연금금고(Pensionkassen): 주로 생명보험에서 운영하고 보험

과 동일한 원리로 운용함. 근로자는 연금금고에 대하여 연금지급 청구권을 가짐.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함. 세제 규정은 동일

- 연금기금(Pensionsfunds): 연금개혁 2001로 새로이 도입된 방식임. 주로 생명보험이 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용한 수익과 원금으로 연금 지급. 근로자는 연금기금에 대해 급여청구권을 가짐. 재원은 사용자 부담이나 근로자 급여전환방식으로 부담. 세제 규정은 동일.

2.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 독일 기업연금의 가입 현황 및 추이

○ 2001년 개혁이후 독일 기업연금의 확대추세는 개혁 당시 전체 근로자의 38%가 기업연금에 가입하였으나 2011년 현재 50%수준으로 증가되었음을 보여줌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2012).

- 2005년 이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중소기업의 기업연금 참여 회피, 고령 근로자의 기업연금 필요성에 인식 저하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됨 (Kiesewetter et al., 2016; Beznoska und Pimpertz, 2016).
- 특히 중소기업의 재정 능력 부족 문제와 저소득 근로자의 참여 저조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것임.

○ 기업연금 종류별 가입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2001년과 2013을 비교하면 약

38%가 증가하였음.

- 직접보조(Direktzusagen)와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en)이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금고(Pensionskassen)의 확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연금기금(Pensionsfonds)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연금의 수준이 보험료에 있어서나 연금수준에 있어서 매우 미약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특히 현재 연금수급자(남성)중 43%가 기업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500유로 미만의 기업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정확한 통계 자료의 수집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노령가족의 실질 수입에 대한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음 (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2011).

○ 2015년까지의 퇴직연금 종류별 최근의 가입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연금금고(Pensionkassen)가 가장 두드러진 확대를 보였고, 연금기금(Pensionsfunds)은 기업연금으로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비율 비교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100인 이상의 기업은 83% 수준의 가입률을 보여주는 반면에 1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28%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연금 가입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연금 가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영세 기업이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 오

히려 기업연금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역재분배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기업연금의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연금 도입 이전에는 사업주 단독 부담이 높았으나 기업연금 도입 이후에는 노사의 공동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기업연금에 가입한 기업 중 절반 이상 (54%) 이 사업주가 기업연금의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사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1/4(27%), 근로자 단독 부담이 1/4 (26%) 수준을 보여 왔음.
- 2015년 현재 재정부담 주체는 절반 이상 (60%)이 노사 공동부담으로, 사용자 단독 부담이 1/4 (28%), 근로자 단독 부담이 1/4 (25%)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변화는 2001년 기업연금 도입 이후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사 공동 부담 형태가 급격히 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이 기업연금의 확대된 기업에서는 거의 노사 공동의 재정부담 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기업 연금의 가입 확대 정도 역시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2002년-2012년 기간 동안 기업연금 가입 변화를 보면 소득 5분위의 경우 23.1%에서 53%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는 같은 기간에 1.8%에서 3%로 증가하는 데에 그쳤음.
- 이는 공적연금이 노령 빈곤 문제보다는 평균적인 노령보장 수준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연금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정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기업연금의 개선논의

○ 독일의 노후보장체제에 있어서 기업연금이 지적 받는 문제는 2층보장의 역할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전체 노후보장체제를 공적연금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함.

- 독일의 기업연금제도의 한계는 임의가입을 하는 가입 규정이며, 이 또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기업연금으로 도입된 제도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기업연금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노후보장의 축으로서 기업연금은 수준이 매우 미약한 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대기업 중심의 기업연금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노후보장의 편차를 키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정책 과제가 해결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현재까지 독일의 노후보장에 대한 체제 구축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체제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적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독일의 기업연금 문제점은 단순한 기업연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노후보장체제에서 기업연금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있음.

Ⅴ. 독일의 개인연금제도 - 리스터 연금 (Riester-Rente), 뤼룹연금 (Rürup-Rente)

○ 다층보장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개인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을 위한 자본 형성을 통해서 삭감된 연금 수준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임.

- 개인연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려되며, 자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수급 자격은 직 간접적으로 연금 삭감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법정연금의 당연 가입자인 근로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 사회보험 당연가입대상인 자영자 등이 중심임.
- 보조금 지급 대상 개인연금은 정부로 부터 개인연금으로 승인받은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됨.

1. 개인연금제도 현황

가. 리스터연금(Riester-Rente)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종류

○ 리스터연금은 총 5가지의 계약 형태가 있으며 공통적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연금은 기한이 없이 생존기간 지급, 연금 명목가치는 동일 또는 약간 상승함. 조기연금 수급은 62세부터 가능, 85세 까지는 다양한 지급 형태 가능. (85세 이후 연금, 최대 30%까지 일시금 지급 가능)

○ 계약형태에 따른 종류
- 전통적 연금보험(Klassische Rentenversicherung)
- 펀드연계형 연금보험(Fondsgebunden Rentenversicherung) 1100만건
- 리스터 펀드저축계획(Riester-Fondssparplan) 310만건
- 은행저축계획(Banksparplan) 80만건
- 자가주택연금(Eigenheimrente, Wohn- Riester) 160만건

❑ 지원대상

○ 리스터연금의 주요 지원대상은 미래의 연금액 삭감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며, 이들에 대해 정부는 직 간접적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함.
- 직접지원대상(Unmittelbar Förderberechtigte) : 공적연금, 농민사회보험 상의 노후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당연 가입자임.
- 간접지원대상(Mittelbar Förderberechtigte) : 직접대상자의 배우자 및 생애 동반자(Lebenspartner)는, 간접지원 대상자로서의 정부지원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됨.
- 비지원대상 (Nicht Förderverechtigte) : 공적연금 임의 가입자(낮은 소득자, 자영자 포함), 연금수급자, 공적부조 수급자, 별도의 노후보장체계를 가진 직업 조합의 당연 가입자: 예) 의사, 약사, 건축가, 변호사, 공증인임.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승인기준

○ 리스터 연금상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정부보조금 전제조건) 승인은 연방국세청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2010년 이후)에서 수행함.

- 리스터 연금상품의 승인기준은 11가지 (2001년)에서 5가지 (2005) 대폭 완화됨. (지원대상자 확대 목적). (노후연금계약 승인법 : AltZertG. 제 7조)
  ① 연금개시연령: 62세 이후임. (2012년 이전 계약자는 60세)
  ② 지급되는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로서 보조금 포함한 합계액 이상이어야 함 (Normalwerterhaltung의 원칙).
  ③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연금 혹은 부분연금 의 2가지 형태가 가능함. 연금액의 가치는 동일하여야 함.
  ④ 연금계약비용 및 관리운영비는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계산하거나, 매년 보험료의 일부에서 공제함.
  ⑤ 보험자는 각 분기별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의 일시중지가 가능함을 공지해야함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국고보조금 규정

○ 리스터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가지 방식임. 첫째로, 직접지불로 노후보장 보조금(Altersvorsorgezulage), 간접지원으로 특별세액공제(Steuerlicher Sonderaushabenabzug)가 존재함

- 직접보조금은 가입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되며, 직접 보조금은 기본 보조금(Grundzulage: EStG 제 84조)과 아동 보조금(Kinderzulage: EStG 제 85조)로 구성됨.
- 간접지원은 특별세액공제(Sonderausgabenabzug: EstG 제 10조 2-3)로 연간 최대 2100유로까지의 보험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최소보험료율(4%)은 소득에 따라 절대액의 크기가 높아지게 되는 데, 특별공제의 최대 절대액 상한선(2,100유로)은 고정

되어 실제 보조액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짐. (2008년 이후 고정)

- 전체 보조금의 최소 25% 이상을 저소득층 및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함. 또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최대 90%까지 지급하도록 함.
- 보조금과 세제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보조금 지급과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중 가입자에게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국세청(Finanzamt)에서 비교 정산(Günstigerprüfung)을 실시함. 세액공제액이 보조금보다 더 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함.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국고보조금 추이

○ 2002년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12년 까지 보조금 지급총액이 11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으로 27억 유로 규모로 증가함.

- 보조금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직접보조금과 간접지원으로 특별세액공제(Sonderausgabenabzug)로 구분되며 총 금액은 36억유로(2012년)임.
- 기본보조금 및 아동보조금이 각각 13억 유로 그리고 최초 가입자에 대한 보너스(Berufseinsteiger-Bonus)가 3800만 유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는 9억 유로(2012년)임.
- 2011년과 비교하여 전체 지원규모는 2%가 증가함. 아동수당은 6% 증가한 반면 기본보조금 및 최초가입자 보너스는 각각 0.4%, 28% 감소함.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계약 변화 추이

○ 전반적인 리스터 연금계약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 2005년 이후 리스터연금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이후에 계약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주춤하는 현상이 발생함.
- 2011년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리스터 연금의 전체 계약 건수가 약 1,600만 건 까지 증가함.

○ 리스터 연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 및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예상할 수 있음.

- 이는 실질적 지원이 아닌 리스터연금에 가입 할 경우 예상되는 지원 비율을 가정한 경우 저소득 계층과 다자녀가구, 결혼상태에 있는 경우가 유리한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지원이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분(Sockelbetrag)만을 적립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소득이 증가 할수록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줄어들게 됨. 이 부족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게 됨.

나. 뤼룹연금(Rürup-Rente)

❑ 뤼룹연금(Rürup-Rente)제도 내용

○ 독일의 노후보장체제에서 다른 국가의 노후보장체제와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Rürup 연금이라 할 수 있음.

- 독일에서 경제활동계층으로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업연금이나 리스터연금에도 적용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노후보장 안전망을 공공부문이 아닌 민영보험에서 하는 형태임.

- 뤼룹연금(Rürup-Rente)의 적용 대상은 자영업자 또는 프리렌서로 공적연금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으로 Riester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임.

○ 뤼룹연금(Rürup-Rente)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노후 보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Basisrente)"이라 할 수 있음.

- 뤼룹연금(Rürup-Rente)은 다른 어떠한 노후보장체제에 해당되지 않고 첫 번째 노후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 연금임.

❑ 뤼룹연금(Rürup-Rente) 승인기준

○ 연금 상품에서 뤼룹연금(Rürup-Rente)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있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른 공적 연금이나 리스터 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계층이며, 급여 수급과 관련된 연령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연금 수급은 적어도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것임. 이러한 규정은 2012년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는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로 연기함.
- 또한 수급자에게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급권 역시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가입자의 조기 사망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수급권은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할 경우 보험특약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높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그래서 유족급여로 배우자와 25세 이하의 자녀에게 수급권을 주도록 하는 제한적 조건부 특약이 가능함.

❑ 뤼룹연금(Rürup-Rente)제도 세제규정

○ 세제 관련한 규정은 복잡하게 되어 있음. 뤼룹연금(Rürup-Rente)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세 기준에서 공제되며. 연가 최대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세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연금 급여의 연간 최고 한도는 공적연금에서 광부연금보험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2005년 최고 한도는 공적광부연금보험 최고한도의 60%에서 2025 년까지 매년 2%씩 상향 조정됨.
- 뤼룹연금(Rürup-Rente)은 2040 년부터 지급되는 연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 예정임. 이러한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7년에는 연금액의 74 %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0 년까지 단계적으로 연평균 2%p 씩 소득세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p 씩 상향조정 됨.
- 2006부터 뤼룹연금(Rürup-Rente)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금 공제는 "기타 연금 지출(sonstigte Vorsorgeaufwendungen)"에 더 이상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는 최대 2,001유로 (기혼자 4,002 유로)까지 추가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함.

❑ 뤼룹연금(Rürup-Rente)제도 계약 변화 추이

○ 뤼룹연금(Rürup-Rente) 계약 건수는 절대 건수에 있어서나 확대 추이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처음 도입된 시점에는 15만 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6년 현재는 200만 건으로 증가함. 이러한 추세는 전체 독일 노후보장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절대 규모에 있어서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기재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뤼룹연금(Rürup-Rente)의 존재는 매우 독일의 독특한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이미 역사적으로 근로자 중심의 제도 체계에서 낮은 소득 계층과 높은 소득계층을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은 아직도 제도에 반영되어 있음.

- 독일의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포괄적 노후보장을 하고자 하는 보편주의적(principle of universality)성격보다는 선별주의적(principle of selection)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영세자영자 및 프리렌서가 공적연금에서 제외되는 현상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전통적 성격은 노후보장의 연금체제 개혁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음.

2. 개인연금제도의 문제점

○ 리스터연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확대 추이는 정체 상태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독일의 민간 저축 비율이 감소하는 점과 전체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이 리스터 연금 등으로 전환되었고 이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BMAS, 2016).

- 리스터 연금의 확대는 실질적인 확대라기보다 다른 저축이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던 계약이 리스터 상품으로 옮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리스터 연금에 속하지 않는 보험상품에 상당수의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것 역시 개인연금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리스터 연금제도는 저소득 계층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 유리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가입자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 그리고 자녀 유무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되는 현상을 보였음. 이는 리스터연금이 소득 역재분배 현상을 보여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 받을 수 있음.

○ 뤼룹연금(Rürup-Rente)은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의 하나인 Rürup 연금에서 공적연금에서 제외된 계층의 기본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체제로 구축됨. 즉, 공공부문이 일반적인 노후보장을 포괄하지 않고 오히려 민영보험의 상품에 기초보장을 허가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공부문이 아닌 민영부문에서의 기본보장은 적용의 임의가입에 따른 체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와 민간의 성격상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

Ⅰ. 서론

주요 유럽국가들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복지국가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이 당시 시민들은 안정된 인구구조와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으로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하는 관대한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제도를 향유할 수 있었다. 즉, 적정 수준의 출산율과 낮은 노인인구 비율로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규모의 표준화된 남성 육체노동자를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적 노동시장 구조를 통하여 남성 중심의 완전고용이 이루어졌다. 이는 안정된 단층의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출현과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야기했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인구고령화에 의하여, 전통적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경제 사회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1990년대부터 주요 연금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단층의 공적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13], 이는 독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국가로 저출산·

13) 국제기구들의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유호선, 2017,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7 연금포럼 가을호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연금 선진국의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발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연금 선진국으로 독일이 있을 수 있다. 독일 사례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안 논의 시 항상 거론되며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특히, 공적연금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재정목표(적정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크레딧 등 내실화 정책, 재정안정화 방안 등의 논의에서 독일의 공적연금이 항상 논의되고 있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적연금 강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독일의 리스터 연금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독일 공 · 사연금을 동시에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적연금의 경우, 리스터연금의 현황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독일의 공 · 사연금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공·사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및 역사적 발전과정

독일은 사회보험으로의 공적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로써, 전통적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독일 역시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공적연금 중심의 단층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 개혁하고 있다. 이는 위험의 분산 및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 개혁을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독일 연금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이에 현재 독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본 후, 2000년대 이후의 독일 공·사연금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그 발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독일은 현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0층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도(GAE)가 있다. GAE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종의 공공부조제도로써,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한 노인 및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14] 1층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주 축인 공적연금으로 생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 광원, 수공업자, 예술가, 일부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농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이 있다. 2층에는 임의가입의 기업연금이 있으며, 3층에는 리스터연

14) GAE(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Ⅴ장의 내용을 참고

금 및 뤼룹연금 등으로 대표되는 임의가입의 개인연금이 있다.

특히, 독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는 사적연금인 2층의 기업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이 모두 임의가입 형태이다. 따라서 독일의 사적연금을 하나의 층인 2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및 뤼룹연금)을 중심으로 그 발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table>
<tr><td>3층</td><td colspan="7">개인연금 (임의가입)</td></tr>
<tr><td>2층</td><td colspan="5">기업연금 (임의가입)</td><td rowspan="2">전문직 연금 15)</td><td rowspan="2">공무원 연금 16)</td></tr>
<tr><td rowspan="2">1층</td><td rowspan="2">농민 연금 17)</td><td colspan="5">법정연금보험18)</td></tr>
<tr><td>수공 업자</td><td>예술가 등</td><td>자영자</td><td>광원 등 19)</td><td>근로자</td></tr>
<tr><td>0층</td><td colspan="7">기초보장제도(GAE)20)</td></tr>
</table>

자료: 독일 연금공단 Markus Sailer 박사 자료집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5)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swerke
http://www.abv.de/berufsstaendische-versorgungswerke.html
의사, 약사, 공증인, 변호사, 세무사, 수의사, 회계사, 공인 회계사, 치과의사, 엔지니어 및 심리 치료사 등 자유 전문직을 위한 연금제도

16) Beamtenversorgung

17)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18) 수공업자, 예술가, 자영자, 광원,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연금을 법정연금보험이라고 지칭함
Deutsche Rentenversicherung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19) www.kbs.de
DRV KBS(Deutsche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Bahn-See)는 2005년에 특수직역인 광부, 철도원, 선원들의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단 조직임. 그러나 공적연금은 DRV에서 관리하고 있음

2. 역사적 발전과정

가. 공적연금 – 법정연금제도[21)]

독일의 공적연금은 1889년 6월 장애 및 노령연금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10년 당시 평균기대 여명은 45세였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이 수급할 수 있었던 노령연금은 거의 무의미한 제도였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장애연금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었다. 이후 1911년 유족연금이 도입되며, 오늘날의 공적연금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및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로 인하되었고, 그 결과 1916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두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회보장 기금을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제도의 침체기가 시작되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7년 연금개혁 시까지 공적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57년 연금법 대 개정으로 독일 공적연금의 기본 철학이 변화하였다. 즉,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 에서 '소득지위보장' 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누어졌던 연금산식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

---

20)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21) Alfred C. Mierzejewski, 2016, A history of the German public pension system, Lexington Books
고용사회부 홈페이지 참조 작성
http://www.bmas.de/DE/Themen/Rente/Gesetzliche-Rentenversicherung/Geschichte-GUV/geschichte-der-gesetzlichen-rentenversicherung.html;jsessionid=DB2EE36E02A5BA7425AEF4911422E23F

제' 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금의 급여액을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키는 제도(동태적 연금 – dynamische Rente)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연금 대개혁으로 45년 기여 시 1957년 240DM이었던 급여 수준은 1990년 1,781DM으로 증가하였다. 즉, 1957년의 급여 수준은 30여 년 만에 약 8.5배 증가하게 되었다. 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재정방식의 변화였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적립방식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한 독일 정부는 재정방식을 적립방식(fully funded)에서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가 상실되는 경험을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 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급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957년부터 67년까지 점진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10년의 전환 기간 동안에는 수정부과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연도에 당년도 지출 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만 쌓이도록 설정되었다. 이에 1969년부터 독일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은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경제성장 및 안정된 사회적 환경 하에서 공적연금은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개혁을 지속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부 자영자를 가입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의무가입을 추진하였다.

이후 독일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높은 실업율, 그리고 저출산 ·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1992년 연금의 재정안정화 등을 위한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에 보험료 및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였으며,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양육 크레딧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도 이러한 저성장 기조와 고 실업율이 지속되자 연금제도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를 강화하는 개혁을 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강화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로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즉, 공적연금에서는 2000년에 장애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단행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2001년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제도(GAE)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낮아진 급여수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였고,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혁 역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에는 기존의 확정급여방식의 연금에서 준 확정기여방식의 연금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에서 고정(2030년까지 22%)시키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의 급여수준을 자동으로 감축시키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급여수준의 하한 또한 설정(2030년까지 43%까지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적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였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는 연금 수급연령을 2012년에 시작해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이다.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은 출생 연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시작은 1947년생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2012~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029년 이후에도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65세를 법정 연금 수급연령의 상한선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유연퇴직을 위한 부분연금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법안(Betriebsrentenstärkungsgesetz)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하여 고용보

험에서만 이루어졌던 부분연금이 다시 연금제도에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사적연금

1) 기업연금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일의 기업연금제도는, 마르크스에 의하여 1889년에 제정된 공적연금의 도입이전, 이미 여러 기업에서 근로자를 원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양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기업연금 시스템으로는 17세기 자를 랜드 광산 노동자의 "Bruderbüchse" 에서 민간 직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대표적이었다. 이후, 초기의 제도들은 19세기 말 생산직 노동자 뿐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연금으로 확산되었다.

전통적으로 기업연금 시스템은 대기업의 특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이 당시 기업연금에서 제기되었던 법적 요구 사항은 기업연금 개선 조항(BetrAVG)이었다. 이는 기업의 변화나 파산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연금의 법적인 틀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다. 즉, 1974년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기업노령부양법(Gesetz zur betrieblichen Altersvorsorge)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연금의 수급권에 관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기업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였는데, 이것은 사용자측이 기업연금을 인사관리의 수단, 즉 종업원의 이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법을 통해 근로자가 35세 이상이고 이미 10년 이상 기업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직한 경우에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의 법 발효 후 6년이 안되어

독일의 거의 모든 대기업이 기업연금을 도입하거나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효과를 보였다(김원섭, 2013).

이후 1999년 기업연금에서 확정기여방식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업연금에서 중요한 변화는 2001년의 개혁에서 나타났다. 즉, 2001년 개혁에서 기업연금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기업연금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주어졌다. 이는 기업연금 영역의 확대로써, 기업연금에 있어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업연금 형태의 노후보장인 공공부문의 추가보장(öffentliche Zusatzversorgung), 직접보조 및 지원금고(Direktzusagen und Unterstützungskassen) 그리고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en)은 그대로 유지하며, 두 가지 형태를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즉, 2001년 이후 연금금고(Pensionskassen)와 연금기금(Pensionsfonds)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연금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기업연금은 공적연금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공적연금에서 2001년의 연금액 조정식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요소에서의 변화나 2004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액 조정 계산식 변경은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의 인정 요소를 간소화하는 변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연기와 2013년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결정은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규정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기업연금 가입 시 소득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면제의 혜택이 한시적이었던 것을 연장하는 조치를 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연금을 확장하거나 촉진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2017년 기업연금강화법(Betriebsrentenstaerkungsgesetz)에서 순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pure Defined Contribution)를 새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연금

에 대한 운영 책임의 경우,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두었던 것을 사회파트너 (Sozial Partnerschaft)로서 전체 노동조합(Gewerkschaft)과 경영자 연합(Arbeitgebervereinigung)이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Deutscher Bundestag, Ausschussdrucksache 18(11)971). 이러한 신규 규정은 중소기업의 기업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22)]

이렇듯 기업연금에 대한 독일의 노력은 임의가입을 근간으로 하면서, 기업연금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연금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개인연금 – 리스터연금, 뤼룹연금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에 따라 독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는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에서 추가적인 연금 소득의 역할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개인연금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닌 임의가입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전환이라고 할 수 없으나, 특정한 노후연금(리스터연금, 뤼룹연금, 그리고 임금 이전(Entgeltumwandlung))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개인 저축을 자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1년 개인연금으로서 리스터 연금(Riester-Rente)이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achverständigenrat, 2017).

1) 공적연금의 보험료율 및 연금수급액의 조정을 통해서 공적연금을 안정화(Haltelinie);

22) 이외에 최근의 기업연금 확대조치로 Nahles-Rente등이 추가로 제안된바 있다 (Carsten Hefeker, Nahles-Rente und Deutschland-Rente, List Forum, 2017, 42:309-332, Springer, 2016).

2) 리스터 연금과 같은 개인저축수단에 보조금을 지급;

3) 임금이전 및 기업연금(betriebliche Altersvorsorge)의 강화;

4) 리스터계단(Riester-treppe) 및 기본연금제(Grundsicherung)의 도입 등이다.

[그림 1] 2000년 이후 독일의 주요연금 관련 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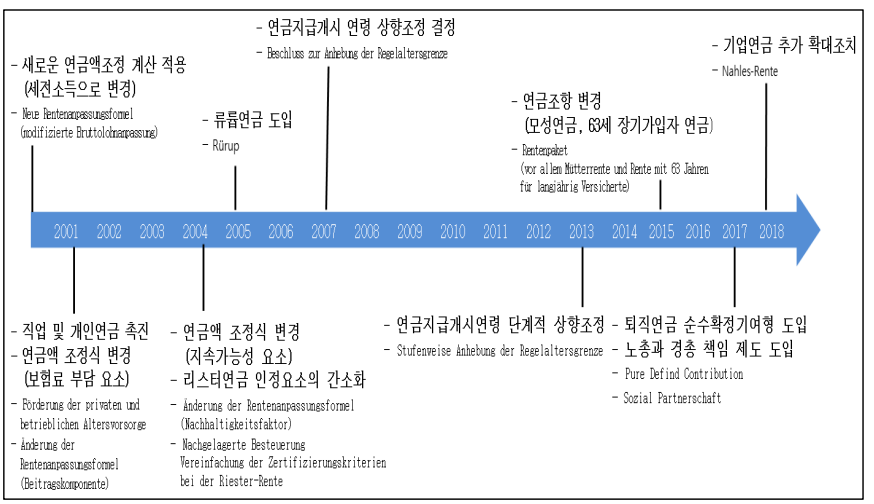

자료: Sachverststaendigenbericht zur Begutachtung der 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2017), Zeit fuer Reformen: Jahresgutachten 2016/17 와 자체 추가 자료에 의하여 작성.

리스터연금의 목표는 법정연금보험의 감소분을 보충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독일은 2001년과 2004년의 공적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연금 틈새(Rentenlücke)를 리스터 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Börsch-Supan et al., 2016).[23] 그리고 리스

23) 연금 틈새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리스터 표준가입자(Standard-Riester-Sparer)를 가정한다(Börsch-Supan 2016). 리스터 표준 가입자란 법정 연금의 틈새를 파악할 때 가정하였던 법정 연금 표준가입자(Standardrentner)에 대응하

터 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변화는 개인연금 가입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단계적인 보조금의 확대와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입자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보험시장에서의 확대 정책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리스터연금의 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리스터연금은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즉, 금융기관이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리스터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연방정부에 제출해서 리스터연금으로 인정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연방정부는 리스터연금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초기에는 11개 항목의 인정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고, 이를 충족해야 했던 것이 2005년에는 5개 항목으로 크게 축소된 것이다 (AlterseinkuenfteGesetz, 2005).

이와는 별도로 2005년에 Rürup 연금이 도입되었다. Rürup 연금의 법적 근거는 퇴직소득법이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공적연금보험에 포함되지 못하고 또한 Riester 연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계층이다.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 그리고 리스터연금이

는 개념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으며,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를 20세부터 65세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납부한다. 리스터 연금의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 1%에서 4%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는데(Riester-Treppe), 이 역시 연금 틈새의 상쇄 여부를 계산에 반영한다. 이 외에도 각 시기별 기대여명, 인플레이션, 이자율, 관리운영비 역시 계산에 반영하였다. 65세 기준 기대 여명은 성별에 관계없이 각각 19.2년(2012년), 22.6년(2040년), 26년(2060)으로, 인플레이션은 매년 1.5%로 가정 하였다. 이자율은 2002-2015년 기간에는 4%, 2015년 이후에는 4.5%로 계산하였다. 관리운영비는 연간 보험료의 10%를 보험료 적립 기간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금 수급시기에는 관리운영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Börsch-Supan et al, 2016:27).

이들을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들을 위한 민영보험을 도입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Rürup 연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포함하고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하므로 "기초 연금(Basisrente)" 이라고도 한다.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에서 전체 국민에 대한 기본보장을 충실히 하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추가적으로 소득비례 형태의 보장을 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는 달리, 공적연금에서 적용제외된 계층에 대하여 개인연금인 Rürup 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영보험에서 저소득 자영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기초보장을 수행하면서 국고에 의한 지원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세제해택을 받도록 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다.

Ⅲ.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가. 공적연금의 종류

독일의 공적연금은 대다수의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법정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연금(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Beamtenversorgung)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법정연금보험은 독일 국민들의 대다수가 가입하는 연금제도로서, 본 장에서는 독일의 국민연금(Deutsche Rentenversicherung)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나. 적용범위

공적연금의 적용은 의무가입(pflichtversichert)과 임의가입(freiwillige versicheru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무가입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 근로자(arbeitnehmer)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추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훈련생(auszubildende), 그리고 일부 자영업자들도[24] 의무가입에 포함된다. 또한 의무가입의 범위에는 크레딧 수급자들도 포함된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모(母) 혹은 부(父), 가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 합법적으로 용인된 직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25], 자발적 군복무자 혹은 자원봉사자, 질병급여 혹은

24)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인 자영업자들은 프리랜서 교사, 장인(Handwerker), 가내수공업자(Hausgewerbetreibende), 조산사, 어부 등이 해당된다.

실업급여 등 소득보장 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무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가입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26]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능동적 가입자(aktiv Versicherte)와 수동적 가입자(passiv Versicherte)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입자의 규모는 2015년 현재 약 53,813천명이며, 이 중 능동적 가입자는 37,027천명이며, 수동적 가입자는 16,786천명이다. 총 가입자 및 능동적 가입자의 수는 196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총 가입자 대비 능동적 가입자의 비중은 감소 후 2000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25)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임금의 80% (2016년 €2,324)수준으로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Reha und Rente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2016)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Allgemein/de/Inhalt/5_Services/03_broschueren_und_mehr/01_broschueren/01_national/reha_und_rente_schwerbehinderte_menschen.pdf?__blob=publicationFile&v=23

26) 임의가입을 위한 보험료는 2016년 현재 18.7%이며, 최소 보험료 금액은 €84.15이고 최대액은 €1,159.40이다.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표 Ⅲ-1〉 독일의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총 가입자	능동적 가입자	총 가입자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율
1962	25,880	18,612	71.9
1965	25,683	18,969	73.9
1970	26,032	19,568	75.2
1975	25,915	19,486	75.2
1980	26,998	21,570	79.9
1985	36,003	22,391	62.2
1990	40,953	24,128	58.9
1992	49,854	32,495	65.2
1995	49,432	31,430	63.6
2000	51,107	33,830	66.2
2005	51,729	34,722	67.1
2010	52,223	35,370	67.7
2011	52,423	35,546	67.8
2012	52,672	35,714	67.8
2013	52,972	36,194	68.3
2014	53,330	36,483	68.4
2015	53,813	37,027	68.8

자료: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2017.

여기서 능동적 가입자란 조사년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보험료 기여 혹은 크레딧의 혜택 등으로 당 해에 연금의 기여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다. 수동적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은 있으나, 능동적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능동적 가입자는 다시 두 가지 종류의 가입자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보험료 기여자(beitragszahler)[27]이고 또 다른 하나

는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기여하지는 않으나 보험료 기여 기간으로 일부를 인정해 주는 산입기간(Anrechnungszeiten versicherte)을 가진 자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보험료 기여자는 다시 의무 가입자, 임의 가입자,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또한 의무가입자는 고용된 근로자(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 일부 자영자(selbstständig), 그리고 기타(weitere personengruppen)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기타(weitere personengruppen)는 자녀양육, 가족돌봄, 자발적 군복무 등의 크레딧 수급자들이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 등은 미니잡 등의 근로자로써 근로자의 보험료 기여는 면제되나 고용주가 이들을 위한 보험료를 기여해야 하는 취약 근로자들이다.[28]

[그림 2] 공적연금의 가입자 관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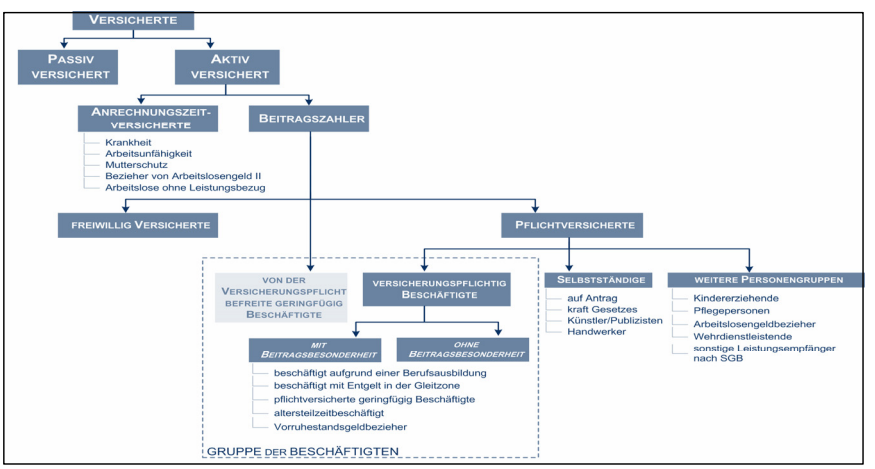

자료: Versichertenbericht 2016

27) 보험료 기여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즉, 의무가입자(pflichtversicherte), 임의가입자(freiwillig versicherte), 저소득 근로자(von der versicherungspflicht befeite geringfugig beschaftigte)이다.

28) Versichertenbericht 2016 pp.11-13

아래의 〈표 Ⅲ-2〉에 의하면, 능동적 가입자들은 크게 의무가입 대상의 고용 근로자들, 일부의 자영자들, 실업급여 수급자들, 단시간 근로자 등, 크레딧 수급자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의무가입의 고용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능동적 가입자들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들 중 자영자 집단의 수는 가장 적으며, 이들은 능동적 가입자들의 약 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국민연금이 원칙적으로 취약한 일부의 자영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자영자들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독일 노동시장에서는 자영자들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 소득보장 문제가 연금제도에서의 주요 쟁점들 중 하나이다.

〈표 Ⅲ-2〉 가입자 관리 구조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2014년 말)

		전체	여성	남성
능동적 가입자		36,483,088	17,681,127	18,801,961
	의무 가입 대상의 고용 근로자	29,351,137	13,721,189	15,629,948
	자영자	276,794	130,699	146,095
	실업급여 수급자 (SGB Ⅲ)	822,509	340,200	482,309
	단시간 근로 등[29]	4,510,954	2,811,035	1,699,919
	크레딧 수급자[30]	2,607,721	1,309,666	1,298,055
수동적가입자		16,847,231	8,024,700	8,822,531
전체		53,330,319	25,705,827	27,624,492

자료: Statistik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 Versicherte 2016.

29) Geringfügig Beschäftigte은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단시간 고용에 미니잡과 미디잡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건강보험, 실업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의무가입 대상인 공적연금에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30) Anrechnungszeitversicherte

※ 미니잡 근로(Mini-jobber)[31]

2013년 1월부터 미니잡 근로자 역시 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자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연평균 월 소득 €450 이하의 미니잡(mini-job) 같이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도 연금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이들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32] 우선 미니잡의 경우는 근로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연평균 월 소득이 €450 이하의 미니잡일지라도 두 달 이내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 역시 사회보장의 의무 가입으로부터 면제된다. 반면, 연 평균 월 소득이 €450 이하이고 지속적인 근로를 하며 보험가입의무 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미니잡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33],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들을 위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34]

특히, 다수의 고용관계가 중복된 근로자의 경우는 복수의 미니잡 고용관계에 있는지 혹은 미니잡을 주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계산이 달라진다. 복수의 미니잡에 종사하더라도 급여의 합이 €450 이하인 경우는 미니잡에 해당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회보험료 가입 의무 고용이 되어 모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부업으로 미니잡을 하는 경우 해당 미니잡에 대해서는 가입이 면제된다[35](김상철, 2014).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3년부터 미니잡의 기준이 €450로 상향조정되면서, 미니잡 종사자는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미니잡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당연가입기간이 되어 대기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의무가입이 면제되었거나,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미니잡 근로는 대기기간의 1/3만 인정받는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소 기준 소득액은 2013년부터 €175로 인상되어 월 소득이 €150일지라도 €175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는 소득의 3.8%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즉, 월 소득 €100의 미니잡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의 보험료 분담금은 15%인 €15가 되나, 근로자의 보험료 분담금은 €175 기준의 보험료인 €33.08에서 고용주의 보험료 분담금을 제한 €18.08가 된다.

---

31) Minijob - Midijob : Bausteine für die Rent, 2014

또한 2013년부터 미니잡 근로자가 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통하여 연금의무 가입을 면제[36]받을 수 있다.[37] 개인의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미니잡 역시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으로 최저소득 기준(€175) 및 의무가입 면제권 등이 위에서 살펴본 미니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어떤 고용이 개인의 가사에 근거한 것이고 근로자가 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것일 경우 이를 개인 가계에서의 미니잡이라고 하며, 청소, 요리, 잔디 깎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보험료의 경우 고용주가 5%를 분담하며 근로자가 13.9%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 미니잡 센터에 의하면, 2013년 현재 개인의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미니잡 고용자 수는 258,820명으로 2011년 231,242명 2012년 242,703명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8]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32) 2013년 개정 이전까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와 달리 미니잡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2013년 개정으로 미니잡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공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김상철, 2014). 또한 미니잡의 경우 연금을 제외하면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가 없다.

33)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450유로 이하의 미니잡에 종사하게 된 근로자는 연금의 의무가입자이지만 원한다면 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미니잡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이 고용관계에서 매월 최고 400유로까지 연금 의무가입에서 면제되며 자기분담금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액 의무 가입기간을 채울 목적으로 연금 의무가입 면제권의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34)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35) 그러나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주 업종에 종사하는 중이라면 부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450유로 소액직업은 한가지로 국한된다. 즉, 두 번째 이후의 모든 450유로 이하의 직업은 주 업종과 합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소액고용이 아니게 되므로 각기 연금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수발보험의 가입의무를 가지게 된다. 단 실업보험의 분담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니잡은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취업한 직업이다. (Minijob - Midijob : Bausteine für die Rent, 2014)

36) 연금보험 가입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은 다양한 혜택들을 임의로 포기하는 것이다. 면제를 받음으로써 고용주는 노동보수의 15%만을 일괄분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분담금은 없다. 그 결과 각종 대기기간 완성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

37) 그러나 미니잡의 연금 의무가입 면제를 신청하는 것 보다 보험료를 납부하여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연금 수급 시 이익이 된다. 즉, €450의 월간소득이 있는 직

미니잡의 경우 월간 소득이 €450를 꾸준히 넘는 경우 그 당일부터 더 이상 미니잡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월간 소득이 €450를 넘는 기간이 연간 최장 2개월이 안 되는 경우 미니잡은 유지된다. 또한 단기고용의 경우 처음 예정을 넘어 두 달 혹은 50일을 넘겨서 근로를 한다면, 그 넘어선 날부터 연금의 가입의무가 발생한다.

〈표 Ⅲ-3〉은 연령 별 인구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는 53,422,103명이며, 이 중 능동적 가입자 수는 36,483,088명이다. 따라서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중은 68.3%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4년 말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는 5,152,977명이며, 이 중 능동적 가입자 수는 2,453,174명이다. 따라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중은 47.6%로 나타나고 있다.

장에서 1년간 일을 하면 고용주 단독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매월 증가되는 연금액수는 3.46유로이다. 반면에 피용자가 참여해서 전액 연금보험료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연금액수는 4.36유로 정도가 된다.

38) www.minijob-zentrale.de

〈표 Ⅲ-3〉 연령 별 인구 대비 능동적 가입자 비율

(2014년 말)

	인구	능동적 가입자	능동적 가입자 비율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전체	53,422,103	36,483,088	68.3%
여성	26,454,019	17,681,127	66.8%
남성	26,968,084	18,801,961	69.7%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전체	5,152,977	2,453,174	47.6%
여성	2,650,848	1,201,561	45.3%
남성	2,502,129	1,251,613	50.0%

자료: Statistik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Versicherte 2016; Bevölkerungsdaten: Statistische Bundesamt-Genesis Datenbank 2015

다. 급여체계

독일 공적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위의 세 가지 급여들의 수급조건 및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5년이며, 연금 수급연령은 2017년 현재 65세 6개월이다. 연금수급연령은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부터 67세로 점차 상향조정되어, 1964년생부터는 연금 수급연령이 67세로 조정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경우는 63세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표 Ⅲ-4〉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가입자 출생 연도	상향 월수	취득연령
1947	1	65
1948	2	65
1949	3	65
1950	4	65
1951	5	65
1952	6	65
1953	7	65
1954	8	65
1955	9	65
1956	10	65
1957	11	65
1958	12	66
1959	14	66
1960	16	66
1961	18	66
1962	20	66
1963	22	66
1964 이후	24	67

독일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은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5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수급연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일반 노령연금 (Regelaltersrente), 4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65세부터 감액 없이 수급이 가능한 특별 장기 노령연금 (Altersrente für besonders langjährig Versicherte), 최소 3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63세부터 조기청구가 가능한 장기 노령연금 (Altersrente für langjährig Versicherte), 최소 15년 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40세 이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여성노령연금(1951년 출생자까지

한정) (Altersrente für Frauen) 등이 있다.

일반 노령연금(Regelaltersrente)은 5년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고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때 최소가입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 미니잡 피용기간, 분할연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금액은 월 0.5%씩 증액된다.

특별 장기 노령연금(Altersrente für besonders langjährig Versicherte)은 65세 이상으로 45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한 연금이다. 특별 장기 노령연금은 조기청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감액규정도 없다. 특별 장기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 다양한 크레딧 인정 기간(양육크레딧, 고려기간 등)[39], 미니잡 피용기간[40] 등이 포함된다. 1953년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4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웠다면, 63세부터 감액 없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4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의 연금 수급연령 역시 점차 상향조정된다. 즉,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이러한 연금 수급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장기 노령연금 (Altersrente für langjährig Versicherte)은 최소 35년 이상의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연령보다 2년 빠른 63세부터 연금의 수급이 가능한 급여이다. 장기 노령연금 역시 연금의 가입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 다양한 크레딧 혜택 기간(고려기간 포함), 미니잡 피용기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조기수급 시 월 0.3%(년 3.6%)의 감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감액은 연금수급연령 이후

39) 의무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기여한 기간 뿐 아니라, 다양한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실업급여Ⅱ 혹은 실업부조의 수급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40) 근로자 분담금이 없었던 미니잡 피용 기간은 1/3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까지 지속되며, 유족연금 수급 시에도 감액된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한 연금 수급연령이 67세인 1964년 이후 출생자도 63세부터 장기 노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 총 14.4%의 감액된 연금을 수급해야 한다.

〈표 Ⅲ-5〉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른 조기연금 감액률

피보험자 출생년월	연금수급 연령 상향 개월 수	연금 수급 연령	63세 연금 수급 시 감액 퍼센트
1949년 1월	1	65	7.5
1949년 2월	2	65	7.8
1949년 3-12월	3	65	8.1
1950년	4	65	8.4
1951년	5	65	8.7
1952년	6	65	9.0
1953년	7	65	9.3
1954년	8	65	9.6
1955년	9	65	9.9
1956년	10	65	10.2
1957년	11	65	10.5
1958년	12	66	10.8
1959년	14	66	11.4
1960년	16	66	12.0
1961년	18	66	12.6
1962년	20	66	13.2
1963년	22	66	13.8
1964년부터	24	67	14.4

〈표 Ⅲ-6〉 노령연금의 급여별 특성

전제	일반 노령연금	장기 노령연금	특별 장기 노령연금
최소 수급가능 연령	65세. 1947년생 이후 점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상향	63세	65세
법적 연금 수급연령	65세. 1947년생 이후 점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상향	65세. 1947년생 이후 점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상향	65세
최소 가입기간	5년	35년	45년
인정되는 보험기간의 종류	보험료기여기간 (Beitragszeiten), 대체기간 (Ersatzzeiten), 분할연금기간 (Zeiten aus Versorgungsaus gleich oder Rentensplitting), 미니잡 기간	보험료기여기간 (Beitragszeiten), 대체기간 (Ersatzzeiten), 분할연금 기간 (Zeiten aus Versorgungsaus gleich oder Rentensplitting), 산입기간 (Anrechnungszeiten) 고려기간 (Berueckssichtigungszeit), 미니잡 기간	보험료기여기간 (Beitragszeiten) 대체기간 (Ersatzzeiten), 고려기간 (Berueckssichtigungszeit) 미니잡 기간, [실업급여, 실업급여Ⅱ 혹은 실업보조금 취득기간 제외]

현재 노령연금의 급여식은 개인소득점수(PEP)[41], 연금 종류별 지급률(RA)[42], 그리고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액(AR)의[43]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령연금 급여식
= 개인소득점수 × 연금종류별 지급률 ×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액

41) Personal Remuneration Points (Persönliche Entgeltpunkte)
42) Factor of pension type (Rentenartfaktor)
43) Current pension value (Aktueller Rentenwert)

이때 개인소득점수는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이력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로서, 매년 전 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개인의 상대소득 수준을 생애기간에 걸쳐 합산한 값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납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상응하고 1년 간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1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종류별 지급률은 연금종류별로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계수로서 노령연금 1점, 유족연금 0.55 혹은 0.25 (사망 후 3개월까지는 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액은 소득점수 1점당 부여된 월 연금액 가치로서 2017년 7월부터 서독지역은 €31.03, 동독지역은 €29.69를 적용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독일 표준연금수준(4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수준)은 €16,108이다. 이것은 소득대체율 44.5%에 해당한다. 그러나 순소득 대비로 소득대체율을 계산할 경우 48.1%이다. 순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2012년 50.1%에서 점차 하락하다 2016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7〉 독일 국민연금의 표준연금수준 변화 등

(단위: €, %)

연도	평균소득		표준연금수준 (45년 가입,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	
	총 소득	세전 순소득	총	순 (세전)	총 소득(%)	세전 순소득(%)
2013	33,659	27,847	15,177	13,612	45.1	48.9
2014	34,514	28,553	15,323	13,743	44.4	48.1
2015	35,363	29,253	15,611	13,955	44.1	47.7
2016	36,187	29,880	16,108	14,367	44.5	48.1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7.8),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Oktober 2017, Entwicklung des Standardrentenniveaus allg. RV

그러나 2015년 현재 실제 연금수급자들이 받는 노령연금의 평균 급

여액은 구 서독 €1,014(여성 €583), 구 동독은 €973(여성 €860)으로 나타나고 있다.[44]

2016년 총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약 18,130천 명이다[45]

2) 유족연금

독일의 유족연금 종류는 장기 유족연금(major widow(er)' s pension) 또는 단기 유족연금(minor widow(er)' s pension), 유족자녀연금(Waisenrente) 및 자녀양육연금(Kindererziehung)이 있다. 유족의 범위는 시민권자인 유족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그리고 자녀(입양자녀, 재혼자녀, 양자자녀 모두 포함)이다.

이러한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사망한 가입자의 조건과 유족인 수급자의 조건 두 가지가 충족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우선, 사망한 가입자의 조건으로는 사망 당시 가입자 혹은 수급자였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다. 유족인 수급자의 수급조건은 급여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장기 유족연금은 최소 1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했어야 하며,[46] 45세 이상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29년에 47세까지 상향조정)이거나, 근로능력이 감소하였거나, 18세 이하 자녀(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제한이 없음)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44) Aktuelle Daten 2017
45)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Oktober 2017,
46) 민법상 배우자 등록(신고)된 최소한의 1년 요건이 필요.

〈표 Ⅲ-8〉 독일 유족 배우자 연령조건의 상향조정 계획안

연금 가입자의 사망연도	상향조정 개월 수	연령 기준	
		년	개월
2012	1	45	1
2013	2	45	2
2014	3	45	3
2015	4	45	4
2016	5	45	5
2017	6	45	6
2018	7	45	7
2019	8	45	8
2020	9	45	9
2021	10	45	10
2022	11	45	11
2023	12	46	0
2024	14	46	2
2025	16	46	4
2026	18	46	6
2027	20	46	8
2028	22	46	10
2029년부터	24	47	0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4.7), Hinterbliebenrente: Hilfe in schweren Zeiten, 〈Anhebung der Altersgrenze auf 47 Jahre〉(p.10) 인용.

단기 유족연금은 위의 장기 유족연금 조건 미충족 자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다. 유족자녀연금은 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 경우는 자녀가 학생 또는 직업교육생인 경우에는 27세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연방사회봉사단활동 중인 경우에도 해당기간 동안에는 수급이 가능

하다. 또한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역시 유족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장기 유족연금은 예상 노령연금의 55%이다. 그러나 단기 유족연금은 예상노령연금의 25%이며, 수급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2016년 현재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구 서독 유족남편연금 €266(유족아내연금 €610), 구 동독은 유족남편연금 €364(유족아내연금 €650)으로 나타나고 있다.[47] 유족자녀연금은 한 부모 사망 시, 예상 노령연금의 10%이고 양 부모 사망 시 20%이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독일의 유족자녀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한 부모 사망 시 유족자녀연금과 양부모 사망 시 유족자녀연금 각각 월평균 €166와 €338이다.[48]

〈표 Ⅲ-9〉 독일 유족연금 급여액 현황

(단위: €)

연도	전체 유족연금 급여액	유족 아내연금 (Witwen-renten)	유족 남편연금 (Witwer-renten)	반액 유족자녀연금 (Halb-waisen-renten)[1)]	전액 유족자녀연금 (Voll-waisen-renten)[1)]
2000	481	532	203	150	290
2005	490	548	219	148	303
2010	501	565	237	149	302
2015	531	600	280	161	328
2016	546	618	291	166	338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7.10),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Oktober 2017, 〈Renten wegen Todes nach Rentenarten p.129〉

47) Aktuelle Daten 2017

48)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Bund/de/Inhalt/5_Services/03_broschueren_magazine/01_broschueren/geschaeftsbericht_download.pdf?__blob=publicationFile&v=28

독일의 유족연금 급여산식

유족연금 급여식 = 예상노령연금액 x 55%
* 예상 노령연금
= 가산기간을 포함한 개인소득점수 x 연금지급률 x 연금가치
※ 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이력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점수의 계산 시 가산기간(zurechnungszeit)을 추가하여 노령연금을 계산함. 즉, 60세[49]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 할지라도 60세까지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연금을 계산함 (§ 59 SGB VI Zurechnungszeit)

자료: Sozialgesetzbuch (SGB) Sechstes Buch (VI)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Informationsportal für Soziale Altersvorsorge (www.rententips.de) ; Missoc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독일의 유족연금 계산 사례

유족연금 계산 사례 ;
1960년 12월 12일 태어난 A는 2006년 2월 13일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A는 1980년 4월 1일부터 2006년 2월 13일까지 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A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같았다.

※ A는 60세(2020. 12. 11)가 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유족연금 계산 시 가산기간(Zurechnungszeit)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산기간은 A의 사망일인 2006년 2월13일부터 A가 60세가 되는 때인 2020년 12월 11일까지 148개월[50]이다.
※ 148개월의 가산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2006.02.13(사망일)~2015.12.11(만55세 달성일) = 119개월
2016.01.01 ~ 2020.12.11 (만 60세 달성일) = 30개월[51]
149개월 중 1개월은 보험료 감액기간으로 가산기간은 148개월
※ 가산기간 동안의 기준소득 :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
A의 유족연금액 (월) = 38.16 x 0.55 x € 29.21[52]
= €613.059

자료: Sozialgesetzbuch (SGB) Sechstes Buch (VI)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Informationsportal für Soziale Altersvorsorge (www.rententips.de)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

49)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5세까지를 가산기간으로 고려하였으나, 2004년 1월1일부터 60세까지 5년을 추가하여 가산기간으로 고려하고 있음. 따라서 2001년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50) 가산기간의 과도규정이 적용되어, 149개월 중 한 달은 연금보험료 감액기간이므로

독일 유족연금의 전체 수급자 수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남편연금의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2016년 말 현재 유족연금의 전체 수급자 수는 5,702,0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0〉 독일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수	유족아내연금 (Witwen-renten)	유족남편연금 (Witwer-renten)	반액 유족자녀연금(Halb-waisen-renten)[1]	전액 유족자녀연금 (Voll-waisen-renten)[1]
1992	5,578,246	5,045,310	144,661	375,581	9,952
1995	5,911,220	5,244,580	248,708	401,574	9,554
2000	5,912,454	5,140,001	357,750	395,525	9,367
2001	5,899,931	5,110,330	377,156	393,266	9,172
2002	5,894,212	5,079,360	402,853	392,578	9,106
2003	5,902,917	5,061,016	425,410	396,478	9,332
2004	5,910,936	5,045,803	450,753	394,084	9,347
2005	5,903,260	5,021,671	469,907	391,473	9,301
2006	5,884,106	4,991,758	486,801	385,536	9,225
2007	5,863,543	4,962,425	505,071	376,811	8,873
2008	5,846,457	4,933,330	523,585	370,886	8,642
2009	5,822,919	4,901,114	541,750	361,881	8,386
2010	5,804,870	4,872,089	559,631	355,188	8,201
2011	5,814,536	4,861,030	579,130	356,516	8,253
2012	5,786,268	4,825,654	593,649	349,407	8,061
2013	5,757,310	4,793,765	609,645	336,796	7,674
2014	5,725,301	4,757,968	625,079	325,857	7,181
2015	5,704,463	4,721,657	644,732	322,086	7,074
2016	5,702,014	4,704,339	665,913	316,152	6,979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7.10),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Oktober 2017, 〈Renten wegen Todes nach Rentenarten〉

실제적인 가산기간은 148개월이다.

51) 과도규정의 적용으로 55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은 27/54까지만 가산기간으로 인정됨. 따라서 55세부터 60세까지 기간의 가산기간은 30개월임 (60개월 x 27/54 = 30 개월)

52) 2015년 값으로 계산

3) 장애연금

독일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은 근로 가능시간에 따라 완전 장애연금과 부분장애연금으로 구분한다. 완전장애연금은 근로 가능 시간이 하루에 3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되며, 부분장애연금은 근로시간이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까지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능력은 부분장애연금에 해당하나, 실업상태인 경우 완전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하루 근로 가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이러한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조건은 장애발생 전 최소한 총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최근 5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한다. 여기서 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Wartezeit)은 보험료 기여 기간, 실업 및 질병급여 수급기간, 자녀양육기간 등을 포함한다.

2016년 말 현재 장애연금의 전체 수급자 수는 1,813,534명이다. 이 중 부분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97,182명이며, 완전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1,703,869명이다. 또한 2016년 말 현재 부분 장애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398이며, 완전 장애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736이다. 완전장애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부분장애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를 수급한다.

〈표 Ⅲ-11〉 독일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현황

(단위: 명, €)

연도	장애연금 전체 수급자 수	부분연금 급여액 (teilweiser Erwerbsminderung)	완전연금 급여액 (voller Erwerbsminderung)
2000	1.894.033	547	738
2005	1.649.767	368	686
2006	1.602.431	361	676
2007	1.583.801	359	662
2008	1.563.807	355	647
2009	1.567.841	358	643
2010	1.589.329	359	640
2011	1.634.126	356	634
2012	1.677.538	358	646
2013	1.719.346	363	650
2014	1.755.101	368	664
2015	1.787.854	385	711
2016	1.813.534	398	736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7.10),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Oktober 2017

라. 재원

독일의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근로세대 보험료의 대부분은 현 노인 세대의 연금액으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양은 매우 적다.

독일 국민연금 재원의 대다수는 보험료 수입과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7년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18.7%이며, 근로자의 경우 노·사 균등부담, 자영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 기여의 상한 소득액은 구 서독 €6,350(월) 구 동독 €5,700(월)이다. 그리고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수입에서 정부 보조금의 비율은 1970년 이후

18~27%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구조

(단위: 백만 €, %)

연도	전체수입	보험료	보험료비중	정부보조금	보조금비중	기타 비중
2013	260,669	194,334	74.6%	65,286	25.1%	0.3%
2014	269,359	201,647	74.9%	66,639	24.7%	0.4%
2015	276,161	207,317	75.1%	67,701	24.5%	0.4%
2016	286,188	215,422	75.3%	69,709	24.4%	0.3%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17.8),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 Oktober 2017, Einnahmen RV.

〈표 Ⅲ-13〉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연도	노동자/직원 연금	연도	노동자/직원 연금
1957–1967	14.0	1994	19.2
1968	15.0	1995	18.6
1969	16.0	1996	19.2
1970–1972	17.0	1997	20.3
1973–1980	18.0	1998	20.3
1981	18.5	1999(1.1–3.31)	20.3
1982–1983(8.31)	18.0	(4.1부터)	19.5
1983(9.1)	18.5	2000	19.3
1984	18.5	2005	19.5
1985	18.7	2010	19.9
1985(6.1)–1986	19.2	2011	19.9
1987–1991(3.31)	18.7	2012	19.6
1991(4.1)–1992	17.7	2013–2014	18.9
1993	17.5	2015–2017	18.7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10.6), Rentenversicherung in Zahlen 2013, Beitragssätze in Prozent des Bruttoarbeitsentgeltes(p.9)

마. 관리체계

독일연금공단은 노동사회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자율행정의 원칙(self-administration)을 가지고 운영된다.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과정과 유사하다. 즉, 노동사회부 혹은 독일연방의회의 노동사회위원회(committee on Labor and Social Affairs of the Federal Parliament)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노사위에서는 발의된 법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 이후 독일연방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논쟁 후 투표로 찬·반을 선택한 후 결정된다. 또한 독일연금보험의 감독은 노동사회부, 연방보험감독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연금공단은 자격 및 급여를 관리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통합징수하고 있다.

2. 공적연금제도의 평가

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 재정목표의 재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독일 노동사회부(BMAS)는 매해 법정연금보험(광원·철도원·선원 연금보험을 포함)의 5년 중기전망과 15년 장기전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보고서(Rentenversicherungsbericht)를 작성하고 있다. 연금보험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추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재정상태 현황 분석 및 추계를 통해 재정을 점검하고, 문제발생 시 재정지표에 대한 조정 권고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재정계산의 장기추계를 통하여 2004년 연금개혁 조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2004년의 연금개혁에 의하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완충기금의 재정목표(2030년 목표치)를[53]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고서 작성책임자인 노동사회부 장관은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할 정책적 조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4년 결정된 재정목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수준의 하한, 완충기금(지속가능성 기금) 유지비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율의 경우 연금보험법 제154조 3항에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22%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급여수준의 경우 연금보험법 제154조 3항에서 2020년까지 46%, 2030년까지 43%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완충기금의 경우 연금보험법 제158조 1항에서 1개월 연금지출의 0.2~1.5배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3]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상한 및 소득대체율 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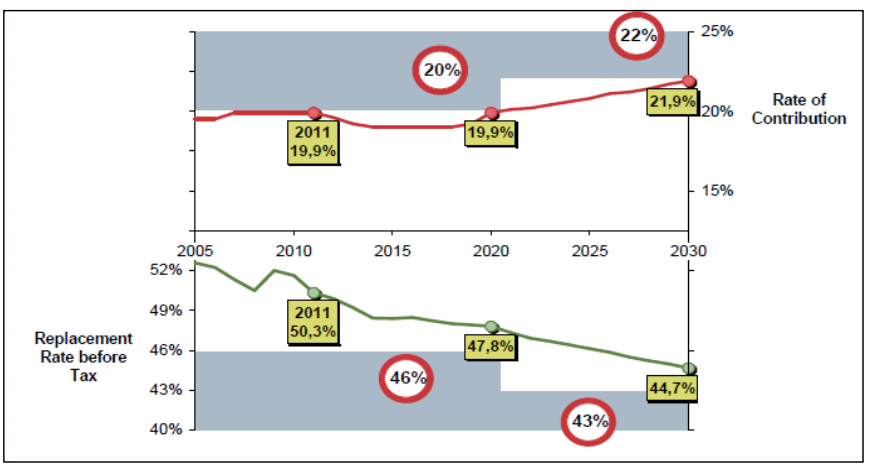

그러나 독일의 인구구조는 변화하고 있다. 독일은 1955년부터 1969

53) 독일연방공단의 Markus Sailers 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법에 명확히 제시된 재정목표는 아니지만, 이를 독일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년 사이 출생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들은 곧 은퇴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 이들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근로세대 인구(20세~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노인 부양비는 현재 35%에서 2045년 5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BMAS, 2016a).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성비의 변화는 현재의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림 4] 65세 이상 인구 비중 및 노인부양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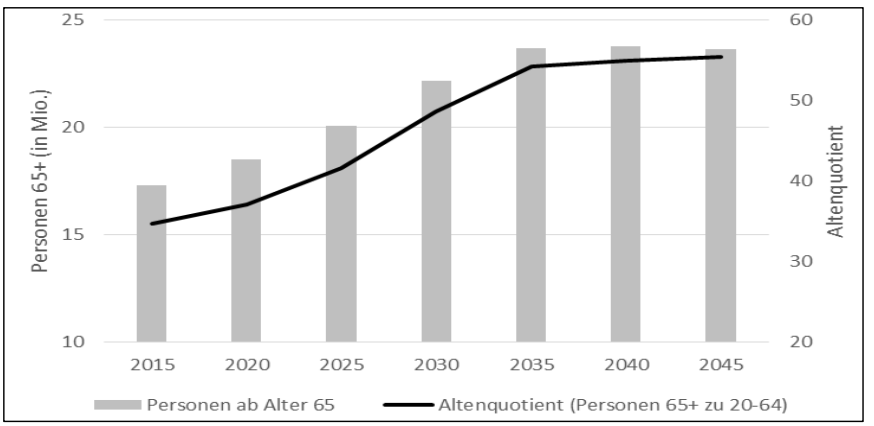

자료: BMAS, 2016, Gesamtkonzept zur Alterssicherung

2) 개선논의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재구축은 추계기간, 완충기금, 그리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상한과 급여수준 하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추계기간의 경우, 현재는 연금보험 보고서(Rentenversicherungsbericht)에서 5년의 중기전망과 15년의 장기전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언급된 바와 같이, 인구구조가 변

화함에 따라 장기전망의 추계기간을 향후 30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것이다. 향후 15년의 장기전망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완충기금의 기준은 현재 1개월 연금지출의 0.2~1.5배 사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기준인 0.2배를 0.4배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잦아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 위기 시 1개월 연금지출의 0.2배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되었다. 2008년의 경제 위기 시에는 노동시장정책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재정위기가 잦아지는 향후에는 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료율 상한과 급여수준 하한을 재조정(Haltelinien fur das Sicherungsniveau und den Beitragssatz)해야 하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은 2030년 43%, 2045년 42%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료율은 2028년에 상한선인 22%를 초과하고 2045년에 26.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대체율의 하락과 보험료율의 증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의 상한은 2030년까지 22% 그리고 2045년까지 2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45년까지 소득대체율 46% 그리고 보험료율 25%를 새로운 재정목표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호 경제상황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국고 보조를 통하여 48%의 소득대체율과 24%의 보험료율을 새로운 재정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BMAS, 2016a).

〈표 Ⅲ-14〉 현행 법 및 46%의 급여수준 하한 설정 시 비교

	현행법		46%의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 료율	급여 수준	보험 료율	급여 수준	보험료 상향 및 추가정부보조 효과 (billion €)	현행 국고보조 (billion€)
2015	18.7 %	47.7 %	18.7 %	47.7 %	0	0
2020	18.7 %	47.9 %	18.7 %	47.9 %	0	0
2025	20.2 %	46.5 %	20.2 %	46.5 %	0	0
2030	21.8 %	44.5 %	22.5 %	46.0 %	9.3	1.9
2035	23.0 %	42.7 %	24.5 %	46.0 %	20.0	4.0
2040	23.3 %	42.0 %	25.3 %	46.0 %	26.6	5.3
2045	23.6 %	41.7 %	25.8 %	46.0 %	29.3	5.8

자료: BMAS, 2016, Gesamtkonzept zur Alterssicherung

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1)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목표를 재조정할 경우, 불가피하게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보험료율의 상승과 급여수준의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여 적정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재정계산에 의하면,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보험료율은 2025년에 20.2% 2030년에 2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여수준은 현재 약 48% 정도이나 2024년 이후 47% 이하로 떨어지고 2030년에 44.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BMAS, 2016b). 이러한 수치는 재정목표인 2030년 보험료율 22% 그리고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급여수준은 2045년에 4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율은 24%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2) 개선논의

2016년 재정계산에 의하면, 2030년 이후 급여수준은 2045년에 4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율은 24%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동사회부에서는 인구보조금(Demografiezuschuss)을 추가로 도입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인구보조금을 추가로 도입하여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즉, 독일 정부는 새로운 국고보조를 추가하여 2045년까지 소득대체율 46% 그리고 보험료율 25%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BMAS, 2016a).

[그림 5] 인구 보조금의 도입을 통한 보험료 상한선과 소득대체율 하한선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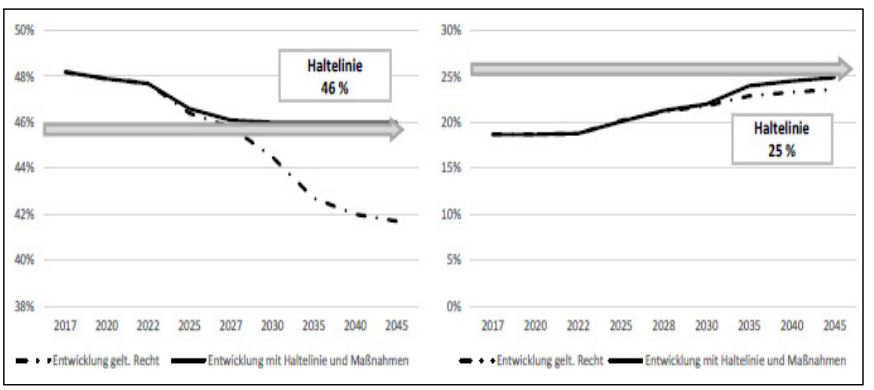

자료: BMAS, 2016, Gesamtkonzept zur Alterssicherung

부연하면, 노동사회부(BMAS, 2015a)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여 야기되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30년부터 인구 보조금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인구보조금은 조세로 충당하며, 2030년부터 10년 동안은 연금지출의 1.5% 그리고 2040년에는 인구보조금을 연금지출의 2.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현재도 국민연금 전체 지출의 약 25%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를 더욱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Ⅲ-15〉 인구보조금 계획

연도	인구보조금 (Demografiezuschuss)	
	연금지출의 비중(%)	billion Euro
2030	1.5	4.2
2031	1.5	4.3
2032	1.5	4.4
2033	1.5	4.4
2034	1.5	4.5
2035	1.5	4.5
2036	1.5	4.6
2037	1.5	4.6
2038	1.5	4.6
2039	1.5	4.6
2040	2.5	7.7
2041	2.5	7.7
2042	2.5	7.7
2043	2.5	7.7
2044	2.5	7.8
2045	2.5	7.8

자료: BMAS, 2016, Gesamtkonzept zur Alterssicherung

다.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독일의 국민연금에서는 일부의 자영자만 공적연금 가입의 의무가 있으며, 대다수 자영자는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다. 독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전체 자영자의 약 78%는 공적연금의 가입의무가 없는 집단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의사 등 전문가 집단은 별도의 공적연금제도인 전문직 연금(Berufsständischen Versorgungswerke)에 가입하고 있으며, 농업인 역시 농민연금(Alterssicherung der Landwirte)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자영자들의 약 6.3%에 해당하는 수공업자, 예술가 및 작가, 그리고 취약계층의 자영자들만 법정연금보험(국민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영자들은 약 3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MAS, 2016a).

〈표 Ⅲ-16〉 자영자 집단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

자영자 집단 구분	의무가입 여부	적용제도	분포
전문직	의무가입	전문직 연금[54]	8.0%
농업인	의무가입	농민연금[55]	7.2%
수공업자	18년 의무가입	법정연금보험	6.3%
예술가 및 작가	의무가입		
취약 직업군	의무가입		
기타	가입 의무 없음	없음	78%

자료: Markus Sailer 인터뷰 자료

54)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swerke
55)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아래의 그림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이전에 자영업에 종사했었던 사람들과 공적연금의 의무가입인 고용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의 순소득(월)의 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과거 자영업에 종사했었다고 언급한 사람들은 약 170만 명에 달하고 있다(BMAS, 2016a). 또한 아래의 그림에 의하면,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평균 순소득은 €1,435로 공적연금의 의무가입인 고용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의 평균 순소득 €1,31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경우 소득의 분포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월 순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 순소득이 낮게 분포되어 있다. 부연하면,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약 9%는 월 소득이 €3,000 이상인 반면, 고용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은 단지 2%만 월 소득이 €3,0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약 50%는 평균 월 소득이 €1,00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고용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의 경우 약 1/3 정도가 평균 월 소득이 €1,0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보장급여(Grundsicherungsleistungen)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100%로 보았을 때, 이 중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비중은 약 17%이다. 그러나 기초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100%로 보았을 때, 이 중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비중은 약 10%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적연금에 의무 가입이 아닌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자영자였던 사람들과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의 순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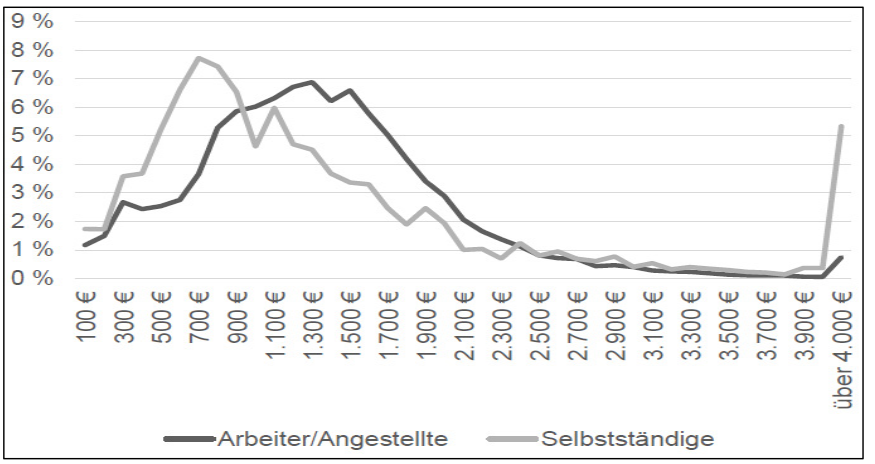

자료: Alterssicherung in Deutschland (ASID 2015)

2) 개선논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은 원칙적으로 자영자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자영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소득은 고용 근로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자영자들 중 일부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하나, 자영자였던 자들의 약 50%는 소득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약 9%는 월 소득이 €3,000 이상인 반면,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은 단지 2%만 월 소득이 €3,0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영자였던 사람들의 약 50%는 평균 월 소득이 €1,00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근로자(employee)였던 사람들의 경우 약 1/3 정도가 평균 월 소득이 €1,0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영자들의 열악한 노후소득보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자영자들을 위한 뤼룹연

금을 도입하였으나, 그 도입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영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BMAS, 2016a). 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주제이나,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약 20%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의 높은 보험료를 자영자들이 홀로 기여하기에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위하여 이들의 건강보험료 인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BMAS, 2016a). 독일의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방식이다. 물론, 국민연금 내에 크레딧 등 재분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연금의 급여액은 근로기의 소득수준 및 보험료 기여 기간에 비례하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산식을 적용하면서, 자영자들에게만 보험료를 낮추어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자영자들에게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른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낮추어 주어, 전체적인 사회보험료의 부담 수준을 완화시켜주자는 생각이다.

라. 비정규직의 증가

1) 현황 및 문제점

독일은 주 2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 등 비정형 근로가 증가하고 있다. 1991년 14%였던 비정형 근로는 점차 증가하여 2010년 26%였으나, 2015년 현재 약 23%로 다소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비정형 근로의 증가는 전체 근로기간 동안 저소득의 비정형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증가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형 근로 사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형 근로의 증가는 비정형근로 경력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근로기 고용 이력을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이다. 따

라서 근로기에 미니잡에서 45년 동안 일한 사람 혹은 비정형 근로의 기간이 긴 사람들의 경우 노후에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형 근로의 증가는 노동시장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재설계를 야기하고 있다.

[그림 7]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비정형 근로 비중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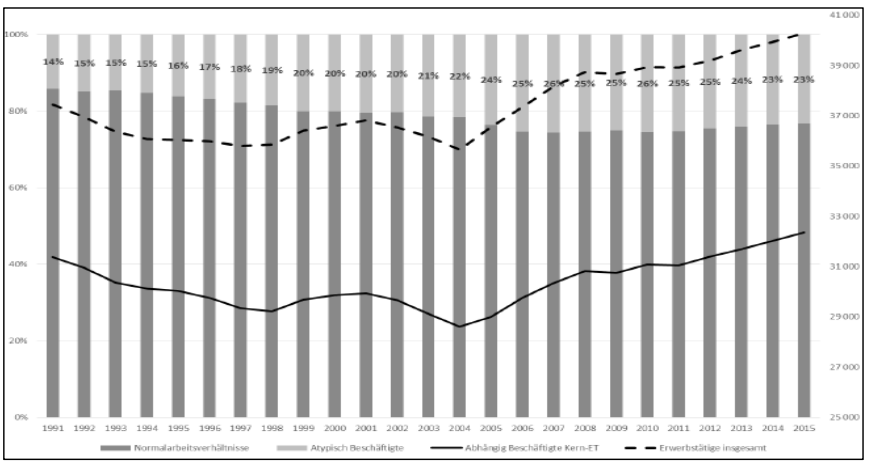

자료: Mikrozensus

2) 개선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비정형 근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약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정책과 연금정책 두 가지 분야를 통하여 이들의 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는 임시직 보호 및 고용계약 관련 법(Gesetz zur Bekampfung des Missbrauchs bei Leiharbeit und Werkvertragen)의 도입을 재고하고 있다. 본 법에 의하면, 임시직은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으로 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된다. 즉, 이는 임시직의 근로 환경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에서는 위와 같은 비정형 근로 등의 증가로 인한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약화 문제를 연대연금(Solidar rente)의 도입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였으나 저소득의 근로로 인하여 노령연금 급여 수준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대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대연금의 재원은 세금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재정부담이 없다. 또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연대연금은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였음에도 급여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이므로, 연대연금의 수급조건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에 연대연금 수급조건에 부합되기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의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현재 고려 중인 연대연금의 효과는, 연대연금 수급 시, 이들의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약 1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MAS, 2016a).

Ⅳ.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본 장에서는 독일의 사적연금제도인 기업연금과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뤼룹연금)을 살펴볼 것이다. 독일은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모두 임의가입 형태이다. 따라서 2층의 기업연금과 3층 개인연금으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독일에서는 기업연금 대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리스터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사적연금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사적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1. 사적연금제도의 현황

가. 기업연금제도

1) 기업연금제도의 개요

독일 기업연금은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체제이다. 기업연금은 일부 대기업 중심의 기업복지 차원 급여였으나, 2001년 개혁에 따른 공적연금의 하향 조정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새로운 차원의 기업연금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근로자가 급여희생방식으로 기업연금 가입을 요구할 때, 기업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도입된 것이다. 2002년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정액(4%)을 기업연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연금과 달리 사용자는 별도의 부담 없이 기업연금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연금 도입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업연금 도입을

사용자가 제안함에도 근로자들이 리스터연금을 가입하겠다고 한 경우가 70%에 이르는 것을 보아도 이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56]

급여 수급권에 대한 보장의 경우, 수급자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는 명목액수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을 가지는 최저급여 보장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기업연금 운영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업연금이 사용자 부담 없이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민간부문 기업연금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 가지 방식은 조직, 재원, 세제혜택, 수급권 보호 등 각각의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사용주가 직접 기업연금 보험료의 관리와 급여지급을 하는 직접 · 내부적 사내운영방식(interner Durchführungs weg)과 이를 외부에서 실행하는 외부적 사외운영방식(externer Durchführungsweg)으로 나눌 수 있다. 사내보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직접보조(Direktzusagen)와 지원금고 (Unterstuetzungskasse)이다. 또한 사외보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 연금금고(Pensionkassen) 그리고 연금기금(Pensionsfunds)이다. 구체적으로 각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직접보조(Direktzusagen) :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형으로 근로자는 기업에 연금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재정은 사용자가 조달한다. 기업은 세금혜택을 받으며, 근로자가 받은 기업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 유형은 한국 퇴직금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

56) 기업연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 부문 근로자와 엄격히 구분된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별도의 강제적용 기업연금에 가입하며, 국가와 가입자가 재정을 분담하고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민간부문 기업연금은 임의가입으로 확정급여방식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2001년 개혁으로 확정기여방식도 도입되었다.

② 지원금고(Unterstuetzungskasse) : 근로자는 기업에 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급여권의 보장을 위해 연금보장금고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기업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어 세제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는 노동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③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 : 사용자 명의로 피용자를 위해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근로자와 유족은 보험회사에 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재원은 사용자, 근로자 같이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으며, 기업연금은 과세 대상이 된다.

④ 연금금고(Pensionkassen) : 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담당하고 보험과 동일한 원리로 관리 운용한다. 근로자는 연금금고에 대하여 연금지급 청구권을 가진다.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세제 규정은 직접보험과 동일하다.

⑤ 연금기금(Pensionsfunds) : 2001년 연금개혁으로 새로이 도입된 방식이다. 주로 생명보험에서 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용한 수익과 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연금기금에 대해 급여청구권을 가진다. 재원은 사용자 부담이나 근로자 급여전환방식으로 부담할 수 있다. 세제 규정은 직접보험과 동일하다.

기업연금이 근로자 노후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연금의 급여 수급권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기업연금에 있어서 급여에 대한 보장은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내보유방식인 직접보조, 지원금고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외보유방식의 경우에는 연금기금에도 적용한다. 다만 직접보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연금금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수급권보장이 적용되는 기업연금의 방식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은 지불불능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

한 기업연금의 종류와 유형별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기업연금 유형 및 세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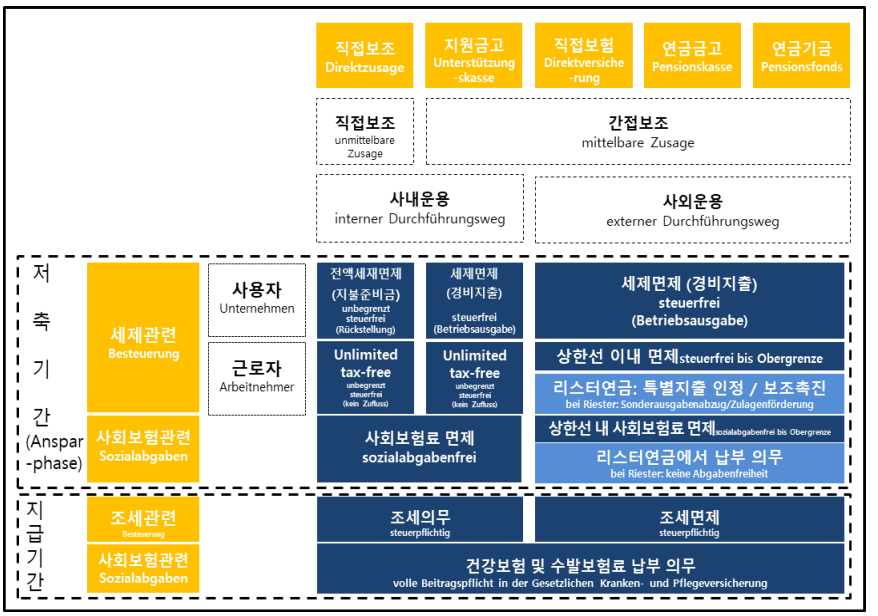

자료: Sachverständigenrat, 2017.

2) 기업연금제도 현황 및 추이

기업연금 가입 현황은 2001년 개혁 당시 전체 근로자의 38%가 가입하였으나, 2011년에는 50% 수준으로 증가되었다(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2012). 다만 2005년 이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그 원인은 중소기업의 기업연금 참여 회피와 고령 근로자의 기업연금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iesewetter et al., 2016; Beznoska und Pimpertz, 2016). 이는

중소기업의 기업연금 참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재정능력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으로는 노후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재정능력 부족 문제와 저소득 근로자의 저조한 참여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림 9] 기업연금 확대추이 (2001-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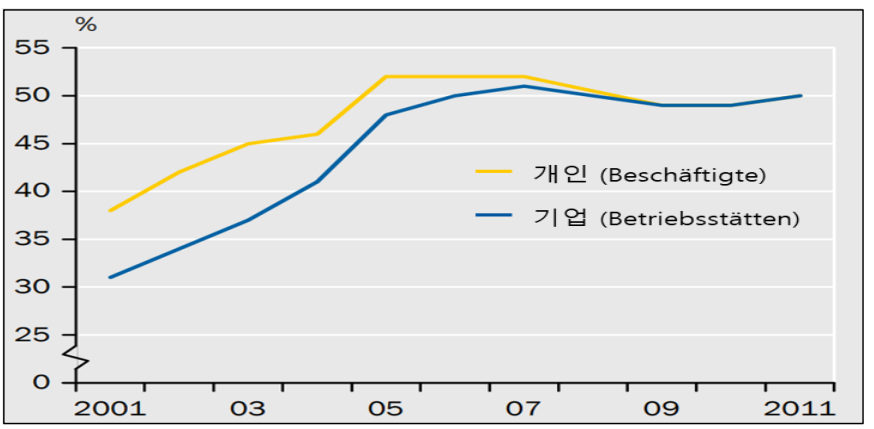

자료: Sachverständigenrat, 2017

또한 기업연금의 가입 확대 정도 역시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2012년 기간 동안 기업연금 가입 변화를 보면, 소득 5분위의 경우 23.1%에서 53%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는 같은 기간에 1.8%에서 3%로 증가하는 데에 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소득계층에 따라 기업연금 가입률도 크게 차이가 나고 또한 증가 정도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의 공적연금이 노후 빈곤문제보다는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연금의 목적 역시 빈곤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 가구 소득분위에 따른 기업연금 가입추이 (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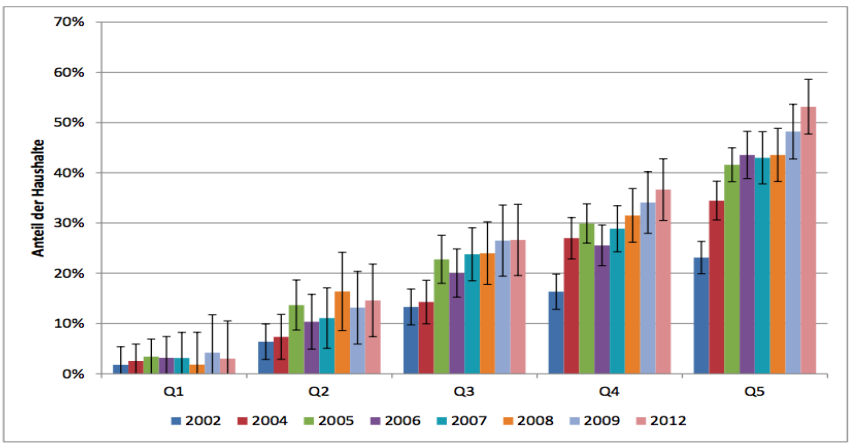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5.

기업연금의 종류별 가입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1]와 같다. 이는 유형별 전체 기업연금에서 각각의 가입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공공부문 추가보장(öffentliche Zusatzversorgung)과 직접보조 및 지원금고(Direktzusagen und Unterstützungskassen) 그리고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en)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으로 절대액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업연금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연금금고(Pensionkassen)이다. 연금금고는 2001년 기업연금에 대한 제도 전환 이후 가장 크게 가입이 증가한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새로 도입된 연금기금(Pensionsfunds)은 기업연금으로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1]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 및 추이(중복가입 포함)(2001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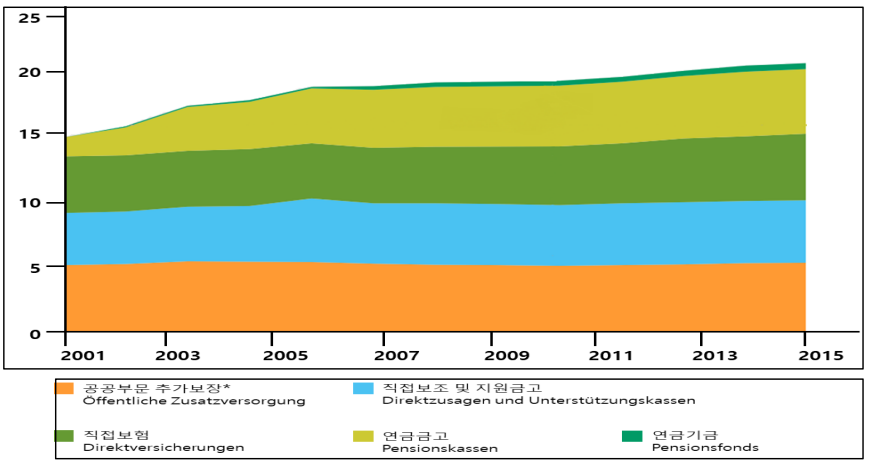

자료: Sachverständigenrat, 2017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표 Ⅳ-1〉과 같다. 기업연금의 총 가입 규모는 2001년 도입 초기에는 1,460만 유로의 계약 규모에서 2015년 2,040만 유로로 약 40%가 증가하였다. 각 유형별에 있어서 공공부문 추가보장(öffentliche Zusatzversorgung)은 2001년 510만 유로 수준에서 2015년 540 유로로 약간 증가하였고, 직접보조 및 지원금고(Direktzusagen und Unterstützungskassen)는 같은 기간 동안 390만 유로에서 470만 유로로 증가하였다.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en)의 경우에도 초기 420만 유로에서 510만 유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증가라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가입이 현상 유지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연금금고(Pensionkassen)의 경우 2001년 초기에는 140만 유로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480만 유로의 계약 규모가 되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금기금(Pensionsfunds)은 2001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15년 40만 유로로 증가되었으나 그 증가액이 매우 낮아

아직도 그 존재 가치가 확인되지 못할 뿐 아니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1〉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현황 및 변화추이(중복 가입 포함)

(단위: 백만 유로, %, %)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연금기금		(0.5) 0.1 (100)	(0.5) 0.1 (100)	(1.6) 0.3 (300)	(1.6) 0.3 (300)	(2.0) 0.4 (400)	(2.0) 0.4 (400)	(2.0) 0.4 (400)
연금금고	(9.6) 1.4 (100)	(18.9) 3.2 (228)	(22.4) 4.1 (292)	(24.1) 4.5 (321)	(24.1) 4.5 (321)	(23.6) 4.6 (328)	(23.8) 4.8 (343)	(23.5) 4.8 (343)
직접보험	(28.8) 4.2 (100)	(24.9) 4.2 (100)	(22.4) 4.1 (97)	(22.4) 4.2 (100)	(23.0) 4.3 (102)	(24.1) 4.7 (112)	(24.2) 4.9 (117)	(25.0) 5.1 (121)
직접보조 및 지원금고	(26.7) 3.9 (100)	(23.7) 4.0 (102)	(25.7) 4.7 (120)	(24.1) 4.5 (115)	(24.1) 4.5 (115)	(23.6) 4.6 (118)	(23.8) 4.8 (123)	(23.0) 4.7 (121)
공공부문 추가보장	(34.9) 5.1 (100)	(32.0) 5.4 (105)	(29.0) 5.3 (103)	(27.8) 5.2 (102)	(27.2) 5.1 (100)	(26.7) 5.2 (102)	(26.2) 5.3 (104)	(26.5) 5.4 (106)
합계	(100) 14.6 (100)	(100) 16.9 (115)	(100) 18.3 (125)	(100) 18.7 (128)	(100) 18.7 (128)	(100) 19.5 (133)	(100) 20.2 (138)	(100) 20.4 (140)

자료: BMAS, 2016.

%: 2001년 기준 기업연금 총 합계액 변화를 의미함;

%: 연도별 기업연금 유형별 가입 비중을 의미함.

또한 기업연금에 있어서 기업규모에 따른 가입 현황 및 그 변화 추이를 보면 [그림 12]와 같다. 2015년 현재 공적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기업연금에 가입한 비율을 살펴보면 1,000명 이상 근로자 기업은 83%, 500명~999명 기업의 경우는 65%, 250명~499명 기업의 경우는 58%, 50명~249명 기업의 경우는 44%, 10명~49명 기업의 경우는 38%, 그

리고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기업연금 혜택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00명 이상 기업과 10인 미만 기업은 그 차이가 매우 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 규모 간 차이는 2001년 기업연금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대규모 기업 중심의 기업연금 가입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과거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12] 기업 규모별 기업연금 가입현황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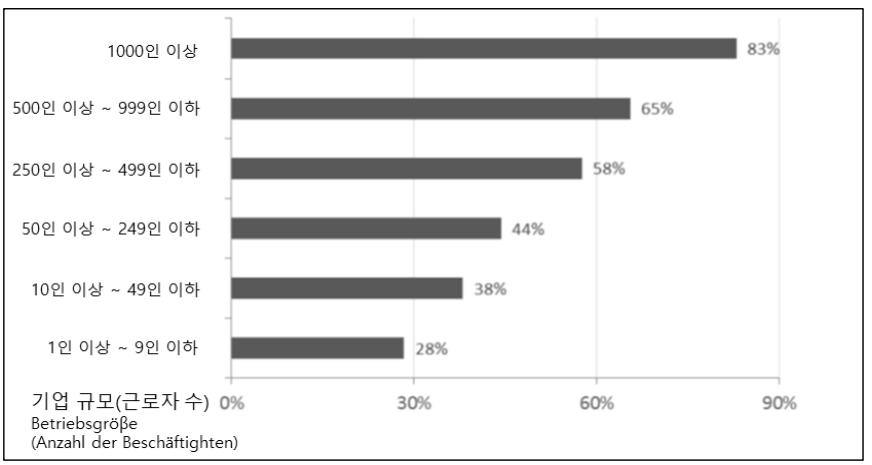

이는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하락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감소 부분을 기업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보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높을 경우 이 분석 결과는 올바른 주장으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판단은 전체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기업연금에 있어서 재원 조달 부담 주체의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기존의 기업연금은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1년 기업연금에서의 변화로 기업연금 보험료 부담주체는 변화하였다. 아래의 [그림 13]은 2001년 기업연금에서의 변화 이후 기업연금 보험료 부담 주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기업연금의 재원 부담 형태 및 변화 비교(2001년 vs 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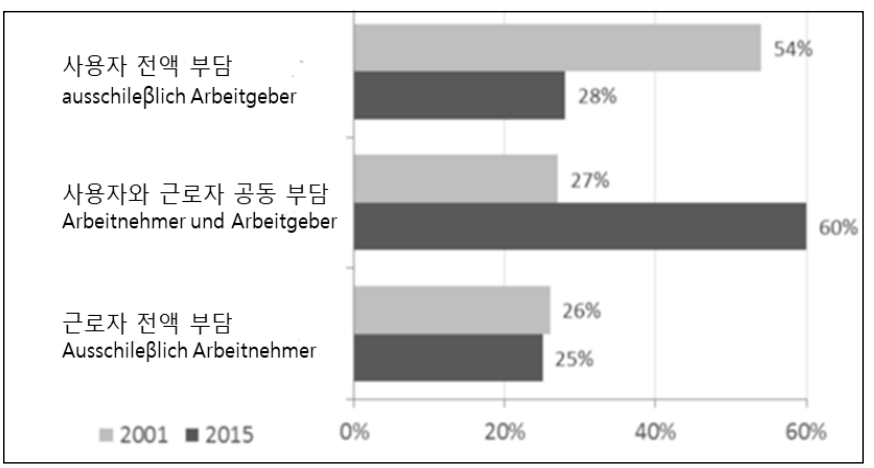

자료: BMAS, 2016.

[그림 13]에 의하면, 2001년 기업연금의 보험료 부담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비율은 54%이고, 노 · 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는 27% 그리고 근로자만 부담한 경우가 26%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2015년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사용자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비중은 28%로 급격히 감소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60% 그리고 근로자만 부담하는 경우는 25%로 변화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사용자 단독으로 부담하던 비중은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급여수준이 감소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업연금의 재원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단독 부담보다 노·사 공동 부담으로 전환되거나 새로이 신설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개인연금제도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리스터연금의 핵심 역할은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 하향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에 리스터 연금 도입 당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연금이 이를 보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개인연금제도는 오랫동안 생명보험 형태가 지배적이다. 물론, 저축형이나 투자기금형도 개인연금 형태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 개인연금의 형태를 걸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리스터 연금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리스터연금제도 현황

(1) 리스터연금의 개요

□ 리스터연금의 법적 기준 및 개념

리스터연금은 노후자산법(Altersvermögensgesetz, AVmG)의 핵심적 요소이다. 노후자산법은 2001년에 도입되었고, 2002년부터 정부지원을 받는 개인연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리스터연금은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의 규정을 따른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을 위한 자본형성

을 통해서 다층보장체계로의 전환과정에서 감액된 공적연금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개인연금은 자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보조금의 지급으로 가입이 장려된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직 · 간접적으로 연금 삭감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모든 개인연금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를 리스터연금이라고 지칭한다.

□ 리스터연금의 지원대상(Förderberechtigter Personenkreis)

리스터연금의 주요 지원대상은 미래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인하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며, 이들에 대해 정부는 직 ·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한다. 〈표 Ⅳ-2〉은 직 · 간접적 지원대상 및 비지원대상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직접 지원대상은 법정연금보험, 농민사회보험의 노후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당연 가입자이다. 직접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생애 동반자(Lebenspartner)는 직접지원 대상자가 아니지만, 간접지원 대상자로서의 정부지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직접 지원대상의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문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Oehler(2009)는 약 25만명으로 측정했다. Sommer(2007)는 2003년의 소득소비조사 및 2008년 UN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약 3,750만 명의 직접지원 대상자 및 430만 명의 간접지원 대상자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Fasshauer와 Tautaoui(2009)는 약 3,530만 명의 직접지원 대상자 및 330만명의 간접 지원대상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DIW는 사회경제패널(Sozio-Ökonomischen Panel, SOEP)을 바탕으로 4,120만 명이 지원대상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원대상은 조사 시점에 따라서 그 규모 상의 차이가 있다. 즉, 현재는 지원대상이지만, 조사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Ⅳ-2〉 리스터 연금의 지원대상

직접 지원대상 (Unmittelbar Förderberechtigte)
– 국민연금(GRV) 및 농민보험의 노후보장연금(di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 의무가입자
– 공무원(Beamte) 등
–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인 자영업자: 수공업자(Handwerker), 조산사(Hebammen), 예술가(Künstler), 저널리스트(Publizisten)
– 직업군인, 임시직 군인, 병역 복무자 및 사회복무자
– 실습생(Auszubildende)
– 저임금 근로자(450유로 이하의 소득) 이면서, 사회보험료 면제를 선택하지 않은 자(사회보험료를 내는 자)
–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요양을 제공하는 자 (Pflegepersonen)
–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Ⅱ의 수급자
– 각종 급여 수급자 : 상병수당(Krankengeld), 휴업급여(Verletztengeld), 사회부조상의 질병연금 (Versorgungskrankengeld), 재활급여 (Übergangsgeld)
– 조기퇴직급여(Vorruhestandsgeld) 수급자
– 법정육아휴직 중인 양육자
–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구직자
–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간접 지원대상 (Mittelbar Förderberechtigte)
– 직접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반자(Lebenspartner) 중 스스로 직접 지원의 청구권을 가지지 않은 자
비지원대상 (Nicht Förderverechtigte)
– 국민연금(GRV)의 임의 가입자
– 별도의 노후보장체계를 가진 전문직연금 당연 가입자: 예) 의사, 약사, 건축가, 변호사, 공증인
– 연금 당연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경미한 활동(Geringfügigkeit der Tätigkeit)으로 인해서 보험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 저임금 근로자 중 (450유로 이하) 사회보험료 납부 면제를 신청한 자
– 노령연금 수급자
– 최저생계비 수급자(Grudnsicherungsempfänger)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6.

□ 연금 상품의 리스터 연금 승인기준 (Zertifizierungskriterien)

정부지원을 받는 리스터연금 상품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리스터연금 승인기준은 의회(Bundestag)에서 정하며 노후연금계약승인법(Altersvorsorgeverträge-Zertifizierungsgesetz, AltZertG)에 따라서 정해진다.

2001년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당시에는 리스터연금의 승인기준이 11가지였으나, 2005년 승인기준을 5가지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 당시 개정은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관리운영체제를 단순화하며, 리스터 연금액의 일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Teilauszahlung). 그리고 2010년 7월 1일부터는 연방국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에 의해서 리스터연금 상품 여부가 결정되도록 변경되었다.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노후연금 계약승인법(AltZertG) 제 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① 연금개시연령은 62세 이후이다(2012년 이전 계약자는 60세).
② 지급되는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로서 보조금 포함한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Normalwerterhaltung의 원칙).
③ 연금의 지급 방식은 종신연금 혹은 부분연금의 2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경우를 선택하여도 연금액의 가치는 동일하여야 한다.
④ 연금계약비용 및 관리운영비는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계산하거나, 매년 보험료의 일부에서 공제한다.
⑤ 보험자는 각 분기별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의 일시 중지가 가능함을 공지해야 한다.

한편, 리스터연금은 상속이 가능하나, 시기별로 상속의 내용이 다르다. 리스터연금 적립시기(Ansparphase)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인 배우자가 보조금을 포함한 2년 치의 적립자산을 자신의 리스터연금에 합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비롯한 다른 유족이 상속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금 지급시기(Auszahlungsphase)에 리스터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85세를 기준으로 나뉜다. 85세 이전에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상 상속을 명시했다면, 그 상속자가 나머지 수급액을 상속할 수 있다. 85세 이후에는 상속이 적용되지 않는다.

□ 리스터 연금계약의 종류

리스터연금은 다음과 같이 총 5가지의 계약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특징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원금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은 별도의 기한 없이 생존기간 동안 지급되며, 연금의 명목가치는 동일하거나 약간 상승한다. 연금의 조기 수급은 62세부터 가능하며, 85세까지는 상품에 따라 다양한 지급 형태를 유지되다가 85세 이후부터는 전통적인 연금형태로 지급하며, 최대 30%까지 일시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대수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각 계약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① 전통적 연금보험(Klassische Rentenversicherung)

전통적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라 종신연금을 수급하는 형태이며, 이때 보험수리의 원칙(Versicherungsmathematische Prinzipien)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즉, 급여는 피보험자의 기대수명에 따른 현금가치의 합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까지 납부한 보험료(관리운영비)와 일치하게 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따른다. 연금지급액은 보험료 납부액, 이자율, 관리운영비, 기대수명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자는 계약체결 시 최저연금수준(Mindestrente)을 고지받는데, 이 최저연금수준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Beitragszahlungen), 정부보조금(Zulagen), 그리고 보장이자율(Garantiezins)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장이자율(Garantiezins)은 실질 적립분(Sparanteil), 즉 총 보험료에서 관리운영비 및 기타 위험자산에 투자한 액수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5년 기준 보장이자율은 1.75%에서 1.25%로 낮아졌다. 또한 2017년부터는 0.9%로 더 낮추었다(Deutscher Bundestag 2016). 리스터 연금액은 반드시 최저연금수준 보다 높아야 하지만, 이를 초과한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다.

② 펀드연계형 연금보험(Fondsgebunden Rentenversicherung)

펀드연계형 연금보험은 전통적인 연금방식과 펀드투자 상품이 결합된 형태이며,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저연금수준 및 적립분에 대한 보장이라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연금보험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펀드연계형 연금보험은 기여한 보험료의 보장 여부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보험료의 보장 부분(beträchtlicher Teil der Beiträge)에 대해서는 위험이 매우 낮은 상품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는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나머지 부분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데, 이 경우 원금(보험료+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리스터연금은 위의 2가지 형태가 지배적이다. 2016년 5월 31일 기준 약 110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전체 리스터연금 계약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③ 리스터 펀드저축계획(Riester-Fondssparplan)

펀드저축계획이란,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는 리스터 연금계약의 형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서, 자산은 더 안정성 있는 쪽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의 손실을 막고, 노후 소득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 형태는 매우 제한적인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며, 대부분 상품 제공자가 투자처를 제공하지만, 가입자가 투자처를 직접 결정하는 상품 역시 존재한다.

급여액은 연금 지급시기에 결정되며, 85세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된다. 펀드저축계획을 선택할 시 관리운영비(Verwaltungskosten)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한 구성과 선택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비용(Depotführungsgebühren)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펀드 구입 시 펀드의 발행비용, 그리고 펀드매니지먼트 비용 역시 발생한다. 2016년 5월 31일 기준 약 310건이 계약되었으며, 전체 리스터 연금계약의 19%에 달한다.

④ 은행저축계획(Banksparplan)

은행저축계획은 고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에 대한 은행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급여액은 이자율과 연동된다. 리스터 계약으로서의 은행저축계획에는 정부가 보너스 이자(Bonuszinsen)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은행저축계획은 예금보호를 안전장치로 두고 있으며, 다른 리스터계약들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은행저축계획의 경우, 보험료 적립시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좌유지비(Kontoführungsgebühren)가 유일하다. 따라서 은행저축계획은 다른 계약 형태들과 비교했을 때, 투명하고,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안으

로 평가된다(Börsch-Supna 2016:17). 2016년을 기준으로 80만 건이 계약되었으며, 이는 전체 계약의 5%에 해당한다(BMAS 2016).

⑤ 자가주택연금(Eigenheimrente, Wohn-Riester)

자가주택연금은 2008년에 새롭게 도입된 리스터 계약형태로써 저축과 대출계약의 혼합형태이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8년부터 실거주 목적의 자가주택을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07년 이후 실거주목적의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신축한 부동산 및 주택 대출금이 이 계약의 지원대상이 된다. 적립된 리스터연금 보험료로 자본금을 형성하거나, 대출 심사 시 상환 및 변제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리스터 지원(Riester-Förderung)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리스터 연금 가입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빠르게 상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가주택연금이 가입자에게 매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Guthaben- und Darlehenszinsen), 계약비용과 계좌유지비용(Abschluss- und Kontoführungsgebühren), 최소잔액과 대출상환액(Mindestguthaben und Tilgungsbeitrag)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가주택연금 역시 다른 리스터 연금계약과 마찬가지로 추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자가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계약과는 다르게 연금액이 현금형태로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주택연금을 통해 획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과세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가주택연금에 대한 과세는 다른 리스터 계약과는 다르게 구성된다. 자가주택연금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주택지원계좌(Wohnförderkonto)에 기록되며, 이 계좌는 소득세법(EStG) 제 92a조 2항에 의거하여 연금개시연령까지 매년 2%의 실질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금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과세한다. 세금은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85세까지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약 160만 건의 계약이 존재하며, 전체 리스터 계약의 약 10%에 해당한다.

□ 정부의 지원방식 (Staatliche Förderung)

리스터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노후보장 보조금(Altersvorsorgezulage)이라는 직접 지불의 형태로 지급되며, 둘째는 특별세액공제(Steuerlicher Sonderaushabenabzug)라는 형태의 간접 지원이 존재한다. 지원여부 및 지원 수준은 국세청에서 판단한다.

① 직접지원 – 보조금 (direkte Zulage)

보조금은 리스터 계약 가입자 본인에 대한 것으로 소득세법(EStG) 제82-86조에 의거한다. 보조금은 가입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되며, 이는 소득세법(EStG) 제 84조에 따른 기본보조금(Grundzulage)과 동법 제85조에 따른 아동보조금(Kinderzulage)이 있다. 기본보조금(Grundzulage)은 연간 154유로를 정액 지급하며, 아동보조금은 각 자녀 당 185유로(2008년 이후 출생 자녀는 300유로)를 지급한다. 아동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되며,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아버지에게도 적립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전년도 세전 소득(beitragspflichtiges Bruttovorjahreseinkommen)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보험료로 기여해야 한다. 2002년 기준 1%였던 최소 보험료율은 격년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4%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를 Riester-Treppe이라 한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리스터연금의 정부 보조금은 연간소득의 4%에 상응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가구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보조금의 최소 25% 이상을 저소득층 및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계층에 대한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최대 90%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전액(과세대상소득의 4%) 납부해야 한다. 만일 전액이 아니라 일부분만 납부할 경우, 보험료액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때 보조금의 총액(기본보조금 및 아동보조금 총액의 합산액)은 이미 보험료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 보조금만으로 이미 4%가 충족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의 청구권자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본인 부담분(Sockelbetrag)으로 납부한다. 본인 부담분은 2008년까지 자녀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기본 보험료가 책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연간 최소 60유로 이상의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부 모두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부부 모두가 최소한 본인 부담분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노후소득법(AltEinkG)의 보조금 신청 간소화 조치를 통해, 가입자는 매년 보조금을 신청하는 대신, 보험계약 시 보험자에게 신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Dauerzulageverfahren).

② 간접지원: 특별세액공제

리스터연금 가입자에 대한 간접지원은 소득세법(EstG) 제 10조 2항 및 3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Sonderausgabenabzug)방식을 따른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연간 최대 2,100유로까지의 보험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소보험료율의 상향 조정은 소득에 따라 절대액의 크기가 높아지게 되는데, 특별공제의 최대 절대액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상향조정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율에 대한 보조는 제한

적인 의미를 갖는다. 〈표 Ⅳ-3〉는 세액공제 상한선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보조금 지급과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중 가입자에게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국세청에서 비교 정산(Günstigerprüfung)을 실시한다. 세액공제액이 보조금보다 더 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표 Ⅳ-3〉 리스터 보조금의 개괄

(단위: 유로)

년도	최소 보험료율*	본인 부담분[57]	기본 보조금	아동 보조금	최초취업 보너스[58]	특별공제 (최대)
2002	1%	45/38/30**	38	46	–	525
2003	1%	45/38/30**	38	46	–	525
2004	2%	60	76	92	–	1,050
2005	2%	60	76	92	–	1,050
2006	3%	60	114	138	–	1,575
2007	3%	60	114	138	–	1,575
2008	4%	60	154	185 (300***)	200	2,100

출처: Börsch-Supan et al., 2016.
* 세후소득 기준,
** 무자녀/ 자녀 1명/ 2명 이상의 자녀,
*** 2008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적용함

다음의 [그림 14]은 리스터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 및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지원 비율은 특히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본인 부담분만을 적립하면 되는 사람들이다. 특히, 소득이 증가

57) Sockelbetrag
58) Berufseinsteiger-Bonus

할수록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줄어든다. 이 부족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아동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실제 가입실태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소득이 낮은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 여부 및 수에 있어서도 젊은 계층이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14] 리스터 연금 가입자의 보조금 지원 비율 (2015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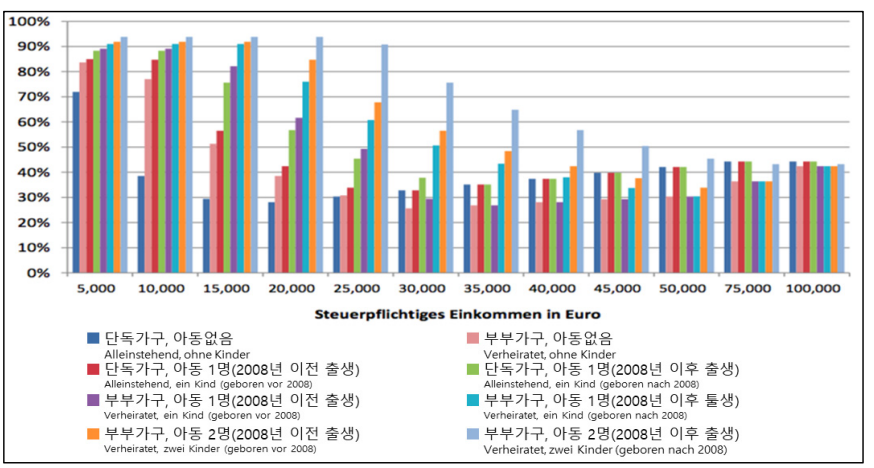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6.

또한 임금이전(Entgeltumwandlung)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 기업 연금법(Betriebsrentengesetz, BetrAVG) 제 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이전(Entgeltumwandlung)을 요구할 수 있다. 임금이전이란 임금의 일부를 노후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적립하

는 것이다. 이때, 사용자는 연금금고(Pensionskasse)나 연금펀드(Pensionsfonds)와 같은 특정한 방식을 선택하여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만일 사용자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 연금법(BetrAVG) 제 1a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외부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금 이전은 소득의 4퍼센트까지 과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기업연금(bAV)의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Bruttoentgeltumwandlung). 그리고 이후 연금 지급 시기가 되었을 때, 급여에 대해서 과세한다(nachgelagerte Besteuerung). 이처럼 기업연금 역시 리스터 연금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세법(EStG) 제10a조 79항에 따라 자신의 기업연금에 대한 리스터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기업연금 보험료는 세후소득으로 계산된다.

(2) 리스터연금의 현황 및 추이

□ 리스터연금 계약 및 현황 추이[59)]

59) 연방노동사회성(BMAS)과 노후자산 보조금사무소(ZfA)에서 집계한 리스터 계약의 수치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차이가 발생함.
첫째, 연방노동사회성(BMAS)과는 다르게 노후자산 보조금사무소(ZfA)는 실제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파악 가능함. 가입자가 경제적 곤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정부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노후자산 보조금사무소(ZfA)의 통계에서는 제외되게 됨. 실제로 연방노동사회성(2016)에 따르면, 전체계약의 1/5은 휴면상태에 있음.
둘째, 개인은 여러 개의 리스터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최대 2개 까지의 상품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Mehrfachverträge). 따라서 3개 이상의 계약은 모두 2개로 계산됨.
셋째,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리스터 상품에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연방노동사회성(BMAS)의 집계에는 기록되지만, 노후자산 보조금사무소(ZfA)의 수치로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노후자산 보조금사무소(ZfA)의 수치가 연방노동사회성(BMAS)의 수치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음.

2001년 개혁 이후 독일 개인연금에 대한 주된 관심은 개인연금의 확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연금의 기본 역할이 기존의 성격과 달리 공적연금의 하향조정에 대한 노후보장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연금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 노력의 하나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과 관리운영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리스터연금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연방노동사회성(BMAS) 및 노후자산 보조금사무소(Zulagenstelle für Altersvermögen, ZfA)에서 발간한 행정자료와 표본가구조사(SAVE)자료를 토대로 리스터 연금의 계약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0]

우선, 전반적인 리스터연금 계약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연방노동사회성(BMAS)에서는 매년 리스터연금의 계약 건수를 발표한다. 2005년 리스터연금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이후에 계약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60) 행정자료의 경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정부별 연금 가입자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성별 및 소득에 따른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음. 또한 정부자료로서 정확한 보조금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자료 만으로는 모집단 중에서 어떠한 집단이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는 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표본가구조사(repräsentative Haushaltsbefragen)를 활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음. 리스터연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표본가구조사는 SAVE(Sparen und Altersvorsorge in Deutschland)로, SAVE는 뮌헨의 노후 경제학 센터(Munich Center for the Economics of Aging, MEA)에서 실시하는 표본 가구조사임. 표본가구조사의 경우, 연령, 소득,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가구 집단이 리스터 연금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 지 파악이 가능함. 또한 보조금을 받는 개인연금저축이 아닌, 노후보장과 관련된 다른 수단들-법정연금, 기업연금,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자산상태, 대출여부와 수준 등 가구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저축 동기에 관해서도 파악이 가능함. 따라서 리스터 연금의 계약 건수는 연방노동사회성(BMAS)의 자료를, 보조금의 규모와 구조 확대 추이는 노후자산 보조금센터(ZfA)의 자료를, 그리고 해당 가구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SAVE 조사를 활용하여 설명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리스터연금의 전체 계약 건수가 약 1,600만 건 까지 증가하였다. 2015년은 2014년 대비 187,000건의 새로운 계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리스터연금은 16,500,000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BMAS 2016).

[그림 15]는 보조금 지급현황 및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12년까지 보조금 지급 총액은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으로 27억 유로에 달한다. 27억 유로의 보조금 총액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직접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본보조금 및 아동보조금이 각각 13억 유로이며, 아동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최초 가입자에 대한 보너스(Berufseinsteiger-Bonus)가 3,800만 유로 지급되었다. 최초가입자 보너스(BerufseinsteigerBonus)는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함과 동시에, 첫 직장에서 리스터 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본보조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이며, 2008년에 도입되었다.

[그림 15] 보조금 지원형태에 따른 지급 총액 변화

(단위: 1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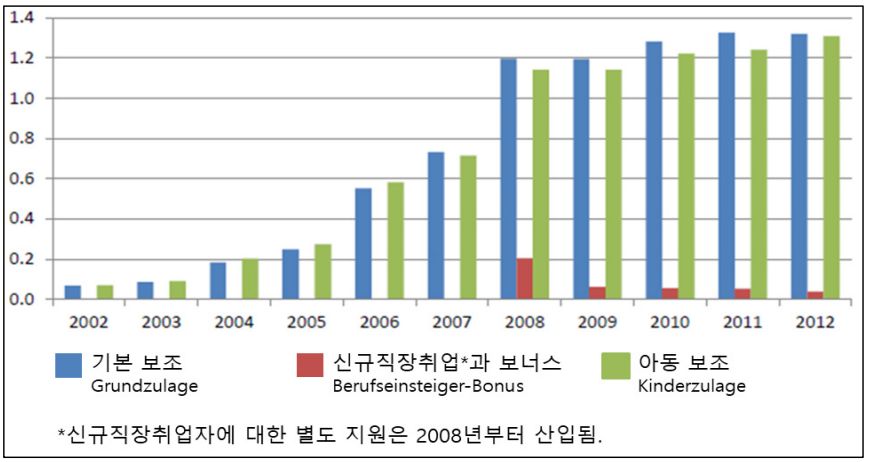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6.

직접 지원방식인 보조금 이외에도 리스터 연금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으로 특별세액공제(Sonderausgabenabzug)가 있다. 2012년 기준 특별세액공제는 9억 유로이며, 직접 보조금과 특별세액공제를 모두 합산하면 36억 유로에 달한다. 2011년과 비교하여 전체 지원규모는 2%가 증가한 데에 반해 아동수당은 6%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기본보조금 및 최초가입자 보너스는 각각 0.4%, 28% 감소하였다.

한편 연령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의 출생자가 전체 가입자의 8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örsch et al. 2016:36). 이렇게 특정 연령에 가입자가 몰려있는 이유는 1986년 이후 출생자는 아직 직업교육이나 학업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5년 이전 출생자는 이미 은퇴 연령 이후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들은 2001년 리스터 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별도의 개인연금에 이미 가입했을 확률

이 높기 때문이다(Kruse and Scherbarth, 2016).

연방노동사회성(BMAS) 및 노후소득 보조금사무소(ZfA)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여성, 저 소득자, 구동독지역 거주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SAVE의 표본가구조사를 바탕으로 리스터 연금을 비롯한 가구의 추가적인 노후보장수단의 확대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표 Ⅳ-4〉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계약 규모는 2001년에 제도 도입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2012년을 전후하여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독일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나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현재 노후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에 의하여 노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리스터연금 전환이 새로운 저축이라기보다 다른 저축상품에 가입되어 있던 것들이 옮겨온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Goll/Maier 2016).

〈표 Ⅳ-4〉 리스터 연금 계약 현황 및 추이

(단위: %)

분류 / 연도	보험계약 Versicherungsverträge	은행저축계약 Bankspar verträge	투자기금계약 Investment fondsvertrag	주택리스터연금 Wohn-Riester/ Eigenheimrente	전체 Gesamt
2001	(100) 1,400(100)	k.A.	k.A.		(100) 1,400(100)
2002	(90.5) 3,081(220)	(4.4) 150(100)	(5.1) 174(100)		(100) 3,405(243)
2003	(89.0) 3,534(252)	(5.0) 197(131)	(6.0) 241(138)		(100) 3,972(283)
2004	(87.8) 3,807(271)	(4.9) 213(142)	(7.3) 316(181)		(100) 4,336(309)
2005	(85.4)	(4.6)	(10.0)		(100)

분류 / 연도	보험계약 Versicherungsverträge	은행저축계약 Bankspar verträge	투자기금계약 Investment fondsvertrag	주택리스터연금 Wohn-Riester/ Eigenheimrente	전체 Gesamt
	4,859(347)	260(173)	574(329)		5,693(406)
2006	(80.6) 6,562(468)	(4.3) 351(234)	(15.1) 1,231(707)		(100) 8,143(581)
2007	(77.9) 8,454(603)	(4.4) 480(320)	(17.7) 1,922(1104)		(100) 10,856(775)
2008	(75.8) 9,285(663)	(4.5) 554(369)	(19.5) 2,386(1371)	(0.2) 22(100)	(100) 12,247(874)
2009	(74.1) 9,906(707)	(4.7) 634(422)	(19.7) 2,629(1510)	(1.5) 197(895)	(100) 13,365(954)
2010	(72.5) 10,485(748)	(4.9) 703(468)	(19.5) 2,815(1617)	(3.1) 460(2090)	(100) 14,464(1033)
2011	(71.3) 10,988(784)	(4.9) 750(500)	(19.1) 2,953(1697)	(4.7) 724(3290)	(100) 15,416(1101)
2012	(70.1) 11,059(789)	(5.0) 781(520)	(18.9) 2,989(1717)	(6.0) 953(4331)	(100) 15,781(1127)
2013	(68.8) 11,013(786)	(5.0) 805(537)	(19.0) 3,027(1739)	(7.2) 1,154(5245)	(100) 15,999(1142)
2014	(67.7) 11,033(788)	(5.0) 814(542)	(18.8) 3,071(1764)	(8.5) 1,377(6259)	(100) 16,296(1164)
2015	(66.7) 10,989(784)	(4.9) 804(536)	(18.9) 3,125(1795)	(9.5) 1,564(7109)	(100) 16,482(1177)
2016(1)	(66.5) 10,958(782)	(4.9) 800(533)	(19.0) 3,131(1799)	(9.6) 1,592(7236)	(100) 16,481(1177)
2016(2)	(66.3) 10,936(781)	(4.8) 790(526)	(19.0) 3,139(1804)	(9.9) 1,628(7400)	(100) 16,492(1178)

자료: Goll/Maier, 2016.

2012년 노후소득 보조금 사무소(ZfA)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수령자의 37.6%가 최소 1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동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조금은 부모 중 한쪽에게만 주어지고, 대개의 경우 어머니가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여성 중 아동보조금을 수령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55%로 보조금 수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그래프의 결과

는 자녀가 많을수록 리스터 연금계약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방노동사회성(BMAS) 및 노후소득 보조금사무소(ZfA)의 가입에 대한 가능성 예측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 아동보조금 수급 자녀별 보조금 수급자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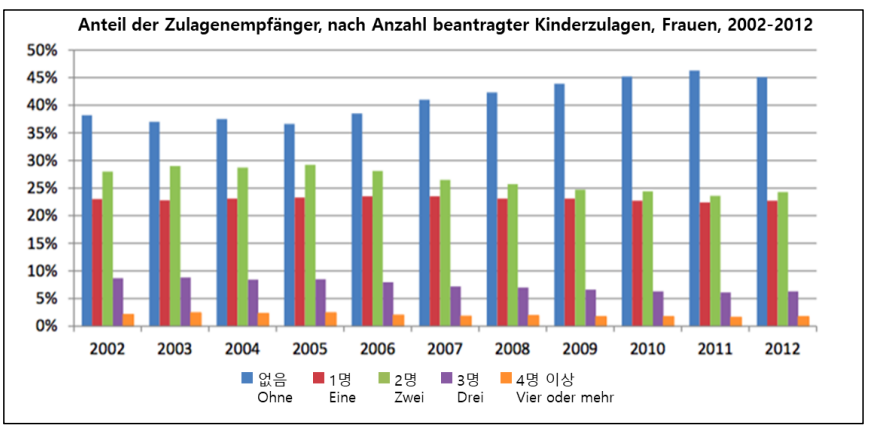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6.

[그림 17]은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체계를 다층화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보장수단의 확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리스터 연금의 경우 2002년 도입 당시에는 7%가 가입하였으나, 2012년에는 44%로 가입률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기업연금은 11%에서 30%로 증가하였다. 지원대상이 아닌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1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현재 리스터 연금이 가장 보편적인 추가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유리한 기업연금이나 리스터연금 외에 이러한 혜택이 없는 노후보장성 연금 등에 가입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기업연금 혹은 리스터 연금 등에 대한 불신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

심해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림 17]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변화 (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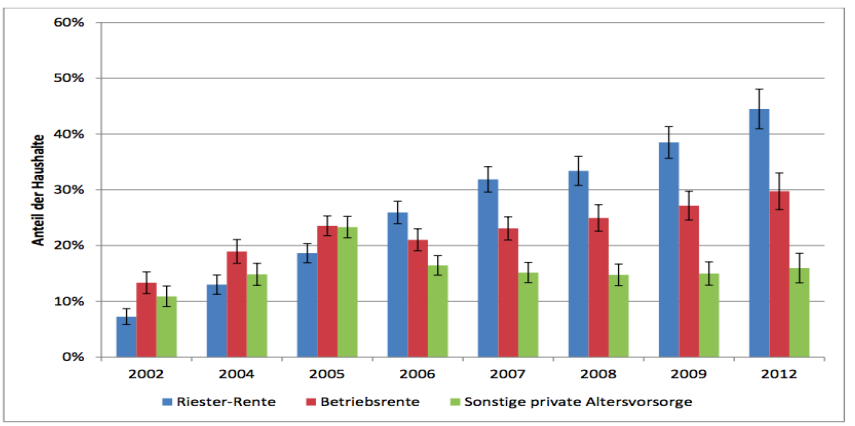

Anmerkung: Klammern geben Konfidenzintervalle (95%) an.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5.

[그림 18]은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과 같은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는 2002년에는 73%로, 상당수의 가구가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에는 39%로 감소했다. 2012년에 1개의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36%로 나타났고, 1/5에 해당하는 가구가 2개의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2개의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가진 가구가 불과 4%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매우 급속하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속도가 빠른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느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림 18] 노후소득보장 여부 및 종류 변화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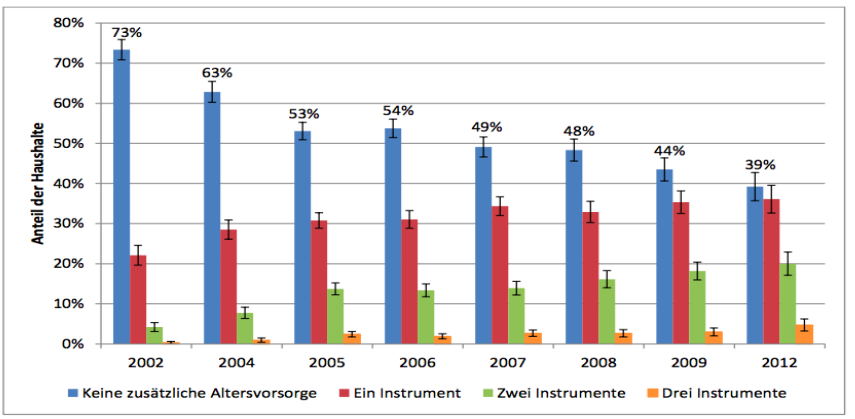

Anmerkung: Klammern geben Konfidenzintervalle (95%) an.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2.

[그림 19]는 가처분 소득에 따른 민영보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은 추가적인 보장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리스터 연금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업연금이 사용자와의 합의 등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9] 가처분 소득에 따른 민영보험의 가입비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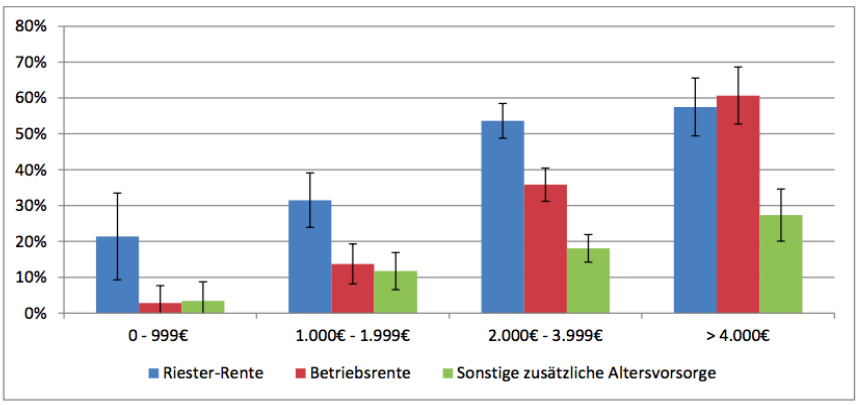

Anmerkung: Klammern geben Konfidenzintervalle (95%) an.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2.

[그림 20]은 가구별 가처분소득에 따른 소득 분위별 리스터연금 가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리스터 연금의 가입률이 빠르게 높아진다. 소득 5분위의 경우 59%의 가구가 최소 1개 이상의 리스터연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2002년에 1/5도 가입하지 않았다. 즉,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 5분위의 가입률이 10.3%에서 59%로 증가한 데에 반해, 같은 기간 소득 1분위의 가입률은 3.9%에서 18%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득 격차에 따른 리스터연금의 가입률 차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리스터연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나는 가입 현황은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개인연금의 가입유인을 위한 저소득층의 높은 지원금만으로는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Börsch-Supan et al. 2016).

[그림 20] 가구별 가처분소득에 따른 소득 분위별 리스터연금 가입비율 (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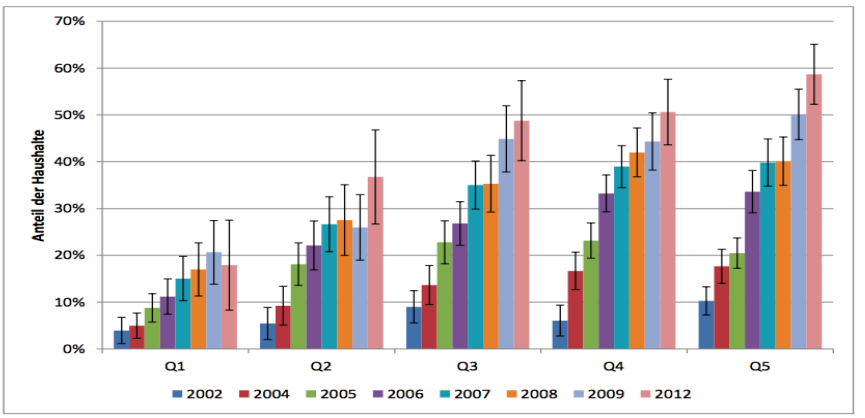

Anmerkung: Klammern geben Konfidenzintervalle (95%) an.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5.

[그림 21]은 자녀수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분포이다. 그림에 따르면 자녀가 많은 가구에서 기업연금 보다는 리스터 연금의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터연금 가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리스터 연금이 자녀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이들의 가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Börsch-Supan et al. 2016:43).

[그림 21] 자녀수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분포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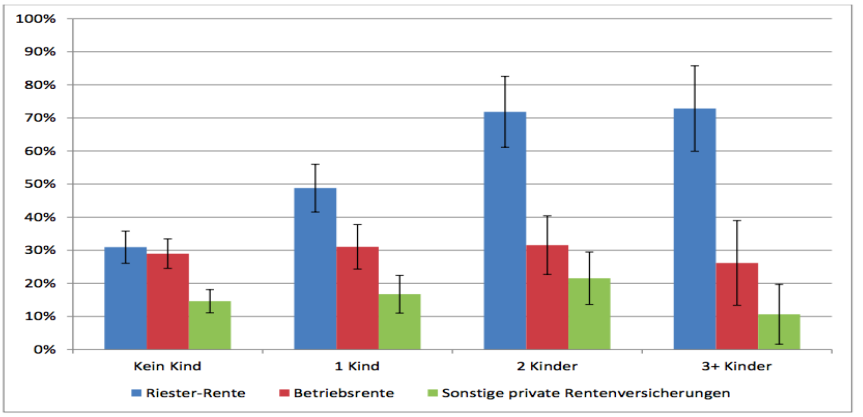

Anmerkung: Klammern geben Konfidenzintervalle (95%) an.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2.

[그림 22]는 연령에 따른 리스터연금 가입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따르면 18~34세의 청년층과 35~54세의 장년층이 55세 이상의 노년층에 비해서 리스터연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젊은 계층이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비교적 젊은 층이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층은 55세 이상의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아동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대의 자녀를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며, 이에 따라 아동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리스터연금을 가입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연령에 따른 리스터연금의 가입추이 (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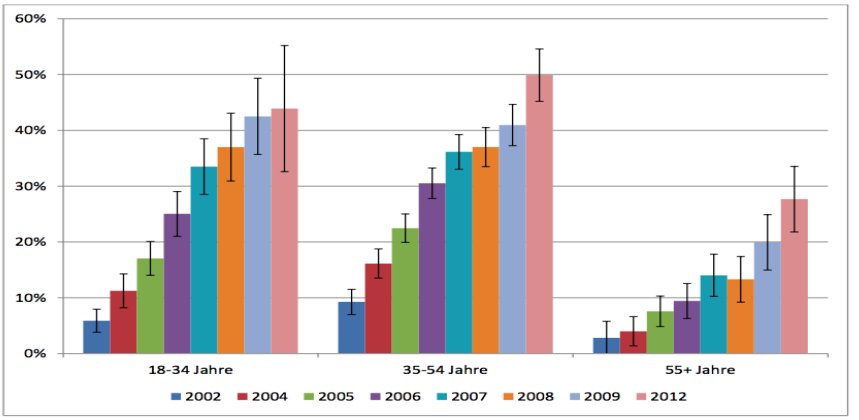

Anmerkung: Klammern geben Konfidenzintervalle (95%) an.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2.

다음의 표는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에 대한 연령별 가입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5〉는 2015년 현재 공적연금 외의 추가적인 노후소득 보장 가입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기업연금을 제외한 기업연금 평균 가입 비율은 39.9%이고, 리스터연금의 경우는 33.8%이다. 기업연금과 리스터연금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공공부문 포함)는 20.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기업연금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리스터연금의 경우는 젊은 계층에서 시작하여 35~45세 연령으로 갈수록 가입률이 상승하다가 그 이후는 가입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리스터연금과 마찬가지로 35세~45세를 중심으로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연금의 경우 신규 가입보다는 기존의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 그대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의 하향 조정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이 필요한 계층이 가입하게 되고, 25세~35세 연령보다는 35세~45세 연령대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가입이 용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아동보조금의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5〉 연령에 따른 추가적인 노후보장 가입 비율

(단위: %)

	노후보장가입 Mit zus.AV	기업연금 가입 Mit BAV			리스터연금 Mit Riester	기업연금 및 리스터연금 Darunter mit BAV und Riester
		전체	공공부문 ZÖD	공공부문 제외 BAV ohne ZÖD		
전체	70.4	57.0	18.4	39.9	33.8	20.4
25세 이상 ~ 35세 미만	64.6	48.0	14.4	34.3	35.8	19.2
35세 이상 ~ 45세 미만	73.1	56.1	16.2	41.3	41.5	24.4
45세 이상 ~ 55세 미만	73.8	61.6	19.9	43.0	34.3	22.1
55세 이상 ~ 65세 미만	68.7	62.3	23.7	40.5	20.6	14.2

자료: BMAS, 2016.

리스터 연금의 가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에 따르면 리스터 계약 건수는 확대 추세에서 서서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이래 정부는 지속적으로 리스터 연금 확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확대 추이는 2012년까지는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리스터연금의 계약 규모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보험계약형(Versicherungsvertraege)과 은행저축형(Banksparplan)은 계약 건수

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리스터연금 가입 현황 및 추이(2001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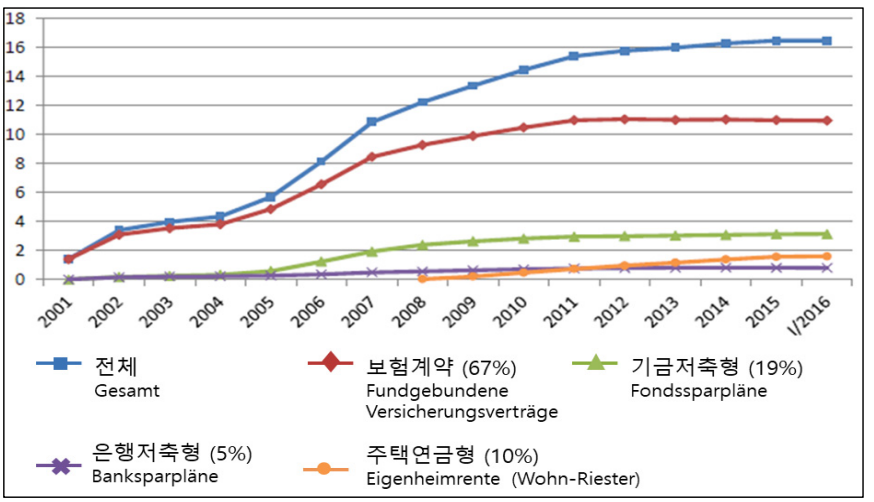

자료: Börsch-Supan et al., 2016.

다. 개인연금제도 – 뤼룹연금(Rürup-Rente)

1) 뤼룹연금제도의 개요 및 현황

노후소득보장체제에 있어서 독일이 다른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뤼룹연금이라 할 수 있다. 뤼룹연금은 독일 사회 경제학자(Bert Rürup : 1943 –)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서 디자인한 연금제도 이름이다.

뤼룹연금의 적용대상은 자영업자 또는 프리렌서로 공적연금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이면서 리스터 연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계층이다. 이는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업연금이나 리스터연금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는 계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안전망을 공공부문이 아닌 민영보험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뤼룹연금은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보험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납부 최고 상한선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보험료와 계산하는데 합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Rürup 연금에 의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일반 근로자나 공무원의 경우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있어서 뤼룹연금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뤼룹연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Basisrente)"이라고도 한다. 이는 뤼룹연금이 어떤 다른 노후보장체제에 해당되지 않고 첫 번째 노후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005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미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증가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소득의 자영자나 프리렌서 그리고 영세한 기업의 종사자에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보험 관점에서 볼 때, 뤼룹연금은 민영보험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 이유는 뤼룹연금의 가입대상자들은 자영자들 혹은 프리랜서들로, 일반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역량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보험회사의 사업 대상으로 메리트가 적다. 또한 이들은 소득 변동이 잦기 때문에 계약 대비 수익률이 낮고, 보험료 납부의 연속성 역시 낮아 휴면계좌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민간보험회사들의 관리운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뤼룹연금은 별도의 보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터 연금과 같이 보험회사가 연금 상품을 만들어서 연방 재무부에서 인정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뤼룹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적어도 60세부터 사망 시 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형태의 상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2012년 이후 신규 계약부터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로 연기하였다. 즉, 뤼룹연금은 저소득 계층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는 만큼 수급자에게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급권 역시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를 중심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근거로 볼 때 뤼룹연금의 조건에는 가입자의 조기 사망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급권은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할 경우 보험 상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특약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경우에는 높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제약 조건은 뤼룹연금의 적극적 가입에 장해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에 중간적 성격의 특약으로 배우자와 25세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주도록 하는 제한적 조건부 특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뤼룹연금의 세제 관련 규정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뤼룹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세 기준에서 공제된다. 연간 최고 한도는 공적연금에서 광부연금보험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2005년 최고 한도는 공적광부연금보험 최고한도의 60%에서 2025년까지 매년 2%씩 상향 조정된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뤼룹연금의 최고 상한선은 공적광부연금보험의 84%가 된다. 이는 독신의 경우 23,362유로, 부부의 경우는 46,724유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뤼룹연금은 2040년부터 지급되는 연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뤼룹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종

료 또는 중간 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보험 계약자가 계약된 연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세제 혜택은 상실되게 된다. 이는 기존에 계약되었던 뤼룹연금 상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이 없어진 일반 생명보험 상품으로 전환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2017년에는 연금액의 74%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평균 2%p 씩 소득세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 1%p 씩 상향조정 된다. 그리고 납부 보험료에 대한 세금 공제 또는 보조금 지급은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2006부터 뤼룹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금 공제는 "기타 연금 지출(sonstigte Vorsorgeaufwendungen)"에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는 최대 2,001유로 (기혼자 4,002 유로)까지 추가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표 Ⅳ-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뤼룹연금의 계약 건수는 절대 건수에 있어서나 확대 추이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시점에는 15만 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6년 현재는 200만 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체 독일 노후보장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하게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Ⅳ-6〉 뤼룹연금 계약 건수 및 변화

(단위: 1,000건, %)

년도	보유 계약 수	년도	보유 계약 수
2005	148(100)	2011	1,490(1006)
2006	296(200)	2012	1,655(1118)
2007	608(410)	2013	1,763(1211)
2008	863(583)	2014	1,883(1272)
2009	1,080(729)	2015	1,973(1333)
2010	1,277(862)	2016	2,007(1356)

자료: GDV (Gesamt Verband der Versicherungswirtschaft), 2016.

뤼룹연금의 존재는 매우 독일적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포괄적 노후보장을 하고자 하는 보편주의적(principle of universality)성격보다는 선별주의적(principle of selection)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근로자 중심의 제도 체계에서 낮은 소득계층과 높은 소득계층을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은 아직도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영세자영자 및 프리렌서가 공적연금에서 제외되는 현상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성격은 노후보장의 연금체제 개혁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의 하나인 뤼룹연금에서 공적연금에서 제외된 계층의 기본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이 일반적인 노후보장을 포괄하지 않고 오히려 민영보험의 상품에 기초보장을 허가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적연금의 평가

가. 노후소득보장 개혁의 역재분배 문제

2001년 이후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제 개혁방향은 공적연금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금틈새를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이 보충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평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초점이 되는 것은 민영보험의 특성상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임의가입형태의 개인연금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가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개인연금 가입을 통하여 연금틈새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 할 것이다.

먼저 가입 규모가 충분한가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독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위한 연금개혁 평가의 핵심은 자본시장투자 시스템(kapitalgedeckter Anlagesysteme)을 기반으로 한 개인연금의 도입 및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개인연금의 가입률(Grad der Verbreitung)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성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lank et al. 2016: 7, Ruland et al. 2016: 723, Börsch-Supan et al. 2016: 4ff., 37ff., 49ff., Clemens and Förstemann 2015: 634, Fachinger et al. 2013: 693, Kiesewetter et al. 2016: 1, Sachverständigenrat 2016: 322ff., 329). 그러나 이러한 정책입안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개인연

금의 가입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를 상쇄하는 효과가 현재까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지원에 해당하는 계약형태(리스터 계약 및 기업연금)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가 초기에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은 2001년 개혁 이후 2005년부터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2년 이후로 전체 인구의 60%까지 상승했다. 2012년의 경우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최소한 하나의 리스터 연금을 계약하고 있으며, 30%가 기업연금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적용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 중 39%는 1층과 2층 중 어느 하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노동사회부(BMAS)의 백서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자 중에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약 20%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BMAS 2016 : 19, 131).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평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개인연금의 가입을 통해서 연금틈새를 메울 수 있는지(Schließen der Rentenlücke) 확인하는 것이다. 즉, 각 가계에서 2001년 연금개혁 이전의 수준과 비교하여, 공적연금 수준의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만한 노후소득자산(사적연금 포함)을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자본시장의 투자 전망에 따르면, 독일 전체 가구의 약 78%가 공적연금의 감소에 따른 연금틈새를 메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78%의 가구들이 은퇴할 시점에는 그들의 총 자본 및 부동산의 가치가 그들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연금틈새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망에서는 나머지 22%의 가구 중 8%가 연금틈새를 메우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Überschuldung). 그러나 부동산을 즉각적으로 현금

자산으로 유동화 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연방정부의 이러한 예측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전체 가구 중 약 53%가 연금틈새를 메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비판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다층체계 시스템(Mehr-Säulen-Prinzip)의 도입 이후, 총 저축 수준(gesamtwirtschftliche Sparquote)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개혁 이후 전체 총 저축액의 변화는 1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삭감 이후에도 가계의 저축수준이 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연금의 가입 증가의 대부분은 단지 포트폴리오 상의 변화에 따른 대체/부수효과(Substitutions-/Mitnahmeeffekte)라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감소가 개인연금을 통해 보완되어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인 연금수준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공적연금 이외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개별적 저축 형태가 2001년 개혁 이후 개인연금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저소득층(GeringverdienerInne)의 경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개인연금의 가입 비율 증가가(besonders schwache Verbreitung) 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낮은 개인연금 가입은 또한 2008년의 금융위기 상황과 겹치면서 가입률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금융위기 이전의 가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61]

61) 2013년의 경우, 세후 소득이 월 평균 2,000유로 이하인 가구의 경우 부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1999년의 가계소득이 월평균 1,300유로 이하일 경우에 부채를 지는 것과 대비된다.

(Blank et al. 2016: 6ff., Börsch-Supan et al. 2016: 5, 41ff., Kiesewetter et al. 2016: 1ff., Kochskämper 2016: 14ff., Ruland et al. 2016: 716ff., 720ff., Sachverständigenrat 2016: 289, 312, 328ff., Schmähl 2014: 383, Wallau et al. 2014: 1ff.).

또한 자본시장 투자를 기반으로 한 사적연금에서는 사회적 기준에 따른 재분배 기능 없이 오로지 기대수명에 따른 재분배만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기대수명 역시 소득과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도입은 소득재분배를 저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기업연금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소득의 역재분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수집에 대한 어려움 및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며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기업연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용된 근로자가 적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Blank et al. 2016: 6, Kiesewetter et al. 2016: 3ff., Sachverständigenrat 2016: 289, 312, Wallau et al. 2014: 1ff.).[62]

나.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한계성

독일에서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

62) 이와 함께 효율성 측면(Effizienzgesichtspunkten)에서 비판도 존재함.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오히려 정부에만 이득이 된다는 주장임. 저소득 계층과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저축률이 줄어들게 된다면,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인 지원방안 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임. 독일의 다층보장체계는 재분배 효과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저소득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개인연금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투자할 능력이 없다면, 그 보조금은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임 (Blank et al. 2016: 6, Kiesewetter et al. 2016: 3ff., Sachverständigenrat 2016: 289, 312, Wallau et al. 2014: 1ff.).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는 개인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는 점이다(auf bestimmte Personengruppen beschränkt). 이때 개인연금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의미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Berechtigung für die staatliche Förderung)의 대상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eznoska and Pimpertz 2016: 15, Blank 2014: 131, Börsch-Supan et al. 2016: 7, Ruland et al. 2016: 719ff., Sachverständigenrat 2016: 291, 306ff., 321, 324, 331, Schäfer 2014: 24). 독일의 공적 연금은 직역별로 구분되며(예를 들면 농업인, 의사 혹은 변호사 등), 이에 따라서 연금수급 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직역에 따른 연금수급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역에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개인연금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분절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의무가입연금 시스템에서 적절한 연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직역 계층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자본시장 투자를 기반으로 한 개인연금에 접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 연금의 경우, 노동관계(Arbeitsberhältniss)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형성이 용이한 반면, 리스터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만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장기실업(Langzeitarbeitslosigkeit)이나 근로능력의 감소 혹은 불능(Inaktivität und geringfügiger Beschäftigung) 등의 이유로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자영업자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종사상 지위가 변경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또한 동일한 위험을 겪게 된다.

특히 자영자의 경우는 리스터연금의 형태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뤼룹연금이라는 형태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세제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저소득 자영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경제활동 자체로 노후에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노후보장 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중에 부채를 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 현상은 정부 재정에 대한 무임승차현상(Trittbrettfahrer-Verhaltens)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정부에 의한 강제저축이나 당연가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을 적립하는 대신 노후에 공공부조 대상자가 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공적연금 적용 대상에서 자영자 및 프리랜서를 제외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이들을 포함하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기여를 통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여 체제의 변화를 통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연금지급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63]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통해서 보험료 재정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없이 법정 연금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함께 공무원 역시 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면,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을 최대 25%까지 유지하면서, 순임금소득 대체율(Nettoersatzrate)을 2010년과 같은 수준인 50%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혁을 거치지 않는다면, 2060년에는 연금수준(Rentenniveau)이 약 41%까지 감소하는 동시에 보험료는 2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eznoska and

63) 공적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영업자들 중 상당한 비중의 사람들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며, 이들의 소득을 통해서 법정연금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Pimpertz 2016: 15, Blank 2014: 131, Börsch-Supan et al. 2016: 7, Ruland et al. 2016: 719ff.,).

이와 함께 자영자에 대한 공적연금 제외 규정과 뤼룹연금에 대한 가입 촉진 방안은 형평성의 문제 (Gleichbegandlungswägungen)도 제기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가입에 있어서 법정연금보험 의무가입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를 따른다. 특히, 가족에 관한 고려, 실업, 근로능력 등 법정연금보험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요소들이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현재의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디지털화로 인하여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자영업 활동(arbeitnehmerähnlichen selbstständigen Tätigkeiten)이 등장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부연하면, 자발적인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뤼룹연금에는 재분배의 기능이 없으며 단지 세액공제만을 제공한다. 이에 뤼룹연금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뤼룹연금을 통한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선호가 높아지며, 주로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역선택의 우려 역시 있다는 점이다 (Hagen and Rothgang 2014: 6ff., Haupt and Yollu-Tok 2014: 22ff., 37, Sachverständigenrat 2016: 314, Schäfer 2014: 24ff., 28).

한편 공적연금과 달리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해지 혹은 해약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지적되고 있다. 민영보험 상품의 약관은 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저소득 자영자가 뤼룹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경제상황 변화로 인하여 저축능력(Sparfähigkeit der

Haushalt)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연금 가입 이후에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납입한 원금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래의 소득 증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결국, 독일 노동시장에서 노동 주기의 안정성(Stabilität der Erwerbsbiographien)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연금 시스템에만 의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미래에 자신의 직업적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리스터연금계약을 개인적으로 체결하는 것도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Beznoska and Pimpertz 2016: 15, Blank et al. 2016: 6, Fachinger 2015: 229,).

저축능력의 부족과 함께 재정관련 지식에 대한 부족(fehlenden Finanzwissens)도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정연금보험의 급여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지원대상 여부, 기대수명, 기대수익 등의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한 개인 소득보장수단의 이해 및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복잡성 및 정보 부족의 문제는 기업의 사용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연급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Börsch-Supan et al. 2016: 5ff., Clemens and Förstemann 2015: 634, Fachinger 2015: 229, Haupt and YolluTok 2014: 32ff., 37, Kiesewetter et al. 2016: 2ff., Sachverständigenrat 2016: 324, Wallau et al. 2014: 1ff.).

Börsch-Supan은 독일인의 평균수명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대수명에 대한 저평가는 노후소득보장 준비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명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은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의 복잡성(komplizierten Regelungen der

Förderberechtigung)에 비추어 볼 때 놀랄 일은 아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적용 집단에 따라서 기업연금 및 리스터 연금의 세금에 관련된 규정이 다르며, 또한 수 차례의 개혁으로 인하여 각 코호트마다 적용대상에 대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z.B. Börsch-Supan et al. 2016: 5, 52, Haupt and Yollu-Tok 2014: 21, Sachverständigenrat 2016: 324).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리스터연금 보조금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사회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자는 리스터연금 보조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다. 특히, 생애주기 동안 고용과 관련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이행이 빈번한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성이 노후소득의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Börsch-Supan et al. 2016: 5ff., 52ff. ; Sachverständigenrat 2016: 314, 326).

다. 중복 납부 및 공적연금 감소의 가능성 문제

중복 납부의 의미는 개인연금의 가입이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 보험료 이중납부(Doppelverbeitragung)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는 투자방식 및 적용대상에 따라 계약 당 이전 과세(vorgelagert) 혹은 추후 과세(nachgelagert)로 오직 한 번만 발생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에 있어서는, 기업연금 혹은 리스터 연금의 납부시기와 연금지급 시기에 각각 세금을 납부한다. 또한 뤼룹연금에서도 오랜 기간 유효한 이전규정(Übergansregelungen)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 경우, 생애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임금이전 등의 모든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추후 과세(nachgelagerte Besteuerung)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조기에 적립금에 대해 분배하는 경우, 분배 시점에서 과세를 적용하게 되며,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추후과세를 통해 받게 될 이익은 사라지고 이전과세가 적용되게 된다는 것이다(Nguyen, 2005: 5ff.).

반면, 전적으로 추후 과세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직역연금에서 "연금이 없는(nicht-geriesterten Form)" 형태의 경우에 특정한 위험을 포함하게 된다. 몇몇 연구(Blank 2014: 131, Blank et al. 2016: 23)에 따르면, 많은 계산들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여의 감소에 상응하여 연금급여가 감소(reduzierte Beiträge in der Sozialversicherung auch zu entsprechend reduzierten Ansprüchen)하게 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64] 실제로 2008년 기준으로 임금이전(Entgeltumwandlung)의 결과로 약 70억 유로, 기업연금에서 총 3백만 유로, 법정연금에 대한 150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회보험료 징수대상에서 면제되었다.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소득계층 일수록 노후소득보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세방식을 적용할 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연금 수급권이 저하되는 동시에, 추가적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의 기여금 및 세금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중복적 누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 소득자가 개인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대로, 이러한 누진적 과세방식(progressives Steuersystem)으로 인해 고소득자는 이익을 얻게 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추후 과세(nachgelagerte Besteuerung)로 전환할 경우 노후소득을 기준으로 납세구간을 산정하게 되고, 대개 낮아진 납세 구간(niedrigere Steuerstufe)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자는 기업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게 되고,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금이 궁극적으로는 역진적인 재분배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실제로 조사에

64) 특히 실업급여 및 법정연금 수준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임.

따르면 현재 상당수의 기업연금 가입자는 대부분 고소득자, 남성, 서독지역에 거주하는 대기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eg Börsch-Supan et al. 2016: 5ff., Kiesewetter et al. 2016: 3, Kochskämper 2016: 19, Sachverständigenrat 2016: 300, 314).

라. 개인연금 관리 · 운영 주체의 한계 및 문제점

노후소득보장의 다층화가 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는 일반화되고 있다. 즉, 민간금융기관이 공적연금에 추가하여 2층 혹은 3층 보장에 대한 관리운영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은 일반화되었다. 이에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연금을 관리 ·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감시 감독은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적 과제 수행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개인연금의 관리감독에 대한 체제는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 여부와 관리기관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적연금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몇 가지는 명확하게 문제점이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에서 민간금융기관이 노후소득보장의 관리 · 운영주체로 참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민영보험에 대한 신뢰 부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정보 투명성의 문제를 들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정보는 보험회사의 재정정보와 함께 보험가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판단으로 제기되는 높은 관리운영비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공적연금과 민영보험의 비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

이 관리운영 비용의 차이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차이의 발생은 체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상품 계약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공적연금이 적용 대상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과 달리, 민영보험은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 계약에 의한 계약관계로 설정되어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의 문제이다. 물론, 수익률은 정부의 이자율에 대한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이 강한 만큼 단순히 민간보험기관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민영보험회사가 독립된 관리운영주체인 비영리기관(non profit organisation)이 아니라 영리기관(profit organisation)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불합리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은 성공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투명성 문제이다. 정부의 지원 및 그 영향에 대한 예측 부족의 문제와는 별도로, 독일 정부는 개인연금 공급자의 힘을 규제하고, 연금 가입자의 이해를 높이는 정책을 펴는 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많은 연구들이 현재 사적연금의 시장 상황에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즉, 투명성 부족(Mangel an Transparenz)으로 인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전문가들조차 각각의 개인연금에 관한 정보들의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eg Balodis and Hühne 2014: 43ff., 50ff., Börsch-Supan et al. 2016: 6ff., 53, Clemens and Förstemann 2015: 634, Fachinger 2015: 229, Fachinger and Börsch-Supan 2016: 303, Hagen and Rothgang 2014a: 6,

Haupt and Yollu-Tok 2014: 21, Kochskämper 2016: 17, Sachverständigenrat 2016: 300, 318, 324ff.).[65]

모든 사적연금 공급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브로슈어, 카달로그 등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발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는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66]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피보험자가 관련 조항을 찾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조항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험 중개인의 설득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보험중계인은 사적연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업계 대표에 따르면 매우 높은 비율로) 소비자의 "구매저항"에 대응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설득하며, 이때 제공하는 정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67]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연금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보는 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기업연금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발행한 카달로그 중 어느 곳에서도 비용계산과 관련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의미로 표현되거나, 실제 규모

65)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보다는 보험회사의 재무정보의 부족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66) 최대 9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 설명서는 대부분 중요한 정보들과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음.(독일 보험자 협회 인터뷰 중)

67) 분석가들에 의하면, 사적연금의 설명 조항(Konditionen)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경우, 보험 가입자들이 많은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in vielen Punkten als für die VerbraucherInnen sehr nachteilig)고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또한 Stiftung Warentest 및 ÖKO-TEST와 같은 품질 평가기관에 의해서도 확인됨.

를 축소하는 모호한 문장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오해의 소지가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실제 비용(echte Kostenquote)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신 총 비용 비율(Gesamtkostenqoute)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며, 둘 사이의 격차는 10배 이상에 달하였다(Balodis & Hühne, 2014).

또한 2014년 72개 보험자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오직 21개의 공급자만이 상품의 계약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공급자의 경우 정보제공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가들과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조차 보험계약을 비교할 때 부분적인 정보만 담고 있는 카달로그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추가적인 정보조차도 보험 공급자 입장에서 제공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제한된 데이터베이스 조차도 제공되는 조건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과, 특히 비용 비율(Kostenquote)이 2.5% 에서 20%까지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Balodis & Hühne, 2014).

물론 장기간 투자에서 이자율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험사가 투자에 대한 정확한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공급자의 브로슈어에 제시된 정보에서 연금의 예상 기댓값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214개의 보험사들의 연금가치의 예상과 추후 실제 지급액을 비교한 결과, 연금액의 예측값이 실제와 일치한 경우는 오직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8]

이와 같이 사적연금 가입자들의 정보부족 문제는 점차 정책 결정자들

6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은 센트 단위(Centbereich)로 정확한 추정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업연금의 보장수준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

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리스터 계약 공급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에 관한 표를 제시하여, 제품 유형, 자금 조달 유형 및 유효비용(Effektivkosten)과 기회비용(Chance-Risiko-Klasse)을 포함한 비용비율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2017년에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정보제공 의무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과 함께 보장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증명서(Ausweis der Kosten der Garantie아래 참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twa Balodis and Hühne 2014: 44ff., Börsch-Supan et al. 2016: 7, 61ff., Hagen and Rothgang 2014a: 6, Kochskämper 2016: 17).[69]

둘째, 관리운영비용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개인연금의 관리운영비용이 최대 20%에 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관리운영비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보험자들이 연금 지급 시기에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것을 계약 체결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스터연금 공급자가 제시한 연금의 보장가치가 일관되게 낮아지는 현상은 보험자가 관리운영 비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입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70]

---

69) 또한 스웨덴 모델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다층체계를 포괄하는 개인연금수급권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재현하는 표준화된 그래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70)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최저 수익률은 소위 보험계리에 따른 예측이율(Rechnungszins)을 보증 이자율(Garantiezins)과 비교함으로써 은폐된 비용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보증이자율의 경우 연방재무부가 10년 간의 정부보고서에 명시된 유통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위험이 전혀 없는 투자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수익률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납입기간을 40년으로 설정했을 때, 리스터 지원금을 받기위한 예측이율은 평균소득 69,332유로를 기준으로 4%에 해당함. 2014년 리스터연금 시장에서 제공되는 보증액

이렇게 정당화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관리운영비용은 계약을 변경(Vertragswechsels)하거나 계약을 종료할(Vertragsbeendigung)경우 더 높게 요구되며, 이것이 가입자들에게 자물쇠 효과(Lock-In)로 작용한다고 많은 연구에서 비판하였다(Balodis and Hühne 2014: 52ff., Börsch-Supan et al. 2016: 6ff., 53, Fachinger et al. 2013: 694 참조). 특히, 전체 개인연금 가입자 중 약 20-25%만이 퇴직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계약 변경과 종료와 관련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 규정이다. 이는 많은 가입자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중 하나로써, 근로자가 해고로 인하여 계약한 연금액을 노후에 수령하지 못하고 해고 전까지 적립한 보험료를 조기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업연금 보험계약에서는 매우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해지가 불가능하다. 비록 2008년에 대법원 판례의 결과로 새로운 보험 계약법(Versicherungvertragsgesetz)이 시행되었지만, 개인연금 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자신이 이제까지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치의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71] 또한 중도 해지 시 그 전

(Garantie)은 최고 64,838유로 및 최저 54,193로 나타났고, 평균 59,227 유로-이에 관한 비용(Kostenantei)은 14.6%-임.(Balodis와 Hühne 2014)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상위 5개의 보험사(Allianz, ERGO, Aachen-Münchener, Generali und R+V)의 경우 가입자가 평균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낮은 보험사에 의해서만 제공되지만, 이 회사들의 경우에도 평균 58,325유로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종 결과에서 평균보장이자율(die durchschnittliche garantierte Verzinsung)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율 보다 눈에 띄게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개별 사건에서 매일 또는 고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됨.

71) 이에 따라 보험자는 가입자와 보험계약 체결 시 새로운 계약 형태에 관해 제한을 받게 됨. 그럼에도 가입자가 불리한 상황은 유지됨.

까지 적립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대기기간(Wartezeit)이 필요한데, 이 대기 기간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33년에 달하며 평균 20년이 넘는다. 높은 관리운영비용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 외에도, 개인연금 회사는 또한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표설정(Rentenfestsetzung verwendeten Indikatoren)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비판받는 지표로는, 기대수명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가정한 것이며, 이것이 월별로 지급되는 연금급여 수준을 약 30% 까지 감소시키고 있다(eg Balodis and Hühne 2014: 44ff., 49, Börsch-Supan et al. 2016: 6, Hagen and Rothgang 2014a: 6 참조).[72]

마. 개인연금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최적의 법적 규제로도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금융시장(Finanzmärkte)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현재 금융시장은 저금리 기조(Niedrigzinsphase)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리스터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Blank et al. 2016: 5ff., 23, Börsch-Supan et al. 2016: 57ff., 61ff., Köhler-Rama 2016: 304, Pimpertz 2016: 1, Ruland et al. 2016: 718, 721,

72) 보험회사는 종종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서 사용하는 연령집단의 기대수명 보다 약 10년 높은 값을 지표로 사용함.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 안전 마진의 필요성(Notwendigkeit von Sicherheitsmarhe)및 선택 효과 수용(Annahme von Selektionseffekten)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려함. 하지만 보험상품은 주로 고소득층의 수요가 높으며, 소득은 기대 수명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가정은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사의 계산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소됨.

Sachverständigenrat 2016: 290, 318, 321, 331, Schäfer 2014: 28). 이것은 지급보증의 의무가 있는 연금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저금리의 상황에서 안전자산의 경우 거의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험자산으로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또한 수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40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보증비용[73]을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15년 사이에 20,000유로에서 약 140,000유로로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나, 지급 보장의 달성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주목할 만한 증가가 없었으며 1%이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

그러나 법정연금에서 기여한 보험료와 수급한 연금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의 법정연금에서는 3~3.5%의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기간을 크레딧으로 계산하여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3.5~4%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정연금보험의 개혁으로 인해 미래의 연금수준이 추가로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법정연금보험의 수익률은,

---

73) 즉, 지급보증이 있는 계약과 위험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정상적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의 차이

74) 물론 이와 함께 정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전 단락들에서 언급한 영역에 대해서는 보험시장의 시정 및 더 엄격한 법적 규제(gesetzliche Regulierung)를 통하여 현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달성할 수 있음. 그러나 또한 다른 영역에서는 과잉 규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기존의 규제 중 보조금을 받는 리스터연금 계약에서 허용되는 투자형태를 제한(Anlageformen beschränk)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평가 될 수 있기 때문임. (Börsch-Supan et al. 2016: 6ff., Fachinger and Börsch-Supan 2016: 303, Kochskämper 2016: 16ff., Sachverständigenrat 2016: 325ff.참조).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장액(납입한 보험료의 양)의 측면에서 볼 때, 투자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음. 특히 현재의 규정에 따라서 주로 국채(Staatsschuldverschreibungen)에 높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장기국채의 금리는 0 이하로 예측되기도 함.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연금제도의 수익률 보다 오히려 높게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금리 역시 근본적으로 반등한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이다.

Ⅴ.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독일은 2015년 현재 약 8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9.7%에 해당한다. 이중 약 580만 명은 실업급여 II (SGB II –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일명 Hartz IV)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SGB XII –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을 또한 약 100만 명은 망명자들을 위한 급여(Asylbewerberleistungsgesetz – AsylbLG)를 수급하고 있다. 추가로 약 137천명은 시설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부조 급여(SGB XII – Hilfe zum Lebensunterhalt)를 받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기초보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 GAE)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Ⅴ-1〉 독일의 기초보장급여(sozialer Mindestsicherung)(2015)

	급여 수급자 수 (명)	비중 (%)
실업급여 Ⅱ (SGB Ⅱ)	5,800,000	73.1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 – GAE (SGB XII)	1,038,008	13.0%
난민 급여 (AsylbLG)	1,000,000	12.2%
기타 공공부조 (SGB XII)	137,000	1.7%

자료: 독일 통계청[75]

75)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6/1

1. 기초보장제도

가. 도입배경

독일 정부는 2003년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공공부조제도(Sozialhilfe)와는 독립적인 방법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보장제도(Grundsicherungsgesetz)를 도입하였다. 일반 공공부조와 구별되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법적 · 경제적 피해 및 수치심 등으로 공공부조의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공적연금에서 연대의 원칙은 보험료의 납부를 통한 경제적 기여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 등으로 노후에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 우선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인구 고령화, 비정형 근로의 증가, 그리고 저성장 등으로 인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기존의 공공부조와 구별되는 기초소득보장제도를 통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도입된 기초소득보장제도는 2005년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 함께 사회법전 제12권(SGB XII)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생계급여와 기초소득보장의 급여산정방식이나 급여의 내용 및 수준이 상호 일치되었으나, 기초소득보장의 경우 원래의 도입 취지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었다(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2012).

1/PD16_419_228.html;jsessionid=41E4AC6C8A6AEEB14F0B672BD9B4904C.InternetLive2

나. 수급조건 및 현황

1) 연령조건 등

GAE(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의 수급을 위한 노인들의 연령조건은 2017년 현재 65세 6개월 이상이다. 이러한 수급연령은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연령과 동일하며, GAE 수급연령 역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상향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급여의 수급은 일반적으로 1회 신청으로 12개월 동안 지속된다.

〈표 V-2〉 GAE 수급연령 상향 일정

출생연도	수급연령	적용 기간
1947	65 years + 1 month	02/2012 to 01/2013
1948	65 years + 2 months	03/2013 to 02/2014
1949	65 years + 3 months	04/2014 to 03/2015
1950	65 years + 4 months	05/2015 to 04/2016
1951	65 years + 5 months	06/2016 to 05/2017
1952	65 years + 6 months	07/2017 to 06/2018
1953	65 years + 7 months	08/2018 to 07/2019
1954	65 years + 8 months	09/2019 to 08/2020
1955	65 years + 9 months	10/2020 to 09/2021
1956	65 years + 10 months	11/2021 to 10/2022
1957	65 years + 11 months	12/2022 to 11/2023
1958	66 years	01/2024 to 12/2024
1959	66 years + 2 months	03/2025 to 02/2026
1960	66 years + 4 months	05/2026 to 04/2027
1961	66 years + 6 months	07/2027 to 06/2028
1962	66 years + 8 months	09/2028 to 08/2029
1963	66 years + 10 months	11/2029 to 10/2030
1964	67 years	01/2031 to 12/2031

장애인을 위한 급여 수급조건은 18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미만으로 근로활동능력의 영구상실자이다. 즉, 의학적 기준으로 근로활동능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경우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2) 거주조건

GAE는 국내에 거주지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신청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소득보장에 근거한 급여지급의 의무는 신청 당시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기관에게 있다.

3) 자산

GAE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자산조사 결과가 GAE 수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GAE에서 배우자는 신청자와 법적 혼인관계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이때 GAE 신청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공 · 사연금 포함), 그리고 아동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또한 GAE의 경우 부양의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모 혹은 자녀의 자산은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GAE 신청자 부모 혹은 자녀의 연 소득이 €100,000을 넘을 경우, 신청자는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4) 현황

GAE 수급자 수는 2014년 1,002,547명, 2015년 1,025,903명, 2016년 1,038,008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약 100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76)]

〈기초소득보장 급여액 계산 사례〉

이름 : MS. Gertrud Schneider
연령 : 68세
상태 : 독거(남편 3년 전 사망, 남편은 자영자 경력으로 낮은 수준의 연금), 낮은 노령연금(2년 근로 경력, 자녀 2), 낮은 유족연금, 장애

GAE를 위한 필요 항목	금액(€)
Schneider 1인 가구를 위한 표준 정상급여	409.00
추가 비용 (교통비 등)	69.53
주거비	300.00
난방비	70.00
전체 필요액	848.53

※ GAE 급여액은 실업급여 II의 급여액과 동일[77]

Schneider의 소득	금액(€)
노령연금	96.00
유족연금	310.00
전체	406.00

수급 가능액	금액
GAE 가능 수급액	848.53
Schneider의 소득	406.00
수급 가능액	**442.53**

자료: www.bmas.de

76)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Soziales/Sozialberichterstattung/Tabellen/11_MS_EmpfLeistVeraend.html;jsessionid=1051A4C3D3D7E18BE563E7FC1A654109.InternetLive2

77) 실업급여 II의 급여액(2017년 1월 1일 이후)
- 가구 표준급여액 : €409
- 파트너 : €368
- 자녀 : €237(6세 까지), €291(7~14세), €311(15세 부터)
- 난방 및 주거비 : 실제 비용 고려하여 산정
- 신청자의 장애 : 표준급여액의 17% 추가 등

Ⅵ.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 내실화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본 장에서는 독일의 공·사연금제도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공·사연금의 보편성,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공·사연금의 지속가능성, 공·사연금의 관리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노후소득보장측면)

독일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복지국가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이 당시 시민들은 안정된 인구구조와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으로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하는 관대한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제도를 향유할 수 있었다. 즉, 독일은 적정 수준의 출산율과 낮은 노인인구 비율로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규모의 표준화된 남성 육체노동자를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적 노동시장구조를 통하여 남성 중심의 완전고용이 이루어졌다. 이는 안정된 단층의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출현과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야기했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인구고령화에 의하여, 전통적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경제 사회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독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독일 역시 2000년대 이후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단층의 공적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에 2001년 리스터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완전적립의 사적연금 강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단층의 공적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개혁하기 위하여, 독일은 리스터 연금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2001년 1,440,000건의 리스터연금 계약 건수는 2010년 14,389,000건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현재 리스터연금 계약 건수는 16,315,000 건으로 가입자 수의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리스터연금으로 대표되는 개인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기업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독일의 특성은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의 소득원 중 약 63%는 법정연금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연금(Betrieblicher Altersversorgung) 8%, 개인연금(Private Vorsorge)이 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타 연금급여(anderen Alterssicherung leistungen) 14%, 이전소득 1%, 그리고 기타소득이 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소득액으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은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2,543(남성 1인 가구 €1,614, 여성 1인 가구 €1,420)로 조사되고 있다(BMAS, 2016C). 그리고 2015년 현재 실제 연금수급자들이 받는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구 서독 €1,014(여성 €583), 구 동독은 €973(여성 €860)[78]임을 감안할 경우, 남성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중 약 63%는 공적연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2인 가구 역시 이들의 소득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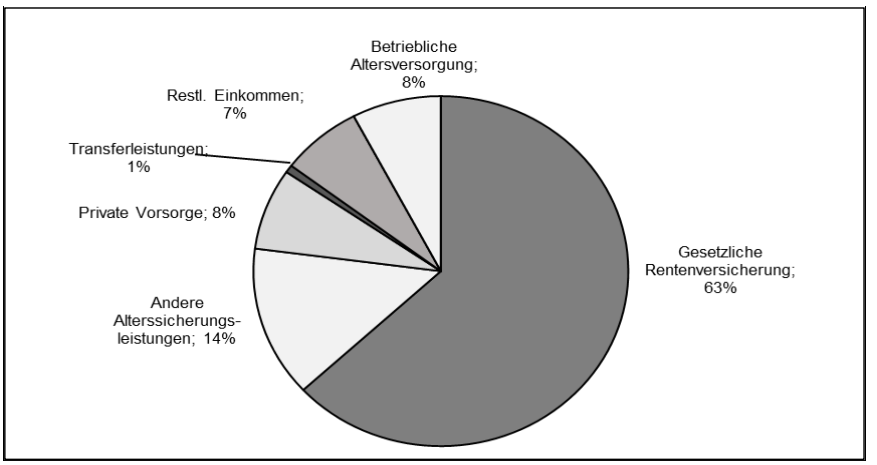

그러나 위의 소득구성은 현재 노인 인구의 소득 구성이며, 향후 독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년 가입 시 평균 소득자의 경우 46%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급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ailer(2015)에 의하면, 리스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대략 총소득의 약 18%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 근로세대가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45%, 사적연금 20% 내외(리스터

78) Aktuelle Daten 2017

연금 15~18% 혹은 기업연금 10~15%)의 소득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 · 사연금제도의 소득구성과 유사한 모습일 것으로 판단된다.

2. 공 · 사연금의 보편성(취약계층 가입확대)

독일 공 · 사연금의 보편성 이슈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공적연금에 있어서 보편성의 문제는 자영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적연금에서의 보편성 이슈는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자를 제외하면 사각지대 문제가 거의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자영자들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영자들을 공적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대신, 2005년 이들을 위한 뤼룹연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종의 세제혜택인 뤼룹연금은 그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자영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자영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자영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었으나, 국민연금의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하여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영자들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으로 제도화하기 이전에 이들의 건강보험료 인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BMAS, 2016a). 즉, 국민연금은 기여와 급여가 연계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자영자의 보험료율만 인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기여와 급여가 연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영자들

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이들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으로 유인하려는 계획이다. 즉, 자영자들의 전체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의 중심에는 자영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9%의 보험료를 전적으로 기여해야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합의를 통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자영자들의 가입 제고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영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향조정할 경우, 독일의 이러한 고민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연금에서의 보편성 문제는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독일은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에 직면하여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인하하는 대신, 2001년부터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하락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사적연금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리스터연금을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리스터 연금의 가입 확대는 정체되고 있다. 특히, 리스터 연금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리스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정작 저소득층의 리스터 연금 가입율은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 5분위의 경우 59%의 가구가 최소 1개 이상의 리스터연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2002년에 1/5도 가입하지 않았다. 즉,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 5분위의 가입률이 10.3%에서 59%로 증가한 데에 반해, 같

은 기간 소득 1분위의 가입률은 3.9%에서 18%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위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소득 격차에 따른 리스터연금의 가입률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örsch-Supan et al. 2016). 즉,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기존의 개인연금을 리스터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가입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의 기업연금 역시, 중소기업의 가입율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1,000명 이상 근로자 기업의 기업연금 가입율은 83%, 500명~999명 기업의 경우는 65%, 250명~499명 기업의 경우는 58%, 50명~249명 기업의 경우는 44%, 10명~49명 기업의 경우는 38%, 그리고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저소득층이 공적연금 위에 추가로 가입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다수 지출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공적연금 뿐 아니라 사적연금의 가입을 확대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독일 사례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보조금지원 등의 정책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은 사적연금의 가입자 확대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는 소득의 역재분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 · 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공 · 사연금에서의 급여 적정성 이슈는 공적연금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대다수 사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방식으로 보험료율 및 투자수익 등 외부 환경에 의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급여 적정성을 위한 논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은 재정목표의 개선 그리고 비정형 근로 증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급여 적정성을 위한 논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의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그 보장성이 매우 뛰어난 제도였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및 동·서독의 통일로 인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문제가 심화되자,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개혁을 통하여 재정안정화 개혁을 감행하였다. 이에 2030년에는 소득대체율이 약 4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독일 정부는 사적연금을 강화하여 공적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연금 강화 정책은 아직까지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에서의 적정성 강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인구보조금 및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대연금(solidarrente)의 도입을 재고하고 있다. 공적연금에서의 적정성 강화는 소득대체율의 하한선을 46%로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하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한선을 2030년까지 43%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으나, 2030년 이후 43%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독일 정부는 소득대체율의 하한선을 2045년까지 46%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의 상한선은 24%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구보조금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즉, 노동사회부(BMAS, 2015a)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여 야기되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30년부터 인구 보조금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

구보조금은 조세로 충당하며, 2030년부터 10년 동안은 연금지출의 1.5% 그리고 2040년에는 인구보조금을 연금지출의 2.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현재도 국민연금 전체 지출의 약 25%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되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를 더욱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인 비정형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형 근로 이력은 이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대연금을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논의 역시 진행하고 있다. 연대연금은 장기간의 미니잡 근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도 낮은 수준의 연금을 수급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독일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다수는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매우 길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길지만 급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대연금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사적연금에서도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즉, 독일 정부는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에 기업연금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는 2017년 기업연금법 개정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강화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모습을 완성하였으나,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모두 그 내실화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공적

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국민연금에서의 적정성 강화 정책 뿐 아니라 현재 계획 중인 기초연금 급여액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노후소득 보장 적정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 · 장기적으로는, 현재 의무가입인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발전시켜서 급여의 적정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독일 역시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연금제도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이며, 이를 위하여 2004년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한과 보험료율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2030년까지의 상 · 하한이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030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상 · 하한을 204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재고하고 있다. 또한 상·하한의 기준으로 2045년까지 소득대체율 46% 보험료율 25%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보조금의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보조금은 2030년부터 추가적으로 보조하며 연금지출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확정급여 방식으로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되어 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재정안정화를 위한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하여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였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매우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의 상향 방안 그리고 재정목표의 명확화 등을 재고해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부담 고급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현재 보험료율인 9%는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사회적 합의 및 그 조정 일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재정목표로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의 상 · 하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재고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 · 하한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그리고 기타 사회보험료 및 세율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목표의 명확화는 자연스럽게 보험료 조정 일정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공 · 사연금의 관리감독체계

독일 국민연금의 관리감독체계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임의가입인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다. 두 국가 모두 사적연금 특히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기업연금과 리스터연금 중 선택이 가능한 구조이며,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리스터 연금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리스터연금의 인증을 받은 보험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그 내용

또한 복잡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스터 연금의 관리 운영비는 매우 다양하고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독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적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섭, 최근 독일연금개혁과 복지국가발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김원섭, 「독일」, 해외 공·사연금제도 Ⅰ, 유럽권, 국민연금연구원(편), 2013

김진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2017

김진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기업연금제도의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11.

김진수 · 방하남 · 이정우,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0. 1.

김진수 외,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KLI), 1997.

김진수, 3층 보장체제를 위한 공적연금 확대방안,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1992.

이덕훈 · 김진수 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7.

이정우, 「연금제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2012

Albrecht, Peter (2009): Versicherungsprodukte ungeeignet für die Altersvorsorge?, Working Paper, Versicherungswirtschaft 17/2009

Augustin, Meik (2008): Ein Überblick über die Rürup-Rente (Basisrente) aus steuerlicher Perspektive, GRIN

Bäcker, Gerhard (2017): Rückblick auf die Alterssicherungspolitik im Jahr 2016, Interviewführung und Aufzeichnung Julia Höppner, Zeitschrift für Sozialreform 63/1 (2017), pp. 3-14

Balodis, Holger (2014); Hühne, Dagmar, Privatrenten als (un)geeignetes Instrument der Altersvorsorge?,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ISSN 1861-1559, Duncker & Humblot, Berlin, Vol. 83, Iss. 3, pp. 41-56, http://dx.doi.org/10.3790/vjh.83.3.41

Beznoska, Martin (2016); Pimpertz, Jochen, Neue Empirie zur betrieblichen Altersvorsorge: Verbreitung besser als ihr Ruf, IW-Trends - Vierteljahresschrift zur empirischen Wirtschaftsforschung, ISSN 1864-810X, Vol. 43, Iss. 2, pp.3-19, http://dx.doi.org/10.2373/1864-810X.16-02-01

Blank, Florian; Blum, Sonja (2017): Kindererziehungszeiten in der Alterssicherung: Ein Vergleich sechs europäischer Länder. WSI Working Paper No. 209/2017 (Blank et al. 2016)

Blank, Florian; Logeay, Camille; Türk, Erik; Wöss, Josef; Zwiener, Rudolf (2016):, Österreichs Alterssicherung: Vorbild für Deutschland?, Wirtschaftsdienst, ISSN 1613-978X, Springer, Heidelberg, Vol. 96, Iss. 4, pp. 279-286, http://dx.doi.org/10.1007/s10273-016-1970-8

Blank, Florian (2014): Die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durch Entgeltumwandlung: Regulierung, Verbreitung und verteilungspolitische Aspekte,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ISSN 1861-1559, Duncker & Humblot, Berlin, Vol. 83, Iss. 3, pp. 129-142. http://dx.doi.org/10.3790/vjh.83.3.129

Börsch-Supan, Axel; Bucher-Koenen, Tabea; Goll, Nicolas; Maier, Christina, (2016): 15 Jahre Riester-eine Bilanz,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Munich Center for the Economics of Aging (MEA) Working Paper No. 12/2016

Carsten Hefeker, Nahles-Rente und Deutschland-Rente, List Forum(2017) 42:309-332, Springer, 2016

Clemens, Johannes; Förstemann, Till (2015): Das System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in Deutschland, Wirtschaftsdienst 95/9 (2015), pp. 627-635

Deutscher Bundestag, Ausschussdrucksache 18(11)971), 2017

European Commission, "Evolution of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Unit EMPL/E.2, Aug. 2000.

Fachinger, Uwe; Börsch-Supan, Axel (2016): Neue große Rentenreform: Pro & Contra, ZBW - Leibniz-Informationszentrum Wirtschaft, Wirtschaftsdienst Vol. 96, Iss. 5, pp. 302-303

Fachinger, Uwe (2015): Pay and Forget: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ZBW - Leibniz-Informationszentrum Wirtschaft, Wirtschaftsdienst Vol. 95, Iss. 4, pp. 229-230

Fachinger, Uwe; Künemund, Harald; Schulz, Martin; Unger, Katharina (2013): Dynamisierung kapitalgedeckter Altersvorsorge, ZBW - Leibniz-Informationszentrum Wirtschaft, Wirtschaftsdienst Vol. 93, Iss. 10, pp. 686-694.

Fischer, Hans-Jörg; Hoberg, Peter (2005): Die „Rürup-Rente “: Wen begünstigt sie wirklich? - Die Besteuerung von Renten nach dem Alterseinkünftegesetz. Der Betrieb, 58(24), pp. 1285-1288

Goverts, Stephan; Knoll, Monika (2005): Anforderungen an Basisrentenprodukte („Rürup-Rente “) vor dem Hintergrund des BMF-Schreibens vom 24.2. 2005

Hagen, Kornelia; Rothgang, Heinz (2014): Neue Wege in der privaten und betrieblichen Altersvorsorge?,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ISSN 1861-1559, Duncker & Humblot, Berlin, Vol. 83, Iss. 3, pp. 5-18, 2014. http://dx.doi.org/10.3790/vjh.83.3.5

Hagen, Kornelia; Rothgang, Heinz (2014): Mit Unruhe in den Ruhestand!?,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Vol. 83, Iss. 2, pp. 5-19 (Hagen/Rothgang 2014)

Haupt, Marlene; Yollu-Tok, Aysel (2014): Ergänzende Altersvorsorge: Akzeptanz, Vertrauen und Ausgestaltung aus Verbrauchersicht,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ISSN 1861-1559, Duncker & Humblot, Berlin, Vol. 83, Iss. 3, pp. 19-39, 2014. http://dx.doi.org/10.3790/vjh.83.3.19

Hesse, Axel (2008): Betriebliche Altersvorsorge und nachhaltige Investments in Deutschland, Fortis Investments Study

Heuchert, Oliver (2006): Staatlich geförderte Altersvorsorge, Campus ZDF WISO

H. Schmeiser. A. Zeier, W. Nussbaum, Aufsicht ueber berufliche Vorsorge: internationaler Vergleich, St. Gallen University, 2010.

Kiesewetter, Dirk; Grom, Michael; Menzel, Moritz; Tschinkl, Dominik (2016): Optimierungsmöglichkeiten bei den bestehenden steuer-und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n Förderregelungen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Würzburg University Press

Kim Jinsoo (2010), Extinction or Evolution? A Study of the challenges and the future of social insurance in Korea, Luxemburg, ISSA conference 2010.

Köhler-Rama, Tim (2016), Kosten abwägen! Betriebliche Altersvorsorge, Wirtschaftsdienst, ISSN 1613-978X, Springer, Heidelberg, Vol. 96, Iss. 5, pp. 304-305, 2016. http://dx.doi.org/10.1007/s10273-016-1975-3

Kochskämper, Susanna (2016), Die Förderkulisse der privaten Altersvorsorge: Status quo und Reformoptionen, IW-Report, No. 23/2016 Betriebliche und private Altersvorsorge: Sinnvoll, aber nicht zwingend, IW-Kurzberichte, No. 17. 2016

Nguyen, Tristan (2005): Hat die „Rürup "-Rente Aussicht auf Erfolg?, Munich Business School 2005/02

Pimpertz, Jochen (2016): Betriebliche und private Altersvorsorge: Sinnvoll, aber nicht zwingend, IW-Kurzbericht No. 17/2016

Rische, Herbert (2013): Alterssicherungspolitik in Europa im Vergleich, 9. Aktuelles Presseseminar 29. und 30. Oktober 2013 in Würzburg

Ruland, Franz; Breyer, Friedrich; Schmähl, Winfried; Köhler-Rama, Tim; Meinhardt, Volker (2016): Rentenreform — mit welchem Fokus?, ZBW - Leibniz-Informationszentrum Wirtschaft, Wirtschaftsdienst Vol. 96 Iss.10 pp. 707-726

Runggaldier, Ulrich and Steindl, Harald, Handbuch zu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Arbeitsrecht, Sozialrecht, Steuerrecht, Orac: Vienna. 1987.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d.) (2016): Zeit für Reformen. Jahresgutachten 2016/17, Jahresgutachten,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No. 2016/17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No. 2016/17, ISBN 978-3-8246-1053-2, 2016.

Schäfer, Ingo (2014): Die Vollendung eines Paradigmenwechsels: Vom Lebensstandard zur Lebensleistungsrente,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Vol. 83, Iss. 2, pp. 21-32

Schmähl, Winfried (2014): 125 Jahr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Aufstieg und Niedergang, ZBW - Leibniz-Informationszentrum Wirtschaft, Wirtschaftsdienst Vol. 94, Iss. 6, pp. 382-383

Schnabel, Reinhold (2004): Die nachgelagerte Besteuerung der Altersvorsorge." Wirkung und Handlungsalternativen,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 Köln

Wallau, Frank; Gädckens, Charlyn; Werner, Jennifer (2014): Machbarkeitsstudie für eine empirische Analyse von Hemmnissen für die Verbreit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i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Gutachten im Auftrag des BMAS.

BMAS, 2016a, Gesamtkonzept zur Alterssicherung 2016, Berlin: BMAS.

BMAS, 2016b, 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6, Berlin: BMAS.

BMAS, 2016C, Ergänzend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6 gemäß § 154 Abs. 2 SGB VI (Alterssicherungsbericht 2016)

BMAS(2016), Deutsche Alterssicherungsbericht 2016, Berlin: BMAS.

BMAS(2013), Ubersicht uber das Sozialrecht: Ausgabe 2013/2014. Herausgeber: BMAS.

BMAS(2016), Uebersicht ueber das Sozialrecht 2016/2017, Berlin: BMAS.

Mierzejewski, A. C. 2016, A History of the German Public Pension System, Lexington Books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2016년도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조성은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2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임란	2017.1.
연구보고서 2016-03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박성민	2017.3.
연구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최기홍, 신승희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5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한정림, 신승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0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한정림, 김형수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9	해외주식운용 장기성과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연구 (비공개)	강대일, 황정욱	2017.3.
연구보고서 2016-10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2017.3.
연구보고서 2016-12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박성민,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3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7.3.
연구보고서 2016-14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성명기, 홍기석	2017.3.
연구보고서 2016-15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6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손경우, 최영민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7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액티브 위험 한도 설정 체계를 중심으로(비공개)	강대일, 이지연 외	2017.4.
연구보고서 2016-18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이지연	2017.3.
정책보고서 2016-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연구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하, 최인덕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2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3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유호선, 유현경	2017.1.
정책보고서 2016-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인영, 유희원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혜영, 김아람	2017.3.
정책보고서 2016-0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윤병욱, 송창길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헌	2017.3.
정책보고서 2016-09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이용하, 최옥금 외	2017.4.
정책보고서 2016-10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이지연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1	해외투자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2017.3.
정책보고서 2016-12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박태영, 이정화	2017.3.
정책보고서 2016-13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비교에 관한 연구 (비공개)	정문경, 태엄철 외	2017.3.
조사보고서 2016-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임란 외	2017.1.

조사보고서 2016-02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3.
연차보고서 2016-01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최영민, 박태영 외	2017.3.
용역보고서 2016-01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김성태, 권규호 외	2017.5.
요약보고서 2016-01	2016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2017.6.
워킹페이퍼 2016-01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위탁규모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문경, 이정화	2017.4.
연구자료 2016-01	2016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7.4.
프로젝트 2016-01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7.3.
프로젝트 2016-02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이용하, 이철수 외	2017.4.
프로젝트 2016-03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최옥금, 이상붕 외	2017.4.
프로젝트 2016-04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연구	성명기 편	2017.5.
단기과제 2016-01	단기연구과제1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 연계방안)	오욱찬, 이재은	2017.4
단기과제 2016-02	단기연구과제2 (공단 내· 외부 데이터를 융합한 가치 창출 및 업무 활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 방안)	유호선, 왕승현, 이은영	2017.4
단기과제 2016-03	단기연구과제3 (60세 이후 연령대별 필요 생활자금 조사, 노후준비 교육의 체계 및 주제 분류, 내연금 사이트 종합재무설계 내용 개선)	성혜영, 김아람	2017.4

2015년도

연구보고서 2015-01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송현주, 임란	2016.3.
연구보고서 2015-02	결측치 대체방법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 소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완, 김호진	2016.3.
연구보고서 2015-03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6.3.
연구보고서 2015-04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명기, 이준상	2016.3.
연구보고서 2015-05	미국의 경기국면의 예측과 투자전략	손경우, 최영민	2016.3.
연구보고서 2015-06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GIPS®기준의 국민연금 성과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정문경, 이지연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7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붕, 이은영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8	국민연금가입자 중기전망방법 개선 연구	박성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09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	신경혜,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0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추계를 위한 소득지수 개선방안 연구	한정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11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전망된 사망률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권미애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2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전망	최장훈,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3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최기홍, 신승희	2016.3.
연구보고서 2015-1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의 평가: OG모형 파레토 개선 접근법	최기홍, 신성휘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5	재무곤경위험을 고려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강대일, 조재호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6	외부 위탁운용 매니저의 군집투자 행태(herding)와 유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 태엄철	2016.3.
연구보고서 2015-1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방법 개선 연구	한정림, 허재준 외	2016.5.
정책보고서 2015-01	기초연금 급여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한신실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2	고령화의 진전과 공사적 연금자산 성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03	국민연금기금의 통화 오버레이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노상윤	2016.3.
정책보고서 2015-0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상윤, 주상철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5	CVaR를 사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6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7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9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안	정인영, 민기채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0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성혜영, 이은영	2016.3.
정책보고서 2015-11	국민연금 목표초과 수익률 산출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2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김헌수, 유현경	2016.5.
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박주완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1	2016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박태영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박성민, 신경혜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1	싱가포르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시사점	이준희	2016.5.
용역보고서 2015-0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주은선, 김진석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3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 분석	이재현	2016.5.
워킹페이퍼 2015-01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의 기초율 추정	김진미	2016.3.
연구자료 2015-01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6.5.
프로젝트 2015-01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6.3.
프로젝트 2015-02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용하, 민기채 외	2016.5.
프로젝트 2015-0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고찰	이용하, 김원섭 외	2016.5.

2014년도

연구보고서 2014-01	가입기간별 기초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Ⅱ)	박성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2	공적연금 가입자 추계 방법 연구	박주완, 한정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	최기홍, 신승희	2014.12
연구보고서 2014-04	국민연금제도변수 중기 전망 연구	성명기, 최장훈	2014.12
연구보고서 2014-05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모의실험모형 연구	성명기	2014.12

연구보고서 2014-06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최적공분산 추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7	경제적불평등과 노후최저보장제도의 관계 및 시사점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상붕, 서대석	2015.3
연구보고서 2014-08	국민연금 기타 대체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연구 (비공개)	정문경, 최장훈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0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구	권혁창, 정창률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1	독거노인의 생애노동이력과 이전소득 효과 연구	송현주, 성혜영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2	부도위험을 고려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전략에 관한연구	강대일, 조재호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3	고연령 사망률 추정과 미래 사망률 전망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최장훈,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4	시간변동성 성과평가지표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5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한정림, 박주완	2015.3
연구보고서 2014-16	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방안	신경혜, 신승희	2015.3
연구보고서 2014-17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인(ESG)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손경우, 주상철	2015.3
연구보고서 2014-18	ALM을 사용한 기금운용 통합관리방안(Ⅱ)(비공개)	강대일, 김배호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1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벤치마크 사용자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	노상윤, 민성훈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2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외화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손경우	2014.12
정책보고서 2014-03	공적연기금 리스크 관리체계의 국제비교	최영민, 박태영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4	국민연금 국내 인프라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선방안 연구	노상윤, 유승동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5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헌수, 김원식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6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7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비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8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선방안	박태영, 이정화	2015.3
정책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안연구	정인영, 김경아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0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연구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1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조영은	2015.3
정책보고서 2014-12	연금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후준비 수준 제고 방안	성혜영, 송현주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3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지원방안연구	김경아, 김헌수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4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 제도 가입확대방안	유호선, 박주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1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유호선, 김경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연구	이용하, 정인영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3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5차(2013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분석보고서-	송현주, 이은영 외	2015.3
연차보고서 2014-01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기금정책팀	2014.12
연차보고서 2014-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5~2019)	박성민, 신경혜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1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임양택	2014.12

용역보고서 2014-02	1. 독일연금통합의 전개과정 평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 북한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섭 이철수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진, 이정우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4	반납·추납 보험료 대여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요도 조사(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승훈	2015.3
용역보고서 2014-05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김상호, 배준호 외	2015.6
워킹페이퍼 2014-01	연간 거시경제계량모형 개발	박무환	2015.3
연구자료 2014-01	2014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5.3
프로젝트 2014-01	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단기과제 2014-01	단기과제 I	성혜영, 송현주 외	2015.6
단기과제 2014-02	단기과제 II	이용하, 유호선 외	2015.6

저자 약력

• **유 호 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16
- 일본과 한국의 공적연금 재정계산제도 비교-재정방식,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2015.
-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15.

• **김 진 수**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 사회경제학 학사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 사회경제학 석사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 사회경제학 박사
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저서〉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공동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사회복지법제(공동저자), 형지사, 2015

- Erloeschen oder Evolution der Sozialversicherung (bsp. Korea), Soziale Sicherheit Hauptverband der Sozialversicherungsansthalt, 2014

- **Christina Hiessl**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Innsbruck 러시아어 및 법학 학사
  네덜란드 Tilburg University 사회법 및 사회정책 석사
  오스트리아 Vienna University 사회법 및 유럽법 박사
  현 Trier University 연구원

〈주요 저서〉

- The South Korean Welfare Stat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Social Insurance Systems in: Aspalter (Hg.),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to Welfare State Systems, Routledge 2017, (zusammen mit Jin-Soo Kim)
- Implementation Problems of the Collective Redundancies Directive and Their Consequences: The Croatian Example, in: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3/2017, S. 441-454 (zusammen mit Sandra Laleta).
- Employer-Centred Benefits and the Atypical Workfor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30/2014

프로젝트 2017-04
독일의 공·사적연금제도 연구

2018년 6월 인쇄
2018년 6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이 용 하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8 / FAX : 063-715-6564

ISBN 978-89-6338-416-0